

연구보고서

#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판례 법리 분석

김성룡·김혁돈·이화정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제 출 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판례 법리 분석”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3년 10 월

## 연구진

연구기관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김성룡 (교수, 경북대학교)

연구원 : 김혁돈 (부교수, 가야대학교)

연구원 : 이화정 (겸임교수, 영남대학교)



# 요약문

- 연구기간 2023년 4월 ~ 2023년 10월
- 핵심단어 중대재해, 도급, 통계분석, 판례법리
- 연구과제명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판례 법리 분석

## 1. 연구배경

산업안전보건법이 특히 도급인의 책임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2019년 1월 15일 전면 개정되고,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이후 동법 위반사건에 대한 최근까지의 판례(2020년 1월~2023년 4월)에서는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지, 즉 판결실무와 양형에서 어떤 특징적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중대재해 사건을 중심으로 범죄의 구성요건 요소들에 대한 법원의 관련 법리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처벌 관련 제도 및 수사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선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들을 대상으로 대법원 판례검색, 판결문 열람서비스, 온라인 판결문 제공서비스, 법원도서관·사법연수원 방문 자료수집 등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하고, 법 개정 전후의 사건을 구별하기 위해 모든 판결문의 공소사실에서 사건발생일을 도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중대재해사건인지 여부를 다시 분류하는 방법으로 통계분석의 대상을 선별한 후, 통계적 관점에서

유의미한 781건의 판결을 대상으로 통계적 관점과 법리적 관점에서 중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 1) 중대재해사건 판결문의 통계분석

총 781건의 판결문 중 중대재해사건 639건을 대상으로 법률 개정 전후 발생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의 특성, 제2차 양형기준 개정 전후에 따른 법원의 양형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도급 관련 사건의 특성을 법률 개정 및 양형기준변화 전후를 비교 분석하였고, 무죄판결의 특성도 분석하였다.

### 2) 중대재해사건의 판결문의 법리 분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중 중대재해 관련 사건에서 법리가 포함된 판결들을 선별하여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개정 산안법을 적용한 대법원의 새로운 법리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존의 중요 대법원 판결선례를 분석하였고, 개정 법률을 적용한 하급심의 주요 법리도 살펴보았다.

### 3)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판결문 분석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를 야기한 산업재해치사상죄에 대한 하급심 판례의 법리를 분석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 4) 통계분석과 법리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앞서 살펴본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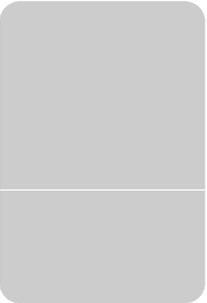
분석과 법리분석에서 도출된 특징을 반영한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실의 증명과 증거수집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 3. 연구 활용방안

본 연구는 추가적인 통계적·법리적 판례분석의 선행 연구로 역할을 할 것이고, 근로감독관의 법리를 반영한 효율적인 수사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며, 각종 연구와 교육에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 4.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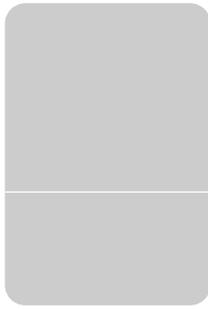
- 연구책임자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룡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부장 김부관
  - ☎ 052) 703. 0821
  - E-mail kbg7826@kosha.or.kr



# 목 차

<b>I. 서론</b>	<b>1</b>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표	3
3. 연구내용 및 방법	4
1) 연구 내용	4
2) 연구 방법	6
<b>II. 중대재해사건 판결문의 통계분석</b>	<b>9</b>
1. 판결문 수집 및 조사·분석 방법	9
1) 판결문 수집 및 정리	9
2) 판결문 조사 및 분석 방법	10
2. 판결문 분석 결과	11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기본정보	11
2) 중대재해 사건 판례 분석	15
3) 2020년 1월 개정법률 시행 전후 중대재해 관련 사건 분석	18

4) 2021년 7월 양형기준 개정 전후 판결 분석	22
5) 도급 관련 사건 판결문 분석	24
6) 무죄사건 관련 판결문 분석	45
3. 통계의 주요 내용, 그 의미와 시사	48
1) 주요 내용	48
2) 의미와 시사	56
<b>Ⅲ. 중대재해사건 판결문의 법리분석</b>	<b>61</b>
1. 개요	61
2. 법리 관련 통계 분석	62
1) 주요 내용	62
2) 분석 및 시사	68
3.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대법원 판결의 주요 법리	70
1) 개관	70
2) 대법원의 관련 주요 판결의 법리	70
4.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후 하급심법원 판례의 주요 법리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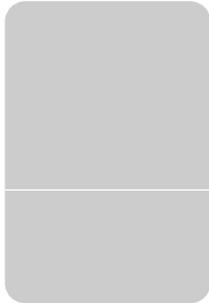
# 목 차

1) 개관 .....	90
2) 도급과 발주의 구별 기준 .....	90
3) 하급심 판결의 주요 쟁점과 법리 .....	110
4) 무죄 판결 분석 .....	116
5. 소결 .....	120

## IV.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판결문 분석 ..... 125

1. 개요 .....	125
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재판 현황 .....	126
3. 산업재해치사상죄에 대한 법원의 법리 분석 .....	129
1) 판결 현황 개관 .....	129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심 판결 .....	130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심 판결 .....	157
4)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	172
5) 기타 판결 .....	174
4. 소결 .....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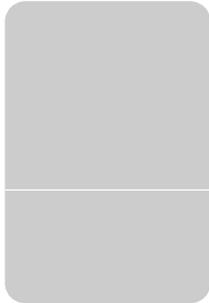
<b>V. 결론</b> .....	<b>183</b>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의 파급효 ...	183
2. 법리분석에 따른 범죄의 본질을 고려한 수사 .....	185
3. 통계분석에 따른 주요 쟁점을 고려한 수사 .....	188
<b>참고문헌</b> .....	<b>190</b>



## 표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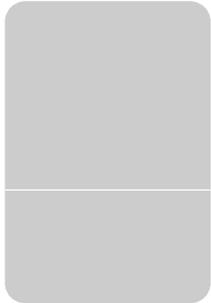
〈표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관련 판결문 수집·분석 대상 개요	10
〈표 2〉 심급별 사건 수	12
〈표 3〉 제1심 사건의 선고년도	12
〈표 4〉 제1심 사건의 관할	13
〈표 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제1심 선고법원별 사건 수	14
〈표 6〉 중대재해 여부	15
〈표 7〉 사건발생일로부터 제1심 선고일까지 소요기간	16
〈표 8〉 제1심 중대재해 판결의 형벌	18
〈표 9〉 중대재해 사건 발생일과 선고년도	19
〈표 10〉 법률 개정 전후 선고 형종간 비율의 변화	20
〈표 11〉 법률 개정 전후 선고년도별 형종간 비율의 변화	22
〈표 12〉 제1심 중대재해 판결의 선고 형종	24
〈표 13〉 도급 여부	24
〈표 14〉 도급인으로서 자연인인 피고인에 대한 선고 형종	25
〈표 15〉 도급인(자연인) 피고인의 처벌 형량	26
〈표 16〉 도급인(자연인)의 지위에 따른 선고 형종	26
〈표 17〉 도급(자연인) 피고인의 지위에 따른 형량 비교	27
〈표 18〉 도급(법인)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 등	28
〈표 19〉 수급(자연인) 피고인에 대한 선고 형종	29
〈표 20〉 수급(자연인) 피고인의 처벌 형량	29
〈표 21〉 수급(자연인)의 지위에 따른 선고 형종	31

〈표 22〉 수급(자연인) 피고인의 지위에 따른 형량 비교 .....	32
〈표 23〉 도급인/수급인(자연인)의 처벌 형량 비교 .....	32
〈표 24〉 수급(법인) 피고인의 선고 형종과 벌금 .....	33
〈표 25〉 도급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 .....	34
〈표 26〉 도급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 .....	35
〈표 27〉 법률 개정 전후 도급/수급인 피고인의 선고 형종 비교 .....	37
〈표 28〉 법률 개정 전후 도급/수급 관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형량 비교 ·	39
〈표 29〉 법률 개정 전후 도급 관계의 법인 형량 비교 .....	39
〈표 30〉 산업안전보건범죄 구 양형기준 및 제1차 수정 양형기준 .....	40
〈표 31〉 양형기준 1차 수정 전후 도급인 피고인 형종 비교 .....	42
〈표 32〉 양형기준 수정 전후 도급인/수급인인 피고인 자유형 형량 비교 .....	43
〈표 33〉 양형기준 수정 전후 도급인/수급인인 피고인 벌금액 비교 .....	44
〈표 34〉 양형기준 수정 전후 도급 관계의 법인 피고인 벌금액 비교 .....	45
〈표 35〉 중대재해 사건 중 자연인 피고인 무죄 판결 내역 .....	46
〈표 36〉 중대재해 사건 중 도급 법인 피고인 무죄판결 내역 .....	47
〈표 37〉 중대재해 사건 중 수급 자연인 피고인 무죄 판결 내역 .....	47



## 표 목차

〈표 38〉 중대재해 사건 중 수급법인 피고인 무죄 판결 내역 .....	48
〈표 39〉 2차 수정 양형기준과 집행유예참작 사유 .....	54
〈표 40〉 중대재해판결 중 법리 포함 판결 .....	62
〈표 4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전·후 판결에서 법리포함 여부 .....	63
〈표 42〉 도급여부에 따른 법리여부의 연관성 분석 .....	64
〈표 43〉 도급여부에 대해 개정 전후 법리여부 비교 .....	65
〈표 44〉 법률 개정 전후의 법리 유형 비교 .....	66
〈표 45〉 법리 포함 여부에 따른 선고 형종 비교 .....	67
〈표 46〉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	125
〈표 47〉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절차 진행 현황 .....	127
〈표 48〉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판결 선고 현황 .....	129



## 그림목차

[그림 1] 심급별 사건 비율 .....	12
[그림 2] 선고 법원별 사건 비율 .....	14
[그림 3] 중대재해 사건 비율 .....	15
[그림 4] 도급 사건의 비율 .....	24
[그림 5] 중대재해판결 중 법리 포함 비율 .....	62
[그림 6] 법률 개정 전후 중대재해판결 중 법리 포함 비율 .....	63
[그림 7] 법리 포함여부에 따른 형종의 비율 .....	68



# I. 서론





# I. 서론

##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이고 현재 다양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이기도 하다.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는 전적으로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양자는 밀접한 법적·사실적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특히 도급인의 책임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2019년 1월 15일 전면 개정되고,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이후 동법 위반 사건에 대한 최근까지의 판례(2020년 1월~2023년 4월)에서는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지, 즉 판결실무와 양형에서 어떤 특징적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특히 중대재해 사건을 중심으로 범죄의 구성요건 요소들에 대한 법원의 관련 법리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처벌 관련 제도 및 수사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 것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무죄 선고 사건을 포함한 하급심 법원들의 최신 법리 분석을 통해 고용부 지방관서 수사의 효율성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고려할 점이 무엇인지 도출하는 것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판결문도 함께 검토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의 해석과 적용을 넘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의 해석과 법 적용영역에도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2020년 1월 16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과 2021년 7월 1일 시행된 제1차 수정 양형기준의 내용 변화가 반영된<sup>1)</sup> 대법원의 변경된 법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21년 3월 29일 수정되어 2021년 7월

리를 보여주는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양형기준 개정 이후 하급심에서 비로소 몇 건의 양형설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법률 개정과 양형기준 변경이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향후 관련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는데 참고가 될 필요성도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치위반치사죄의 성립요건과 처벌에 대한 판례분석은 현재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위반과 산업재해치사상죄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함의가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파급효과나 시의적 필요성도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판결들도 별도로 분석하여 관련 법리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규율 체계의 차이 점을 분명히 하는데 기여할 것이고, 향후 양 법률들의 개선 작업을 위해서는 어떤 내용에 주목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

1일 시행된 양형 기준(1차 수정 양형기준 = 2차 양형기준) 이후에 2021년 12월 6일 다시 수정되어 2022년 3월 1일 시행(2차 수정 양형기준; 3차 양형기준)되었고, 2023년 4월 24일 다시 수정되어 2023년 7월 1일(3차 수정 양형기준; 4차 양형기준)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이 현재 양형기준이다. 마지막 수정의 주요 내용은 일반양형인자 중 행위자/기타 감경요소로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포함)'이 추가되고, 가중요소로 '합의 시도 중 피해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가 추가된 것이다. 피해 회복 노력이 명시적으로 감경요소로 도입됨으로써 앞으로 양형실무에서 적지 않은 형벌 감경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연구에서는 특히 제1차 수정 양형기준에 대한 양형 관련 판례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2차 수정 양형기준과 제3차 수정 양형기준은 합의나 처벌불원의사, 전과사실 등의 양형인자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집행유예 사유를 확장(금고이상 전과사실로 제한)하는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아직 이러한 요소들이 반영된 판결을 분석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보아 너무 이르기 때문이다. 향후 이러한 양형요소의 의미는 사실상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건을 넘어 모든 범죄의 양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2. 연구목표

본 연구는 2019년 1월 15일 전부 개정되고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한 하급심 판결들(20년 1월~23년 4월 선고)을 대상으로 하여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중요 범죄(예: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이하)들의 성립요건을 어떻게 해석하며, 그 충족여부 판단에 어떤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분석·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예를 들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와 제168조 이하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죄의 성립요건(의무자 지위, 부작위, 인과관계, 고의·과실(예견가능성) 등)에 대한 법리와 사실인정의 방법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분석·체계화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하급심에 대한 상소심이 진행된 경우에는 무엇보다 대법원의 법률해석이 어떤 내용인지, 중요한 판례변경이나 세부적인 해석의 내용 변화는 없는지도 명확하게 정리해 보는 것도 목표로 하였다.<sup>2)</sup>

2020년 시행된 전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이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강화된 도급인의 책임이 특징적인데, 과연 법원 실무에서는 어떤 해석과 적용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도 하나의 목표로 하였다.

나아가 근로감독관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무죄 선고된 사건의 경우에 그 원인이 법률적용에 있는 것인지, 사실인정에 있는 것인지도 분석하고, 각각의 경우 적정한 대응방법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여 향후 수사 활동에 유용한 기준을 도출해 보는 것도 하나의 목표로 하였다.

2) 예를 들어 대법원은 최근 들어 안전의무이행을 실질적으로 충실히 하였는가 하는 판단 기준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사단계에서는 어떤 사실의 확인과 증거확보가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한 함의를 찾아내어 명확하게 체계화하는 것이 이에 속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의 2020년 1월 시행 전후, 2021년과 2022년 양형기준 개정 이후, 실무의 변화가 있는지, 기존의 양형과 다른 특별한 특징이나 차이점이 확인되는지를 판례분석을 통해 명확히 해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위와 같은 통계분석과 법리분석이 주는 수사 절차상의 함의, 법 해석과 적용, 나아가 법령 개정 작업의 필요성까지도 제시할 수 있는 포괄적 연구를 목표로 하였다.

### 3. 연구내용 및 방법

####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선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들을 대상으로 대법원 판례검색, 판결문 열람서비스, 온라인 판결문 제공서비스, 법원도서관·사법연수원 방문 자료수집 등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하고, 법 개정 전후의 사건을 구별하기 위해 모든 판결문의 공소사실에서 사건발생일을 도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중대재해사건인지 여부를 다시 분류하는 방법으로 아래 통계분석의 대상을 선별하였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선고된 판례를 수집, 분류, 정리하여 총 781건을 분석대상으로 추출하였는데, 그 중 제1심 사건은 672건, 항소심 98건, 상고심 11건이었다. 총 781건의 대상 판결 중 중대재해사건은 총 639건이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한 판결은 총 498건으로 정리되었으며, 양형기준 수정 후의 제1심 사건은 총 124건이고, 양형기준 수정 전 제1심 사건은 421건이었다.

위 대상 판결들을 특히 본 연구의 중점인 도급 여부, 양형기준, 범리포함 여부 등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통계 및 법리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죄와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

으로 기소된 유·무죄사건들에 대한 하급심·상소심 판결들을 대상으로, 당해 재판부가 그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개별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위반을 판단하기 위한 의무내용, 위반판단기준 등을 구체화해보고,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의 경우 고의와 과실(예견가능성), 인과관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형사책임 판단 법리가 무엇인지도 구체화 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2019년 1월 16일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이고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도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반영한 재판실무로 반응하고 있는지, 도급인의 형사책임 관련 판례의 특징은 무엇인지, 도급인의 형사책임요건들에 대한 법원의 태도를 고려할 때 수사 실무에서의 주의할 점들은 무엇인지 구체화해보고자 하였다.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죄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건들의 경우 그 원인과 관련 법리를 분석하여, 사실 확정과 법리 적용의 관점에서 근로감독관의 수사 활동에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도 밝혀보고자 하였고, 2020년 1월 개정 법률 시행 이후 동 법률이 적용된 사건들, 그리고 새로운 양형기준(2021년, 2022년)이 적용된 시점 이후의 사건들과 개정 전 법률·양형기준 하에서의 판결 형량 비교 분석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발생 사건에 대한 의미 있는 구체적 형량 변화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중대산업재해와 유사한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은 물론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기도 하며,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과 동치사죄에 대한 판례 분석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치사상, 즉 산업재해치사상죄의 판례는 그 규정들의 해석과 적용, 수사와 재판에도 상호 중요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을 분석하여 그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위와 같이 통계 분석과 법리 분석을 아우르고 있고, 이러한 방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법원의 법리를 명확하게 하고, 향후 적법하면서도 효율적인 수사와 법적용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과정에서 확보된 판결 분석과 아울러 비교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행 통계연구의 결과들과 비교하였고, 관련 각종 문헌연구를 분석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판례 분석 등에 대한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였고,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검사 출신 변호사, 판사 출신 교수 등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판례이해와 사안 이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노동법 전공 교수의 의견도 반영하였다. 연구결과의 실용성을 고양하기 위해서 수사 분야 활동 근로감독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수사인력의 애로 사항도 청취하였다.

## Ⅱ. 중대재해사건 판결문의 통계분석





## II. 중대재해사건 판결문의 통계분석

### 1. 판결문 수집 및 조사·분석 방법

#### 1) 판결문 수집 및 정리

본 연구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분석 대상 기간 동안 선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을 다룬 판결문 총 869건 중에서 통계 분석의 가치가 있는 판결들을 선별하여 총 781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총 781건의 판결 중 이른바 '중대재해'로 분류될 수 있는 사건은 총 639건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중 중대재해 사건으로 분류된 총 639건의 판결문 중 제1심 판결은 총 545건, 항소심은 총 85건, 상고심은 총 9건이었다. 2020년 1월 16일 시행 전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사건과 그 이전 사건을 구별하기 위해 판결문 전체를 대상으로 공소사실 중 사건 발생일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전후 사건을 구별하였고, 이에 따라 전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한 판결 수는 제1심 총 498건, 개정 전 발생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 제1심 판결은 총 47건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제1차 양형기준 개정(2021년 7월 1일 기준) 이전 사건은 제421건, 제1차 개정 이후 양형기준이 적용된 사건이 총 124건이었다.

〈표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관련 판결문 수집·분석 대상 개요

판결문 수집 및 분석 대상	2020년 1월 1일 ~ 2023년 4월 30일까지 산업재해관련 사건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총판결문 수	총 781건 (제1심: 672건, 항소심: 98건, 상고심: 11건)
중대재해 대상 사건 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 중대재해 사건 : 639건 (제1심 :545건, 항소심 : 85건, 상고심 :9건 )
개정법 적용여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전 제1심 : 47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후 제1심 : 498건
개정양형 기준 적용여부	양형기준 수정 전 제1심 : 421건 양형기준 수정 후 제1심 : 113건 양형기준 2차 수정 후 제1심: 11건

## 2) 판결문 조사 및 분석 방법

연구 대상 기간 동안 선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판결들을 대상으로 하여 1차적으로 사건번호, 선고년월일, 선고법원, 사건발생일 등의 판례특성과 도급 여부, 법리 포함여부 등의 사건 특성, 판결시 형벌 유형과 적용 법조 등의 형벌 특성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판결문이 없거나,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제1심 판결문이 없어 중대재해 여부 및 피고인의 정보 등 정확한 내용 파악이 어려운 경우 등은 통계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차적으로 도급사건을 대상으로 도급과 수급을 구분하고 자연인인 피고인 중 최고책임자에 대한 법원의 형종과 형량을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법령 개정 전후 또는 양형기준 개정 전후의 사건수가 소수여서 통계적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선행 연구의 통계자료를 비교를 위해 활용하는 방법도 병행하였다.

이러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하여 도급 관련 사건, 법리가 포함된 사건, 무죄 사건, 양형 개정 후의 양형설시가 포함된 사건 등에 대한 분석작업을 별도로 진행하였다.<sup>3)</sup>

## 2. 판결문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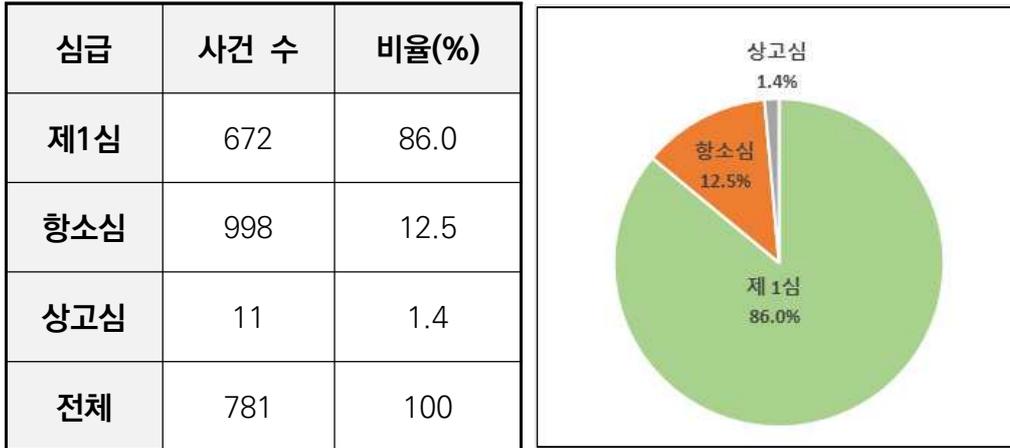
###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기본정보

수집된 산업재해 판례 중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총 781건이며, 그 중 제1심 판결은 672건으로 86.0%를 차지하였으며, 항소심은 12.5%(98건), 상고심은 1.4%(11건)이었다(아래 <표 2>, [그림 1] 참조). 확보된 판결문들 중에서 제1심 판결과 항소·상고심의 수를 단순히 비교하면, 제1심 판결 중 약 14.6%(98/672건)의 사건이 항소심으로 진행하였고, 항소심 사건 중 11.2%(11/98건)의 판결이 상고심으로 발전해가는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 사건의 경우에도 약 15.6%(85/545건)의 항소율을 보이고 있다. 종합하면 항소율은 약 15% 전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고율도 중대재해 발생사건의 경우 10.6%,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경우에는 11.2%로 일반 형사사건의 불복율 약 40-50% 보다는<sup>4)</sup> 상당히 낮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3) 법리분석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관련해서는 해당 부분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4) 전국 평균 형사사건에 대한 항소율은 2018년 41.9%, 2019년 42.7%, 2020년 41.6%, 2021년 44.1%, 2022년 6월까지 43.3%로 꾸준히 40% 이상의 항소율을 보이고 있고, 상고율은 전국고등법원 사건에 대한 상고율은 평균 40% 이상, 지방법원 항소심에 대한 상고율은 5년 연속 평균 30%이상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관련 자료는 한국법률일보, “22년 상반기 형사사건 항소율·상고율 1위 법원은 53%-47.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10.3. 기사([http://www.lawfact.co.kr/news\\_view.jsp?ncd=3325](http://www.lawfact.co.kr/news_view.jsp?ncd=3325) : 2023.10.4. 최종검색)

〈표 2〉 심급별 사건 수



[그림 1] 심급별 사건 비율

한편, 672건의 판결 중 2020년 선고 판결은 52건,<sup>5)</sup> 2023년 선고 건수는 43건으로 나타났고, 2021년 선고된 사건은 272건, 2022년 선고된 사건은 305건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된 판결문은 2021년과 2022년 선고된 사건이 전체의 85.9%를 차지하였고, 2020년이 7.7%, 2023년이 6.4%이었다.

〈표 3〉 제1심 사건의 선고년도

선고년도	2020	2021	2022	2023	전체
사건 수	52	272	305	43	672
비율(%)	7.7	40.5	45.4	6.4	100.0

5) 2020년 전체 수집된 판결 수가 상대적으로 소수인 것은 2020년 1월 16일 시행법률이 적용된 사건은 2020년 1월 16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이므로 최소한 2020년 후반기에 비로소 판결이 선고되는 점, 본 연구에서는 도급에 관한 법리분석이 중요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건설업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중점을 두고 판례를 수집한 점 때문에 나타난 현상임을 밝혀 둔다.

제1심 사건의 사물관할은 단독사건, 합의부사건, 약식사건, 그리고 과태료 사건으로 나타났고, 전체 672건의 판결 중에서 제1심 단독 603건, 합의부 2건, 약식 66건, 그리고 과태료 결정 1건이었다. 비율을 보면 고단 89.7%로 가장 많았으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사건은 66건으로 9.8%이었다. 그 외 합의부 사건(고합)이 2건, 0.3%, 과태료 사건 1건, 0.1%를 차지하였다.

〈표 4〉 제1심 사건의 관할

(단위 : 건, %)

사물관할	고단	고정	고합	과	전체
사건 수	603	66	2	1	672
비율(%)	89.7	9.8	0.3	0.1	100.0

제1심 사건의 선고법원을 살펴보면, 수원지방법원이 93건으로 전체 판례 중 13.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창원지방법원이 11.0% (74건)이었다. 대구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은 9.1% (61건), 인천지방법원은 8.3% (56건), 광주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이 8.1% (54건)이었다.

〈표 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제1심 선고법원별 사건 수

선고 법원	사건 수	비율(%)
광주	54	8.0
대구	61	9.1
대전	45	6.7
부산	61	9.1
서울	54	8.0
수원	93	13.8
울산	50	7.4
의정부	35	5.2
인천	56	8.3
전주	37	5.5
제주	8	1.2
창원	74	11.0
청주	12	1.8
춘천	32	4.8
전체	672	100.0



[그림 2] 선고 법원별 사건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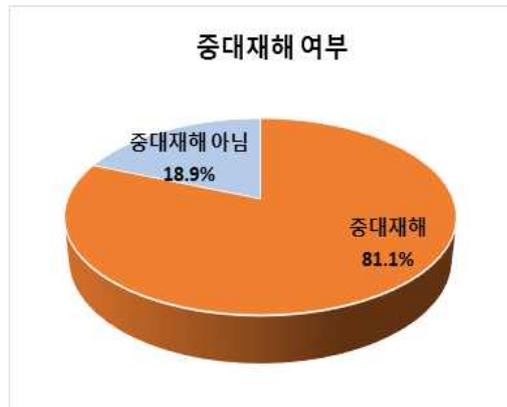
## 2) 중대재해 사건 판례 분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중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판결을 선별하기 위해 판결문 전체의 사실관계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또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sup>6)</sup>를 다른 사건을 선별하여 본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중대재해로 분류된 총 672건의 제1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중 중대재해 사건은 그 중 545건으로 81.1%에 해당하며,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은 총 127건으로 18.9%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중 법원에 기소되는 사건의 80% 이상은 중대재해발생 사건이며,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건 중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사건은 주로 중대재해 사건임을 알 수 있다.

〈표 6〉 중대재해 여부

중대재해 여부	사건 수	비율(%)
중대재해	545	81.1
중대재해 아님	127	18.9
전체	672	100.0



[그림 3] 중대재해 사건 비율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중대재해의 범위

분석 대상인 중대재해 사건의 경우 사건발생일로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소요된 시간은 평균 413.95일로 약 13.8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고년도별로 소요기간을 살펴보면, 2020년도는 평균 392.97일(13.1개월)이고, 2021년이 369.00일(12.3개월)이며, 2022년이 440.30일(14.7개월), 2023년에는 평균 528.42일(17.6개월)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1심 선고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다소 줄었으나, 선행 연구결과에서<sup>7)</sup> 나타난 소요기간과 2021년 소요기간을 제외하면 중대재해사건 발생일로부터 제1심 선고시까지 소요되는 수사와 재판 기간은 점점 길어지는 경향을 보였다.<sup>8)</sup>

〈표 7〉 사건발생일로부터 제1심 선고일까지 소요기간

(단위 : 일)

선고년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2020	38	166	1102	392.97 (13.1개월)	227.12
2021	217	146	1317	369.00 (12.3개월)	168.05
2022	257	134	2479	440.30 (14.7개월)	218.39
2023	33	227	2640	528.42 (17.6개월)	413.94
전체	545	134	2640	413.95 (13.8개월)	221.82

- 7) 이진국/양승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판례 분석(2021.12.15.), 고용노동부 용역과제, 21쪽에서는 인명사고 발생사건의 사건발생일로부터 제1심 선고시까지 소요기간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2020년 246건 평균 13.38개월, 2021년 151건 평균 13.98개월로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큰 차이는 없으나 다소 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이 연구의 판례수는 총 257건, 선행연구의 대상 판례수는 151건이라는 점에서 이 연구의 14.7개월이 보다 많은 사건수의 평균값이라고 보면 지속적으로 소요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 8)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경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보다 수사와 기소 및 공판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산안법과 중처법이 병합되는 경우 결국 산안법의 심리와 선고도 보다 장기간 소요기간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대재해 사건 545건에 대한 제1심 판결에서 최고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벌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348건으로 약 63.9%를 차지하여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였다. 즉 다수의 피고인이 등장하는 사건의 경우 최고책임자의 형량을 중심으로 하고, 도급이 문제된 사안에서는 원청의 가장 상위 책임자에게 선고된 형량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약 3.7%인 총 20건에서 실형의 징역이 선고되었고, 금고 1건, 금고의 집행유예 6건이 선고되었다. 벌금형은 총 159건으로 전체 판결의 29.2%를 점했고, 면소 및 불기소 3건, 무죄 8건이었다.

종합하자면 집행유예(징역, 금고)가 총 354건으로 65.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29.2%의 벌금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대한 자연인의 형사책임은 주로 징역(금고 포함)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은 종래와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즉, 종래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의 자연인인 피고인의 형벌의 종류는 징역형과 금고형을 포함하여 그 집행유예가 차지하는 비율이 33.36%였고, 벌금형이 57.26%를 차지했다.<sup>9)</sup> 2020년과 2021년 자연인 피고인에 대한 형종 및 자유형과 벌금형의 선고비율을 보면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평균 40.3%, 금고형 8.6%, 벌금형 49% 등으로 나타났다.<sup>10)</sup>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전체 사건의 자연인인 피고인 전체에 대한 형종과 형량 분석인 위 두 자료와 비교할 때 중대재해사건의 경우, 특히 최고책임자의 형벌에 있어서는,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의 선고비율이 전체사건의 63.9%, 벌금형이 29.2%를 차지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평균보다 자유형 및 그 집행유예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김성룡/이진국/김도우/조흥학/김기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연구, 고용노동부 정책용역자료(2018), 155쪽 이하 참조.

10) 이진국/양승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판례 분석(2021.12.15.), 고용노동부 용역과제, 24쪽 참조.

더구나 징역형 실행의 비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종래 평균 2.18%에 비해<sup>11)</sup> 3.7%로 다소 높기는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비율이 중대 재해 사건에 있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전체 사건의 평균에 약 2배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8〉 제1심 중대재해 판결의 형벌(최고책임자<sup>12)</sup> 기준)

구분	징역	징역 /집유	금고	금고 /집유	벌금	면소/불기소	무죄	전체
사건수	20	348	1	6	159	3	8	545
비율 (%)	3.7	63.9	0.2	1.1	29.2	0.6	1.5	100.0

### 3) 2020년 1월 개정 법률 시행 전후 중대재해 관련 사건 분석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입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전에 사건이 발생한 경우와 개정 이후에 사건이 발생한 판결문을 분류하였다.

사건 발생일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전인 2020년 1월 15일 자정까지인 경우는 확보된 판결문 중 총 47건으로 약 8.6%를 차지하고, 2020년 1월 16일 0시 이후 발생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 판결은 총 498건으로 91.4%이었다. 사건발생일이 개정 전인 47건의 판결 중 23건은 2020년 선고된 사건이고, 연도별로는 2021년 17건, 2022년 6건, 2023년 1건이 선고되었다. 산

11) 김성룡/이진국/김도우/조흥학/김기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연구, 고용노동부 정책용역자료(2018), 156쪽 참고

12) 최고책임자라고 표시한 것은 하나의 사건에서 다수의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문제된 경우 사안에서 가장 상위의 책임자로 판단된 피고인의 형벌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대표이사, 총괄책임자, 현장소장 순으로 처벌되는 경우 대표이사의 형벌을 기준으로 한 것을 의미한다).

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후 발생한 사건에 대한 판결 총 498건 중 2020년 선고된 사건은 15건, 2021년 200건, 2022년 251건, 2023년 32건이 선고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전에 발생한 사건은 총 47건이고, 개정 이후에 신법이 적용된 사건은 총 498건이므로 구법 상태에서의 법적용의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47건의 대표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2020년 1월에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이 예정된 상태였으므로 2019년 개정 전의 법률 적용 사정과는 다르다는 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비교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표본 수가 적은 점을 고려하여 종래 개정 전 법률 상태에서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아래에서 간략하게 비교하기로 한다.

〈표 9〉 중대재해 사건 발생일과 선고년도

사건발생일	선고년도	빈도	퍼센트
개정 전	2020	23	48.9
	2021	17	36.2
	2022	6	12.8
	2023	1	2.1
	합계	47	8.6
개정 후	2020	15	3.0
	2021	200	40.2
	2022	251	50.4
	2023	32	6.4
	합계	498	91.4

우선 본 연구에서 확보한 판결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전후의 형

벌 변경을 살펴보면, 아래 <표 10>에서 보듯이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 중대재해 사건에서는 자유형이 61.7%, 벌금형이 25.5%의 비율을 보이고, 무죄나 면소판결은 6건 12.8%로 나타났다. 그런데 개정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한 신법 적용 결과, 자유형은 346건으로 69.5%, 벌금형은 147건으로 29.5%, 무죄나 면소판결은 5건으로 1.0%로 분석되었다. 달리 말해 자유형의 경우에는 약 7.8% 증가했고, 벌금형도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나 면소판결 수는 1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전·후로 구분하여 형벌과의 연관성 분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자유형과 벌금형은 증가하고, 무죄나 면소판결은 가장 많은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에서 추가적인 통계 분석을 통해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할 것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후에 원청·도급인에 대한 형사책임이 강화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표 10> 법률 개정 전후 선고 형종간 비율의 변화**

개정 전후 구분		형벌			전체
		자유형	벌금형	무죄/면소	
2020년 1월 16일 이전	사건 수	29	12	6	47
	비율(%)	(61.7)	(25.5)	(12.8)	(100)
2020년 1월 16일 이후	사건 수	346	147	5	498
	비율(%)	(69.5)	(29.5)	(1.0)	(100)
전체	사건 수	375	159	11	546
	비율(%)	(68.8)	(29.2)	(2.0)	(100)

$\chi^2 = 34.205$ (p-value=0.000)로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후 중대재해를 대상으로 한 판결들을 선고년도

별로 세분하여 선고된 형종, 사건 수, 그 비율 등을 살펴보면 아래 <표 11>과 같다. 앞의 <표 10>에서도 제시되었듯이, 법률 개정 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하여 구법을 적용하여 선고된 판결 47건 중에서 29건이 자유형이 선고되어 61.7%에 달했고, 벌금형은 12건 25.5%이었고, 무죄·면소에 해당하는 경우가 12.8%였다. 법률 개정 후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신법을 적용하여 2020년에 선고된 판결은 총 15건으로 그 중 11건이 자유형으로 전체 사건 대비 73.3%를 차지하여 그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전체 선고 사건수가 15건에 불과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함의를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2021년 선고된 총 200건, 2022년 선고된 총 251건의 판결 중 자유형은 각각 129건(64.5%)과 180건(71.71%)으로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2023년 4월 30일 이전에 선고된 판결 총 32건 중에서 26건에 대해 자유형이 선고되어 총 81.3%를 차지함으로써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2023년 선고 판결은 4개월간 선고된 판결의 형벌을 합산한 수치라는 점에서 확정적 평가는 어려운 상태라고 하겠다.

벌금형의 경우에는 2021년에는 34.0%, 2022년에는 27.5%, 2023년은 18.8%로 해마다 그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자유형의 선고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한 것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중 특히 중대재해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 이후 점차적으로 사업주나 원청 책임자의 형사책임을 묻는 방법을 벌금형보다 자유형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업주나 원청에 대한 처벌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추단할 수 있을 듯하다.

〈표 11〉 법률 개정 전후 선고년도별 형종간 비율의 변화

		자유형		벌금형		무죄/면소		전체
		사건 수	비율(%)	사건 수	비율(%)	사건 수	비율(%)	
개정 전(2020)		29	61.7	12	25.5	6	12.8	47
개정 후 선고 년도	2020	11	73.3	4	26.7	0	0.0	15
	2021	129	64.5	68	34.0	3	1.5	200
	2022	180	71.7	69	27.5	2	0.8	251
	2023	26	81.3	6	18.8	0	0.0	32

#### 4) 2021년 7월 양형기준 개정 전후 판결 분석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1차 수정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2차 양형기준)이 적용된 판결과 구 과실치사상죄의 양형기준(구 양형기준=1차 양형기준)이 적용된 판결을 구분하여 양형 차원에서 특정한 변화가 감지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사건발생일을 (기소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그 구별 기준일로 사용하였다. 현재 양형위원회 운영기준 제20조에 따르면 제·개정된 양형기준을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판결문의 대상이 된 사건이 언제 기소되었는지를 파악하여야 하지만,<sup>13)</sup> 사실상 기소일을 파악

13)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시점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다. “양형기준 시행 이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은 그 이후에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로 공소제기되었다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형사재판 진행 중에 양형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소제기 시의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소제기 후 양형기준의 변경에 의하여 대상범죄가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변경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범위가 종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범위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새로운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한편, 양형기준은 구약식

하는 것은 본 연구 범위 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건발생일과 판결선고일 중 하나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판결선고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통계 결과에는 의미 있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에서는 선행 연구 중 판결선고일을 기준으로 양형기준 개정 전후의 판결을 일부 분석한 결과와 비교한 결과도 제시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발생한 사건을 대상으로 선고된 판결 총 498건을 양형기준 수정 전후로 구별하여 분석한 결과, 징역형과 그 집행유예는 양형기준 수정 전 61.9%(232건)에서 수정 후 71.8%(89건)로 증가하였으나, 벌금형은 수정 전 31.5%(118건)에서, 수정 후 24.2%(30건)으로 감소하였다. 그 외 징역형 실행은 0.8% 감소하였고, 금고는 0.3% 감소, 금고형의 집행유예도 0.5% 감소하였다. 무죄도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자면 징역, 금고, 그리고 그 집행유예를 포함한 자유형의 선고비율은 양형기준 수정 전 67.4%였으나, 양형기준 개정 이후에는 총 75.8%로 약 8.4%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무죄와 면소율도 1.3% 감소하며 0건으로 나타났고, 자유형의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벌금형은 상대적으로 비율이 떨어져 31.3%에서 24.2%로 7.1% 감소했다. 달리 말해 벌금형의 감소된 비율은 대부분 자유형으로 옮겨갔음을 알 수 있다.

또는 정식재판청구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고 공판절차회부 사건에만 적용한다. 구공판 사건이라도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이 벌금형에 관한 기준을 별개로 또는 징역형과 병행하여 제시하거나, 벌금형 선택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지침을 설정하지 않는 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이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적용범위 참조: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explan/introduction/introduction\\_02.jsp](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explan/introduction/introduction_02.jsp) : 2023.10.1. 최종검색)

〈표 12〉 제1심 중대재해 판결의 선고 형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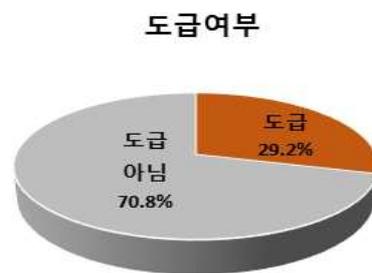
양형기준 수정 전후		징역	징역 /집유	금고	금고 /집유	벌금	면소/ 불기소	무죄	전체
수정 전	사건 수	15	231	1	5	117	2	3	374
	비율 (%)	4.0	61.8	0.3	1.3	31.3	0.5	0.8	100.0
수정 후	사건 수	4	89	0	1	30	0	0	124
	비율 (%)	3.2	71.8	0.0	0.8	24.2	0.0	0.0	100.0

### 5) 도급 관련 사건 판결문 분석

2020년 1월 16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전후를 기준으로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문제된 사안의 법률 적용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확보된 총 545건의 판결문을 대상으로 도급인의 형사책임이 문제된 경우를 선별한 결과, 총 159건(29.2%)이 도급 관련 사건으로 나타났고 도급이 아닌 사건은 386건(70.8%)이었다.

〈표 13〉 도급 여부

도급 여부	빈도	비율(%)
도급	159	29.2
도급 아님	386	70.8
전체	545	100



[그림 4] 도급 사건의 비율

## (1) 도급인 처벌 분석

연구기간 중 선고된 총 159건의 도급사건 중 도급인으로서 자연인인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종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78건(49.1%)으로 가장 많았으며, 벌금형이 62건(39.0%)로 그 다음으로 많이 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형(징역형,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형과 벌금형, 금고형, 금고형 집행유예)은 모두 90건으로 전체의 56.6%를 차지하였으며 무죄는 5건으로 3.1%이었다. 도급사의 책임자가 불기소된 사건 2건이 있다.<sup>14)</sup>

〈표 14〉 도급인으로서 자연인인 피고인에 대한 선고 형종

구분	징역	징역 /집유	징역 (집유) 벌금	금고 /집유	금고 (집유) 벌금	벌금	무죄	불기소
사건수	6	78	4	1	1	62	5	2
비율 (%)	3.8	49.1	2.5	0.6	0.6	39.0	3.1	1.3

다음으로 159건의 도급이 문제된 사건에서 도급인 피고인 중 자연인에 대하여 선고된 형종 중에서 자유형의 형량과 벌금형의 선고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sup>15)</sup>

도급인인 자연인 피고인에 대해 선고된 자유형인 징역과 금고는 최소 2개월, 최대 42개월(3년 6개월)로 나타났으면, 전체 사건 평균 8.92개월이 선고되었다. 자연인에게 부과된 벌금형의 경우 최소 100만원이었고, 최대 2,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사건 평균 666.42만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자유형의 경우 평균 9개월 정도, 벌금형은 평균 약 670만원이 선고되고 있다.

14) 무죄 이유나 불기소 이유는 아래의 종합분석에서 다룬다.

15) 벌금형의 수(N)에는 자유형이 병과된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표 15〉 도급인(자연인) 피고인의 처벌 형량

형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자유형	90	2개월	42개월	8.92개월	5.35개월
벌금형	67	100만원	2000만원	666.42만원	317.11만원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자연인이 어떤 지위인가에 따라 선고된 형종의 특징이 있는지 비교 검토하기 위해, 우선 도급인의 지위가 대표, 대표이사, 개인사업주, 대표와 현장소장을 겸한 경우에는 ‘대표’라고 분류하고,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지배인, 전무, 상무, 공장장 등인 경우에는 ‘책임자’로 분류하였다.

도급인이 불기소된 사건 2건을 제외한 157건의 도급사건 중 대표가 포함된 사건은 50건으로 전체 31.8%이었으며, 대표가 포함되지 않은 사건은 총 107건으로 68.2%를 차지했다. 대표와 책임자로 분류한 두 종류의 피고인 지위를 기준으로 할 때 징역형이 선고된 비율에서는 대표가 62.0%로 책임자 53.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벌금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이와 반대로 대표가 32.0%, 책임자가 43.0%로 대표에게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판결 중에서 자유형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는 대표가 징역형 4건이었고, 책임자에 대한 징역형이 2건이었다.

〈표 16〉 도급인(자연인)의 지위에 따른 선고 형종

자연인 직위		징역 (집행유예 포함)	금고 (집행유예 포함)	벌금	무죄	전체
대표	사건수	31 (실형 :4)	1	16	2	50
	비율 (%)	62.0	2.0	32.0	4.0	100.0
책임자	사건수	57 (실형 :2)	1	46	3	107
	비율 (%)	53.3	0.9	43.0	2.8	100.0

도급인 피고인인 자연인이 가지는 지위(대표 또는 책임자)에 따른 자유형에 대한 형량과 벌금형의 벌금액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유형의 경우 대표는 최소 4개월이고, 최대 24개월, 평균은 9.06개월이었다. 책임자에게는 최소 징역 2개월, 최대 징역 42개월, 평균 8.84개월이 부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대표의 자유형의 정도가 책임자보다는 높으나, 그리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에서 대표에게는 최소 150만원,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고, 평균 673.53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되었다. 책임자에게는 최소 100만원, 최대 2,000만원이며, 평균 664.00만원이었다. 벌금형도 대표가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자유형과 벌금형 모두 최대 값에서는 현장 책임자급인 책임자에게 부과된 형벌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도급인으로서 자연인인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의 지위에 따른 자유형의 형량과 벌금형의 벌금액의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 17〉 도급(자연인) 피고인의 지위에 따른 형량 비교

형종	지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자유형	대표	32	4개월	24개월	9.06개월	3.93개월
	책임자	58	2개월	42개월	8.84개월	6.02개월
벌금형	대표	17	150만원	1,000만원	673.53만원	291.61만원
	책임자	50	100만원	2,000만원	664.00만원	328.11만원

도급사에 해당되는 법인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형과 벌금액에 대한 분석은 아래 〈표 18〉과 같다. 총 159건 중 16건은 개인사업주가 피고인이거나 법인은 피고인으로 기소되지 않은 사건이었다. 피고인인 법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140건으로 전체 88.1%이었고,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3건으

로 1.9%로 나타났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에서 최소 벌금액은 150만원이고, 최대 벌금액은 1억원이었으며, 도급 법인에 대한 평균 벌금액은 956.07만원이었다. 1,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개인에 부과되는 형벌과는 약 300만원의 차이에 그치고 있다.

〈표 18〉 도급(법인)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 등

구분	벌금 및 벌금액		무죄	피고인 아님	전체
사건 수	140	최소 - 150만원 최대 - 1억	3	16	159
비율 (%)	88.1	평균 - 956.07만원 표준편차 - 1,101.56만원	1.9	10.1	100.0

## (2) 수급인 처벌 분석

도급이 포함된 사건 중 수급인인 자연인 피고인에 대한 선고 형종을 분석한 결과,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89건(56.0%)으로 가장 많았으며, 벌금형이 37건(23.3%)으로 그 다음으로 많이 선고되는 형종으로 나타났다. 자유형(징역형, 징역형 집행유예, 금고형, 금고형 집행유예)은 모두 103건으로 64.8%를 차지하였으며, 무죄는 4건으로 2.5%이었다. 수급회사의 책임자가 기소되지 않은 사건은 15건이었으며, 2건은 수급 자연인 피고인의 사망으로 절차가 중단되어 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과 수급 자연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은 사건이었다. 앞서 검토한 도급인인 자연인에 부과된 형벌과 비교할 때, 자유형의 선고 비율이 높았으며, 벌금형의 선고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수급(자연인) 피고인에 대한 선고 형종

구분	징역	징역 /집유	금고	금고 /집유	벌금	무죄	불기 소	전체
사건 수	7	89	2	5	37	4	15	159
비율 (%)	4.4	56.0	1.3	3.1	23.3	2.5	9.4	100.0

도급 사건에서 수급인 피고인 중 자연인에 대한 선고 형종 중 자유형에 대한 형량과 벌금형의 벌금액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20〉과 같다. 도급회사의 자연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자유형과 벌금형이 병과된 경우가 있었으나, 수급인 회사의 자연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자유형과 벌금형이 병과된 사건은 발견되지 않았다.<sup>16)</sup>

수급인으로 자연인인 피고인에 대한 징역과 금고 등 자유형은 최소 2개월, 최대 42개월로 나타났으며, 103건의 자유형의 형기 평균은 8.09개월로 나타났다. 벌금형의 경우 최소 선고액은 200만원, 최대 1,200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평균 벌금액은 693.24만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서 살펴본 도급회사의 자연인인 피고인에 대해 부과된 형벌과 비교할 때 수급사 자연인 피고인이 도급사 자연인 피고인에 비해 자유형의 형량은 조금 낮았으나, 벌금형의 벌금액은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 수급(자연인) 피고인의 처벌 형량

형벌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자유형	103	2개월	42개월	8.09개월	4.46개월
벌금형	37	200만원	1,200만원	693.24만원	267.23만원

16) 구체적인 이유, 즉 범죄의 유형, 위반의 정도 등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수급회사의 자연인인 피고인의 지위에 따른 형종별 선고 비율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 21>와 같다. 수급인 회사의 자연인인 피고인들의 지위도 위 도급인의 경우와 같이 대표와 책임자로 분류하였다.<sup>17)</sup>

수급인이 피고인으로 기소되지 않은 15건을 제외하고 144건의 도급이 관례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사건 중 수급사 대표가 포함된 사건은 84건으로 전체 58.3%이었으며, 대표가 포함되지 않은 사건은 60건으로 41.7%이었다. 수급사 피고인들의 경우는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가 다수이고 법인의 처벌이 없어 사업자의 대표가 대부분 기소되는 현상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급회사의 관계자인 자연인 피고인 중에서 대표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 징역형(집행유예포함)이 선고된 건수는 56건으로 84건 중 66.7%를 차지했고, 책임자에게 징역형(집행유예포함)이 선고된 건수는 40건으로 60건 중 66.7%이었다. 금고형은 대표 지위의 피고인에게 총 5건이 선고되어 6.0%, 책임자에게는 2건이 선고되어 3.3%이었다.<sup>18)</sup>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과 금고형에서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징역 7건과 금고 2건으로 총 9건이었음에 비해 하위 직급인 책임자에게는 징역형과 금고형 모두 집행유예됨으로써 특징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달리 말해 수급인 회사의 대표이사 등 최고 책임자의 책임을 소속 직원들의 책임보다는 중하게 묻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벌금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수급회사의 대표가 25.0%이고, 책임자로 분류된 자연인들은 26.7%이었다. 징역형의 경우 대표자와 책임자에 속하는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비율이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벌금형의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1.7%정도 선고비율이 높지만 양자 사이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17) 도급회사와 수급회사에 속하지 않는 (하도급 등) 크레인 기사 등의 개인사업자도 대표로 분류하였다.

18) 금고형은 산안법의 형벌이 아니고 형법상 범죄인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형벌이므로 사실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등의 위반으로 인한 자유형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정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자유형에 함께 넣어 분석하였다.

〈표 21〉 수급(자연인)의 지위에 따른 선고 형종

자연인 직위		징역 (집행유예 포함)	금고 (집행유예 포함)	벌금	무죄	전체
대표	사건수	56 (실형 :7)	5 (실형 :2)	21	2	84
	비율 (%)	66.7	6.0	25.0	2.4	100.0
책임자	사건수	40	2	16	2	60
	비율 (%)	66.7	3.3	26.7	3.3	100.0

수급인 회사의 자연인인 피고인의 지위에 따른 자유형에 대한 형량과 벌금형의 선고액을 비교한 결과는 아래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자유형의 경우 대표는 최소 3개월, 최대 42개월, 평균 8.61개월이었으며, 책임자는 최소 2개월, 최대 16개월, 평균 7.33개월이었다. 즉 수급인으로서 자연인인 피고인들 중에서는 대표가 책임자에 비해 형량이 다소 높게 선고되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의 선고형량을 보면 대표가 최소 200만원, 최대 1,000만원이고, 평균 664.29만원이었으며, 책임자는 최소 500만원, 최대 1,200만원이며, 평균 731.25만원이었다. 선고된 벌금형은 하위 직책인 책임자가 대표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9)</sup>

19) 이러한 벌금형 상한의 역전현상은 수급자인 피고인의 경우 현장 책임자가 별도로 있는 회사보다 대표자가 직접 현장을 관리하는 경우가 더 영세한 기업일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대표에 대한 벌금형이 더 낮게 부과된 결과일 수도 있고, 대표에게는 주로 자유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다보니 벌금형은 하위 직책인 책임자에게 더 높게 부과되는 듯한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정확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표 22〉 수급(자연인) 피고인의 지위에 따른 형량 비교

형별	지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자유형	대표	61	3개월	42개월	8.61개월	5.41개월
	책임자	21	2개월	16개월	7.33개월	2.37개월
벌금형	대표	42	200만원	1,000만원	664.29만원	289.46만원
	책임자	16	500만원	1,200만원	731.25만원	238.66만원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부과된 자유형과 벌금형의 처벌 형량을 비교해보면 도급인의 경우 자유형 90건과 벌금형 67건, 총 157건에서 자유형은 평균 8.92개월, 벌금형 평균 666.42만원이 선고되었고, 수급인의 경우에는 자유형 103건과 벌금형 37건, 총 140건에서 자유형은 평균 8.09개월, 벌금형은 평균 693.24만원이 선고되었다. 자유형은 도급인에 부과된 형벌이 약 0.83개월 높았고, 벌금형은 약 26.82만원 수급인에게 많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도급인/수급인(자연인)의 처벌 형량 비교

형별	피고인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자유형	도급인	90	2개월	42개월	8.92개월	5.35개월
	수급인	103	2개월	42개월	8.09개월	4.46개월
벌금형	도급인	67	100만원	2000만원	666.42만원	317.11만원
	수급인	37	200만원	1200만원	693.24만원	267.23만원

수급회사인 법인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형에 대한 분석 결과 총 159 중 66건은 개인사업체로 법인이 없거나, 법인이 피고인이 아닌 사건이었으며, 1건은 피고인 대표가 사망하여 절차가 종결되어 형의 선고가 없는 사안이다.

법인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총 91건으로 전체 57.2%이며,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은 2건으로 1.3%로 나타났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들 중에서 최소 벌금액은 100만원이고, 최대 벌금액은 4,000만원이며, 평균 벌금액은 575.66만원이었다. 법인 벌금형의 경우 도급회사 법인보다 수급회사 피고인 법인에 대한 벌금액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수급(법인) 피고인의 선고 형종과 벌금

구분	벌금 및 벌금액		무죄	피고인 아님	전체
사건수	91	최소 - 100만원 최대 - 4,000만원	2	66 (사망:1)	159
비율 (%)	57.2	평균 - 792.31만원 표준편차 - 575.66만원	1.3	41.5	100.0

### (3) 도급인 양형인자

도급회사의 대표자나 법인에 대한 선고형 결정에 영향을 미친 양형인자의 분석을 위해 판결문에 등장하는 다양한 양형요소들을 도급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와 불리한 양형인자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판결들 중에서 양형 사유나 요소를 언급하고 있는 판결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유리한 인자와 불리한 인자들은 다수 언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중복적용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도급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설시가 등장하는 판결문은 143건으로 중복으로 수집된 446가지 양형 이유는 아래와 같이 요약되었다.

유리한 양형인자로는 합의, 보상, 피해회복(합의금, 보상금, 유족급여, 산재처리 등 포함)이 30.3%로 가장 많았으며, 초범 및 전과 없음(벌금형 초과전과 없음, 동종 전과 없음 등 포함)이 17.3%, 반성 및 인정이 15.0%, 처벌불원과

선처 13.9%, 그리고 시정 및 재발방지노력(사후조치, 안전점검 조치 등 포함)이 10.8%로 많이 언급되었다.

피해자 과실도 5.8%의 빈도로 유죄 사건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리한 양형 중 ‘합의, 보상, 피해회복’은 총 143건 중 135건에서 언급되어 94.4%의 판결문에서 유리한 양형사유로 적용되었다. 달리 말해 거의 대부분의 판결문에서 압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언급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초범 및 전과 없음’이 77건으로 전체 판결문의 53.8%에 등장하여 과반이 언급되었다. 그 밖에도 공탁, 건강이 좋지 않음, 책임 중첩, 공동수급에서 탈퇴 등 해당 사안에 특수한 양형사유들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표 25〉 도급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

유리한 양형	N	비율(%)	케이스 비율(%)
반성 및 인정	67	15.0%	46.9%
처벌불원, 선처	62	13.9%	43.4%
합의, 보상, 피해회복	135	30.3%	94.4%
시정 및 재발방지노력	48	10.8%	33.6%
피해자 과실	26	5.8%	18.2%
초범 및 전과없음	77	17.3%	53.8%
약한 과실 및 현실적 한계	14	3.1%	9.8%
안전조치 시행	8	1.8%	5.6%
기타	9	2.0%	6.3%
전체	446	100.0%	311.9%

도급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들이 실시된 판결문은 총 116건으로 중복으로 수집된 159가지 양형 이유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불리한 양형사유에서는 ‘피해자 사망 및 상해’가 66.7%로 가장 많았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15.1%, ‘미합의·합의노력부족’이 9.4%, ‘중과실’이 7.5%, ‘책임축소 및 부인’이 1.3%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사상의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의 핵심표지라는 점에서 실제 불리한 양형요소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것과 ‘합의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미합의 및 노력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표 26〉 도급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

불리한 양형	N	비율(%)	케이스 비율(%)
피해자 사망 및 상해	106	66.7%	91.4%
동종 범죄 전력	24	15.1%	20.7%
미합의 및 노력부족	15	9.4%	12.9%
중과실	12	7.5%	10.3%
책임축소 및 부인	2	1.3%	1.7%
전체	159	100.0%	137.1%

#### (4) 법률 개정 전후 도급 사건 관련 판례 분석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인 책임 가중을 내용으로 하는 전면 개정 전후의 판결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을 분석해 보기 위해서 중대재해 사건 중 도급사건을 대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에 대한 형종을 분석한 본 연구의 통계자료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sup>20)</sup> 개정 전 도급관계의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형종 특성에

20) 이진국·양승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판례 분석, 고용노동부 용역과제

대해 분석한 통계자료를 비교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개정 이후의 도급 관련 판결은 143건(159건의 도급 관련 판결 중 법 개정 이전의 사건을 대상으로 한 16건 제외)이었고,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불기소 1건 및 피해자의 사망사고가 아닌 사건 5건을 제외하고 도급인의 형사책임이 문제된 137건의 형종을 보면 아래와 같다.

기존 통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도급인 책임이 가중되기 전의 구법 적용 하에서 도급회사 소속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징역형은 26.7%(20건), 금고형이 5.3%(4건)이었으나, 본 연구의 통계분석에 따른 개정 후 137건의 도급 관련 판결에서 최고책임자에 부과된 형벌은 징역형이 52.6%(72건), 징역형과 벌금형이 2.9%(4건), 금고형이 0.7%(1건), 금고형과 벌금형이 0.7%(1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급과 관련해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된 판결 128건은 법률 개정 후 138건의 사망 사건 중 수급인 불기소 10건을 제외한 판결들이다. 먼저 법률 개정 전 수급인 소속 피고인들에 대하여서는 징역 50.6%(39건), 징역과 벌금형이 병과된 경우가 1.3%(1건), 금고형이 2.6%(2건), 벌금 45.5%(35건)이었고, 법률 개정 후 수급인 측에 대해 부과된 형종은 징역이 67.2%(86건), 금고가 4.7%(6건), 벌금이 25.8%(33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형종의 비율에 있어서는 개정 이후 수급인과 도급인 소속 책임자에게 모두 징역형의 선고 비율이 증가했지만, 특히 도급인측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대표에게 자유형의 선고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자면 도급인과 수급인인 자연인 피고인에 대해서 법률 개정 이후 자유형의 선고비율이 증가하였고, 벌금형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징역형의 증가폭은 도급인측 피고인의 경우 수급인측 보다 크고, 벌금형의 감소폭도 도급인측이 수급인측 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개정 전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징역형이 부과되는 비율은 도급인

---

(2021), 36~37쪽 참조

26.7%, 수급인 50.6%였으나, 개정 후 도급인 52.6%, 수급인 67.2%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는데, 결국 도급인에 대한 자유형 선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도급인 보다는 수급인에게 자유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높다는 것도 알 수 있다.

〈표 27〉 법률 개정 전후 도급/수급인 피고인의 선고 형종 비교

구분	도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수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징역	금액	비율	징역	금액	비율
개정 전 <sup>21)</sup>	징역	20	26.7%	징역	39	50.6%
	징역/벌금	0	0.0%	징역/벌금	1	1.3%
	금고	4	5.3%	금고	2	2.6%
	금고/벌금	0	0.0%	금고/벌금	0	0.0%
	벌금	51	68.0%	벌금	35	45.5%
	무죄	0	0.0%	무죄	0	0.0%
	전체	75	100%	전체	77	100%
개정 후	징역	72	52.6%	징역	86	67.2%
	징역/벌금	4	2.9%	징역/벌금	0	0.0%
	금고	1	0.7%	금고	6	4.7%
	금고/벌금	1	0.7%	금고/벌금	0	0.0%
	벌금	56	40.9%	벌금	33	25.8%
	무죄	3	2.2%	무죄	3	2.3%
	전체	137	100.0%	전체	128	100.0%

도급사 소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대표 또는 책임자)와 수급사 소속 안전보건관리책임자(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형벌을 비교해보면 개

21) 이진국·양승국, 앞의 보고서, 36~37쪽 참조

정 후 도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징역형의 평균 형량은 9.01개월로 수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8.12개월보다 약 1개월(0.89개월)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개정 전에도 개정 후와 마찬가지로 도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수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형량보다 높았으나 약 0.5개월(0.49개월) 차이였다. 즉 법률 개정 후에는 수급인에 대한 징역형과 도급인에 대한 징역형의 차이가 더 커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 이후 수급인과 도급인 모두에 대한 처벌 형량이 증가하였고, 도급인의 경우 2.11개월, 수급인은 1.71개월 증가하여, 도급인에 대한 자유형의 선고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2)</sup>

벌금형의 경우 개정 후 도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평균 벌금액이 664.75만원으로 수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평균 벌금액 701.52만원보다 적었으며, 개정 전도 도급보다 수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벌금이 높아 동일한 추세를 보였다.

결국 도급인에 대한 형벌은 법률의 개정 전후와 무관하게 자유형의 경우 수급인에게 부과되는 자유형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벌금형의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부과되는 벌금형의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징역형 평균 기간의 편차에 있어서는 법 개정 전보다 법 개정 후가 조금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추정하건대 도급인에게 중대재해의 책임을 묻는 경우는 그 불법과 책임, 죄질 등이 중하다고 볼 수 있어 당해 사건의 수급인

22) 이진국·양승국, 앞의 보고서, 37쪽에서는 2020.1.부터 2021.8까지의 판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징역기간은 개정 후 수급인 7.20개월, 도급인 6.27개월, 벌금액은 개정 후 수급인 500만원, 도급인 600만원으로 징역형은 도급인 경우 개정후 형량이 감소하고, 수급인의 경우 형량이 증가했고, 벌금형의 경우 수급인 경우 감소하고, 도급인 경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정 전 도급인에게 징역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수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고 도급 안전보건관리책임에게는 벌금형 선고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함께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만을 비교하면 수급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선고형량이 더 높게 나타난다. 즉 수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고 도급 안전보건관리책임에게는 벌금형 선고되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어 나타나는 착시현상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분석하면서 결국 산안법 개정 전후로 의미있는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추론하고 있다.

보다 높은 형벌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고, 벌금형의 경우에는 주로 수급인에게 부과되는 사건 수가 많을 수 있다는 점에서 수급인에게 부과되는 벌금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sup>23)</sup>

〈표 28〉 법률 개정 전후 도급/수급 관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형량 비교

구분	도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수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개정 전 <sup>24)</sup>	평균 징역기간	6.90개월	평균 징역기간	6.41개월
	평균벌금액	525.49만원	평균벌금액	530.00만원
개정 후	평균 징역기간	9.01개월	평균 징역기간	8.12개월
	평균벌금액	664.75만원	평균벌금액	701.52만원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경우 법률 개정 후 도급 법인에 대해서는 평균 벌금액이 980.89만원이 선고되었고, 수급 법인에 대한 평균 벌금액 771.43만원 보다 많았으며, 개정 전에도 도급 법인이 수급 법인에 비해 많은 벌금액을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개정 후가 개정 전보다 벌금액의 차이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표 29〉 법률 개정 전후 도급 관계의 법인 형량 비교

구분	도급 법인		수급 법인	
개정 전 <sup>25)</sup>	평균벌금액	584.46만원	평균벌금액	502.56만원
개정 후	평균벌금액	980.89만원	평균벌금액	771.43만원

23) 기존의 연구와 본 연구의 형종과 형량의 추출대상과 방법의 차이, 표본 수의 차이등을 감안할 때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24) 이진국·양승국, 앞의 보고서, 37쪽 참조

(5) 양형기준 강화에 따른 형벌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제2차 양형기준, 즉 1차 수정 양형기준이 2021년 3월 29일 수정되어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구 기준(1차 기준)에 따를 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는 단일 기준이 적용되었으나 제1차 수정 후 2021년 7월 1일 시행된 기준에서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과 구별되어 독자적인 유형으로 분리되고,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가 별도의 유형으로 독립되기 시작했다.

〈표 30〉 산업안전보건범죄 구 양형기준 및 제1차 수정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구 기준 26)	1차 수정 27)	2차 수정 28)	구	1차	2차	구	1차	2차
4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4월- 10월			6월- 1년 6월			10월 -3년 6월		
1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위반		-6월	좌동		4월- 10월	좌동		8월- 1년 6월	좌동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무위반		4월- 8월	좌동		6월- 1년 6월	좌동		1년- 2년 6월	좌동
	안전·보건 조치의무위반 치사		6월- 1년 6월	좌동		1년- 2년 6월	좌동		2년- 5년	좌동

25) 이진국·양승국, 앞의 보고서, 37쪽 참조

26) 2016.7.1. 시행

27) 2021.3.29. 수정, 2021.7.1. 시행. ▷ 3유형 범죄 확정 후 5년 이내 3유형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28) 2021.12.6. 수정, 2022.3.1. 시행. 일반양형인자의 감경요소로 ‘상당한 피해회복(공탁

1차 수정 기준, 즉 2021.7.1. 시행된 기준은 구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의 제4유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을 독립된 ‘산업안전보건범죄’로 분리하고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면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에 별도의 양형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양형위원회는 도급인 보다는 사업주의 의무위반의 가벌성이 더 크다고 보았으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는 사업주와 도급인을 구별하지 않고 동일 양형기준을 사용하는 비합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달리 말해 피해자의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도급과 수급을 불문하고 동일한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게 되었고, 기존의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양형기준보다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의 양형기준의 형벌 구간이 다소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사업주나 도급여부를 불문하고 선고형이 상향되리라는 기대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전체 159건의 도급 관련 판결문 중에서 제1차 수정 기준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 판결문이 138건, 양형기준 수정 후에 발생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 판결이 총 21건으로, 양형기준 수정 후에 발생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 판결이 많지 않아 아래의 분석은 그 의미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후 다수의 판례가 집적되기를 기다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확보된 자료를 활용하여 도급인인 책임자 피고인의 형량을 양형 기준 수정 전과 후를 비교하면, 징역과 벌금형이 병과된 경우는 수정 전이 1.4%(2건)이

포함)을 추가하고, 가중요소로 ‘합의시도 중 피해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요소를 추가하였고,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에 긍정적 요소로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을 추가하고, 일반참작사유에 긍정적 요소로 ‘상당한 피해회복(공탁포함)’을 추가하고 있다. 즉 2차 수정기준에서는 합의나 이를 통한 피해자의 처벌불원노력을 집행유예의 중요한 인자로 명시하고 있고, 제3차 수정기준에서는 ‘금고형의 집행유예이상 전과 없음’을 일반참작사유 중 긍정적 요소로 추가함으로써 전과사실이 불이익을 작용하는 범위를 축소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합의, 합의노력, 공탁, 금고 이상의 전과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의 기준을 적용하면 결국 금전적 배·보상으로 형사책임에서 혜택들 보는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을 것이다.

고 수정 후가 9.5%(2건)로 증가함으로써 수정 후가 다소 많아졌으나 대부분 수정 전과 수정 수의 형량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sup>29)</sup> 수급인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징역형이 수정 전에는 53.6%(74건)이었으나 수정 후에는 71.4%(15건)로 수정 전보다 오히려 증가했으며, 벌금형은 그와 달리 수정 전이 24.6% (34건), 수정 후 14.3%(3건)로 양형 기준 수정 이후로 벌금형의 선고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판단컨대 수급인의 형종이나 형벌의 변화는 양형기준의 변경과는 특별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수급인은 동시에 사업주일 수 있다는 점에서 수정 양형기준과 법원의 판결실무가 정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표 31〉 양형기준 1차 수정 전후 도급인 피고인 형종 비교

구분		징역	징역/ 집유	징역/ 집유/ 벌금	금고	금고/ 집유	금고/ 집유/ 벌금	무죄	벌금	피고 인 아님
도 급	수정전 (138)	건 5	68	2	0	1	1	5	54	2
		% 3.6	49.3	1.4		0.7	0.7	3.6	39.1	1.4
수 급	수정후 (21)	건 1	10	2	0	0	0	0	8	0
		% 4.8	47.6	9.5					38.1	
도 급	수정전 (138)	건 6	74	0	2	5	0	4	34	13
		% 4.3	53.6		1.4	3.6		2.9	24.6	9.4
수 급	수정후 (21)	건 1	15	0	0	0	0	0	3	2
		% 4.8	71.4						14.3	9.5

한편, 도급인인 피고인과 수급인인 피고인에게 선고된 자유형의 형량을 양형기준 전과 후로 비교해보면, 도급인인 경우, 양형기준 수정 전에는 평균 8.79개월이었으나, 양형기준 수정 후에는 9.69개월로 양형기준 수정 후 평균

29) 유사한 분석 결과는 이진국·양승국, 앞의 보고서, 58쪽

형량이 0.9개월 높아졌으나, 수급인인 피고인의 자유형 형량은 양형기준 수정 이전 8.10개월에서 수정 이후 8.00개월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었다. 도급인의 책임을 강조한 개정 법률의 영향이 미쳤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나, 사실상 양형기준의 변화와 부합하는 현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표 32〉 양형기준 수정 전후 도급인/수급인인 피고인 자유형 형량 비교

(단위 : 월)

구분	도급					수급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수정전	77	2	42	8.79	5.43	87	2	42	8.10	4.77
수정후	13	6	24	9.69	4.96	16	6	12	8.00	2.19

도급인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된 자연인인 피고인의 벌금형 형량은 양형기준 수정 전에는 평균 683.33만원, 수정 후에는 570.00만원으로 수정 전에 비해 수정 후가 낮았다.<sup>30)</sup> 한편 수급인인 자연인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액은 수정 이전 평균 686.76만원에서 수정 이후에는 766.67만원으로 수정 후가 오히려 높아졌다.<sup>31)</sup>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아 벌금형이 상향된 것으로 보이지만 도급인의 경우에는 벌금형은 부과액이 감소하고 징역형의 형량이 늘어난 반면에 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징역형의 형량은 감소하게나마 줄어들고, 벌금액 부과액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30) 선행 연구에서도 도급인의 경우 징역형은 늘어나고 벌금형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이진국·양승국, 앞의 보고서, 61쪽).

31) 양형기준 수정 후 도급인에게 선고된 벌금형이 총 10건, 수급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가 3건이라는 점에서 대표성이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추후 보다 다수의 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표 33〉 양형기준 수정 전후 도급인/수급인인 피고인 벌금액 비교

(단위 : 만원)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도급	수정 전	57	100	2,000	683.33	316.42
	수정 후	10	100	1,000	570.00	319.90
수급	수정 전	34	200	1,200	686.76	271.17
	수정 후	3	500	1,000	766.67	251.66

도급인인 법인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형량 변화는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 수정 전 평균 902.92만원에서 수정 후 1,275.00만원으로 수정 전에 비해 양형기준이 변경된 이후에 상당히 높아진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양형기준 수정 후의 최대 벌금액이 1억원으로 수정 전의 최대 벌금액 5,000만원보다 2배였기 때문에 표준편차가 수정 전 817.64만원이었지만, 수정 후에는 2,136.62만원으로 커진 점을 고려하면, 수정 후 분석 대상 판결수가 적어 평균이 크게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수급인인 법인 피고인의 벌금액은 수정 전이 평균 814.29만원, 수정 후 528.57만원으로 수정 후가 오히려 벌금액이 낮았으나, 분석 대상 판결문에서 법인의 벌금형이 문제된 사건 수가 7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참작해야 할 것이다.

〈표 34〉 양형기준 수정 전후 도급 관계의 법인 피고인 벌금액 비교

(단위 : 만원)

구분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도급	수정 전	120	150	5,000	902.92	817.64
	수정 후	20	200	10,000	1,275.00	2,136.62
수급	수정 전	84	100	4,000	814.29	586.83
	수정 후	7	200	1,000	528.57	345.03

#### 6) 무죄사건 관련 판결문 분석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선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판결문 중 중대재해 사고를 다룬 545건의 판결문 중에서 사고를 야기한 피고인 중 최고 상위책임자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총 8건이며, 도급 관련 사건에서는 도급 자연인 피고인의 무죄는 5건, 도급 법인 피고인의 무죄는 3건, 수급 자연인 피고인의 무죄는 4건, 수급 법인 피고인의 무죄는 2건이었다. 무죄 판결의 이유로는 의무의 주체가 아니거나, 의무위반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않는다는 등으로, 전체적으로 증거불충분인 사건이 주를 이루고 있다.<sup>32)</sup> 안전조치 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의무위반 불인정, 인과관계 불인정과 같은 경우는 결국 넓은 의미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불이행이 중대사고 발생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인과관계)에 대해 법원이 확신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달리 표현하자면 모두 공통의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은 입증자료와 입증방

32) 특히 울산지법 2021고단 1782 판결은 도급과 발주자의 구별이 실제 의무를 행하는 자가 아니라 지위, 즉 규범적 관점에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 판례 중의 하나인데 아래의 법리 분석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 본다.

법에 따라서 유죄 선고도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5〉 중대재해 사건 중 자연인 피고인 무죄 판결 내역<sup>33)</sup>

번호	사건번호	도급인 여부	무죄이유 등	비고
1	울산지법 2021고단1782		도급아닌 발주자	
2	창원지방법원 2021고단1668	○	관리감독의무부재	
3	대전지법 서산지원 2020고단809	○	의무위반 불인정	
4	청주지법 제천지원 2020고단20	○	증거불충분 (입증부족)	
5	창원지법 진주지원 2020고단400	○	안전조치불이행 불인정	
6	인천지법 부천지원 2021고단227	○	안전조치불이행 (의무위반) 불인정, 범죄증명없음	
7	춘천지방법원 2021고단128		증거불충분	
8	서울중앙지법 2020고정1030		증거불충분	
9	청주지법 2020고단1720		사실상 고용관계 부재	

도급 법인에 대한 중대재해 기소사건 중에서 무죄 사건 3건은 모두 도급회사에 대한 것으로 의무주체가 아니거나 의무불이행과 중대재해결과와의 관련성(인과성)에 대한 법원의 확신을 끌어내지 못한 경우였다.

33) 이 수치는 최고책임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경우이다.

〈표 36〉 중대재해 사건 중 도급 법인 피고인 무죄판결 내역

번호	사건번호	도급인 여부	무죄이유 등	비고
1	인천지법 부천지원 2021고단227	○	안전조치불이행 (의무위반) 불인정	
2	울산지법 2021고단1782	○	도급 아닌 발주자	
3	청주지법 제천지원 2020고단20	○	증거불충분(입증부족)	

수급인인 자연인 피고인의 경우 대체로 도급 사건의 수급인 피고인이었고, 도급인의 경우와 다를 바 없이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주체, 즉 보증인의 신분이 있는가, 인과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의무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있는가 등이 무죄선고의 대상이 된 쟁점이였다.

〈표 37〉 중대재해 사건 중 수급 자연인 피고인 무죄 판결 내역

번호	사건번호	수급인 여부	무죄이유 등	비고
1	수원지법 여주지원 2020고단802	○	인과관계 부정	
2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623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불인정	밀폐 공간
3	대전지법 천안지원 2021고정348	○	실제 산업안전보건업무 불취급(명목상 대표)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3992	○	건설안전기본법 무죄	

끝으로 수급인 법인의 경우 의무위반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불충분이 무죄 선고의 이유였다.

〈표 38〉 중대재해 사건 중 수급법인 피고인 무죄 판결 내역

번호	사건번호	수급인 여부	무죄이유 등	비고
1	인천지법 부천지원 2021고단227	○	안전조치불이행 (의무위반) 불인정 범죄증명 없음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고단3992	○	건설안전기본법 무죄	

### 3. 통계의 주요 내용, 그 의미와 시사

지금까지 살펴본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판결문 869건 중에서 통계 분석의 가치가 없는 사건을 제외한 총 781건의 판결문 중에서 중대재해를 포함한 사고를 다룬 사건 639건에 대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와 이러한 분석의 결과가 암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인지 정리해 본다.

#### 1) 주요 내용

##### (1) 낮은 추정 상소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중 중대재해를 포함하고 있는 사건 642건 중에서 제1심 판결 총 545건, 항소심 사건 85건, 상고심 9건을 공시적(synchronic)으로 판단하면 제1심에 대한 항소율은 약 15.6%, 상고율은 약 10.6%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781건 중에서 제1심 672건, 항소심 98건으로 항소율은 약 14.6%, 상소사건은 11건으로 상고율은 약 11.2%이었다. 비록 연구대상으로 추출한 모든 판결을 심급 변화에 따라 분석한 것이 아니므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일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건의 평균 항소·상고율을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항소·상고율은 일반 형사사건의 항소·상고율이 약 40%대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산업안전분야에서의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피고인측이나 검사측의 판결 수용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추세가 도급인의 책임 가중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변화에 직면할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해 보인다.

### (2) 판결문에서 중대재해 사건의 비율과 제1심까지 소요기간 등

본 연구의 대상기간에 선고된 판결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총 67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서 중대재해가 문제된 경우는 총 545건, 총 81.1%로 공판으로 진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80% 이상은 중대재해임을 알 수 있었다.

사건발생일로부터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연구대상 기간 평균 약 13.8개월이 걸렸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반적으로 기간이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와 재판 기간의 장기화 문제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하나의 공판에서 병합되어 다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그 기간은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3) 중대재해 사건의 자연인 피고인(최고책임자)의 형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종의 일반적 비율은 벌금, 징역의 집행유예, 징역, 금고 등의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에 부과된 벌금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57.26%,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49%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고, 집행

유예 선고비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3.46%, 2020년부터 2021년까지 49%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 온 반면에<sup>34)</sup> 2020년~2023년 중대재해 사건의 자연인 피고인에게는 징역의 집행유예가 63.9%, 벌금형이 29.2%를 차지함으로써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지배적인 형종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한편으로는 중대재해가 자유형을 부과할 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범죄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체로 초범이라거나 합의 등을 이유로 실형 보다는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 실무가 지배하고 있다는 추단이 가능해 보인다.

#### (4)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전후의 형종 비율의 변화

도급 책임을 강화한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전후의 판결에서 형벌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구법 적용시의 형벌보다 신법이 적용된 판결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자유형의 선고비율이 7.8% 증가하고 벌금형도 4.0% 증가하는 등 선고형이 중하게 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5) 2021월 7월 제1차 수정 양형기준 적용 전후의 형벌 변화

구 과실치사상범죄의 양형기준에 분류되었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제4유형) 유형은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구 산안법 제66조의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를 법정형이 그 보다 경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기본 형량보다 낮게 설정하는 등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를 산업현장에서 불가피한 업무상 과실범의 한 유형으로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사고보다 더 비난가능성이 낮은 범죄로 보아온 문제있는 법원의 기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양형기준에 대한 학계나 노동계의 비판은 결국 양형기준의 수

34) 김성룡/이진국/김도우/조흥학/김기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연구, 고용노동부 정책용역자료(2018), 156쪽; 이진국/양승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판례 분석(2021.12.15.), 고용노동부 용역과제, 25쪽 참고

정으로 이어졌지만 아직도 과실범의 한 유형을 보는 본질적인 인식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sup>35)</sup>

여하튼 제1차 수정 양형기준에서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과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을 구분하고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를 이들과 구분하면서, 도급인 보다 사업주의 의무위반을 중하게 보면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의 형의 범위는 동일하게 하는 양형기준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특히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는 수정 전의 구 양형기준 보다 형벌이 가중됨으로써 선고형이 중하게 변경될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본 연구는 중대재해 사건을 대상으로 하면서 피고인 중 당해 사건에서 최고 책임자에게 부과된 형종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으로, 양형기준 수정 전후의 형종을 보면 징역과 집행유예가 약 10% 증가하여 61.8%에서 71.8%로 늘어났고, 벌금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여 31.3%에서 24.2%로 축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달리 말해 적어도 도급인이건 사업주이건 개인인 피고인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자유형의 선고 비중이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 (6) 도급 사건 관련 중대재해 사건 판결문 분석 결과 일반

연구 대상 기간에 선고된 판결 중 도급이 문제된 중대재해사건은 총 159건으로 전체 사건의 29.2%를 차지했고, 도급인인 자연인 피고인에 대한 형종은 징역 3.8%, 징역의 집행유예 49.1%, 벌금 39.0%로 나타났다. 선고된 자유형의 평균은 8.92개월, 벌금은 666.42만원이었다. 도급인의 지위, 즉 대표인지 아니면 현장소장 등 그들 보다 하위 책임자인지를 기준으로 형벌을 분석해 본 결과, 대표에게는 징역과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62%, 하위 책임자에게는 53.3%로 전자에게 부과된 형이 더 중했고, 벌금의 선고비중은 대표에게 부과

35) 예를 들어 매일노동뉴스, [대법 양형위, 산재 범죄 형량 10년6월로 상향했지만...] 산재기업 '범죄 아닌 과실'로 판단...“보여주기식 형량 늘리기” 비판, 2021.3.31.자 기사 참조

된 비율이 32%, 그 하위 책임자에게는 43%가 선고되어 도급사의 대표에 대한 처벌이 보다 중했다. 구체적인 형량에 있어서도 대표의 자유형의 평균기간은 9.06개월, 책임자는 8.84개월로 대표에 대한 자유형 기간이 길었으며, 벌금형의 경우에도 대표 673.53만원, 그보다 하위의 책임자는 664.00만원이었다.

종래 연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으로 자연인에게 선고되는 자유형의 평균기간이 2020년 7.54개월, 2021년 7.37개월이었던 것에 비교하면<sup>36)</sup> 도급인에게 부과되는 자유형의 형기가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의 책임을 지는 자연인에 대해 부과된 벌금형이 2020년 평균 5,446,429원, 2021년 6,734,375원이라는<sup>37)</sup> 종래 통계와 비교하면, 연구대상기간에 도급인에게 부과된 평균 벌금액은 전체 평균보다 더 높다. 달리 말해 도급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의 평균액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전체 평균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38)</sup> 도급인 법인에 대한 벌금액은 평균 956.07만원으로 2020년과 2021년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의 책임을 진 법인에게 부과된 평균 벌금액 6,000,000원과 7,108,108원 보다는 약 250만원에서 350만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도급인과 수급인이 동시에 처벌되는 경우 대체로 수급인에게는 자유형의 선고비율이 도급인 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벌금형의 선고비율은 도급인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인 회사의 경우 대표자와 그 하위 책임자에게 부과되는 자유형과 벌금액의 빈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고, 자유형과 벌금형의 형량을 보면 자유형은 수급사에 고용된 책임자(7.33개월)보다 수급사 대표(8.61개월)에게 더 높게 부과되고, 벌금형은 대표에게 부과되는 평균 벌금액(664.29만원)이 하위 책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액(731.25만원)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6) 예를 들어 이진국/양승국, 앞의 연구보고서, 27쪽 참조

37) 이진국/양승국, 앞의 연구보고서, 31쪽 참고

38) 종래 연구의 평균액은 6,090,402원이고 본 연구대상 판결에서 도급인에게 부과된 벌금의 평균액은 664.75만원으로 후자가 약 10% 정도 더 높다.

도급인에게 부과되는 자유형은 수급인에게 부과되는 자유형보다 0.83개월 높았고, 벌금형의 경우 오히려 수급인에게 부과되는 평균 벌금액이 26.82만원 많은 모습을 보였다. 도급인에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의 선고가 많아지면, 벌금형이 병과되지 않는 한, 벌금형에서는 수급인보다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도급과 수급을 불문하고 대표가 그 하위의 책임자들 보다 중한 형종과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

### (7) 도급인 양형인자의 특징

도급인인 피고인에 대한 양형 설시가 등장하는 판결문 143건의 분석 결과, 유리한 양형인자로 판결문에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총 94.4%의 판결문에서 등장하는 ‘합의, 보상, 피해회복’이다. ‘초범과 전과없음’ 요소도 53.8%에서 등장했다.

불리한 양형인자로는 대표적으로 ‘피해자의 사망과 상해’라는 인자이지만, 중대재해라는 사건의 성격상 이미 범행의 불법과 책임에 포함된 요소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동종 범죄 전력’이라는 요소이다. 결국 동종전과가 없고, 합의나 보상이 이루어지면 양형에 유리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2차 수정 양형기준이나 집행유예 참작사유에도 명시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반영하는 등(아래의 <표 39> 참조), 향후 집행유예가 보다 수월하도록 양형인자를 수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양형인자로 작용하게 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39〉 2차 수정 양형기준과 집행유예참작 사유

2차 수정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일반 양형인자	(생략) • 상당한 피해 회복 (공탁포함)	(생략) • 합의시도 중 피해야기 (강요죄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집행유예 참작사유(2차 수정 양형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생략)	(생략)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포함) → (3차 수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 (공탁포함)
일반참작사유	(생략)	(생략) • 집행유예 이상 전과없음 →(4차 수정)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없음

(8) 법률 개정 전후 도급 사건 판결문에서 보이는 특징

도급인의 책임이 강화된 법률 개정 이후 도급인에게 부과된 형벌 중 징역형의 점유비율이 26.7%에서 52.6%로 대폭 늘어났다. 수급인 소속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의 선고 비율이 50.6%에서 67.2%로 증가했다. 물론 여전히 자유형(집행유예포함) 선고 비율은 도급인 보다는 수급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벌금은 개정 전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부과된 비율에 비해 모두 감소했다. 자유형의 비율이 증가한 상대적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유형의 형량도 개정 후에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에게서 증가했고, 법인의 벌금도 상당히 증가했다. 하지만 법인의 벌금 평균이 956.07만원이고 개인과는 약 300

만원의 차이에 불과하다는 것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아직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해석에 있어서 대법원의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태임에도 경향적으로 법원의 실무가 바뀌어 가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을 듯하다.

#### (9) 양형기준 변화와 도급인에 대한 양형 변화

법률 개정 전후의 형종이나 형량 변화와는 달리 양형기준의 변화는 양형 실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급인과 수급인에게 부과된 자유형이 형량에서도 양형기준 수정 후에는 9.69개월로 수정 전 8.79개월보다 0.9개월 더 늘어났고, 수급인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었다. 법인에게 부과되는 형벌은 도급 법인의 경우 그 액이 상향되었으나, 수급인의 경우에는 법인 벌금이 하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양형기준의 변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률 개정의 영향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벌금액의 변화에 있어서도 법률개정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과 양형기준의 수정 시점이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인 듯, 앞서 법률개정 전후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 (10) 무죄사건 관련 특징

연구대상 판결문 중에서 무죄 사건은 8건으로 파악되었다. 무죄의 사유로는 발주자와 도급인의 구별이 문제되거나 사실상 고용관계의 존재나 관리감독의무가 존재하는가에 관련한 이른바 ‘의무의 주체’의 문제가 있고, 그 외에는 의무위반불인정, 안전조치의무불이행의 불인정, 의무위반이 결과발생에 관련된 것인지 인과성의 문제, 그리고 증거불충분(입증부족) 등으로 결국 의무위반과 중대결과 사이의 인과성의 문제에 대한 입증 노력에 따라서 유죄일 수

있었던 사건이 무죄로 선고되는 경우(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의미와 시사

법률 개정 전후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부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히 도급 관련 문제는 아직 대법원의 법리를 형성하는 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짧은 기간의 제한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선고형에 있어서 자유형과 벌금형의 상한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도급의 경우에는 종래보다 도급인의 책임을 중하게 묻겠다는 하급심 법원의 태도 변화가, 다소 미약해 보이더라도, 감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법인에게 부과되는 형벌은 개인에게 부과되는 벌금액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으로 법인에게 양벌규정이 이중으로 적용되는 사안, 즉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높은 법인 처벌 법정형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나 여전히 단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일 경우에는 법인처벌규정의 합리화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대부분 자백한다는 사실과 단지 업무상과실범에 불과하다는 법원의 인식이 경한 형의 선고라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사건의 처리 관행을 만들어 왔다고 하면, 적어도 전면 개정 법률의 도급인 처벌 강화라는 입법취지나 바뀐 양형기준으로 인한 권고형 범위의 상향조정은 이러한 관행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적어도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건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을 불문하고 전반적인 선고형을 상향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물론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변경은 수급인에게 부과되는 형벌의 상향 폭보다 도급인에게 선고되는 형을 더 큰 폭으로 상향시키게 하는 변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도 감지할 수 있다.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사업·작업장에서의 사고의 원인을 쉽게 인정하던 통상의 모습을 바꾸어 놓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 사건의 제1심 선고시까지의 소요기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는 현상은 지금까지의 낮은 상소율을 변화시키고 소송의 난이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종래와 같은 확인 위주의 수사나 기소로는 (대형로펌을 대상으로 해야하는 소송에서) 승소 확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사건처리에서 보다 법원의 법리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고, 소송법적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수사관행, 사건처리 프로세스를 형성하는 노력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책임자, 대표 등의 형벌의 빈도와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의 법적 대응이 강해질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양형기준의 변경은 그것이 비록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종래 판사들이 판단하던 관행에서 의도적으로 벗어난 양형기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형기준의 준수율은 타 범죄보다 더 높다고도 볼 수 있다. 달리 말해 양형기준에서 권고형량을 세분화하고 구 기준보다 가중한 것은 당연히 선고형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향후 판례가 집적될수록 유의미한 통계적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지금의 양형기준이 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평가한 양형기준인가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이하와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조화로운 해석과 개선 입법을 통해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하나의 문제는 ‘합의’, ‘처벌불원’의 의사 등은 결국 금전적 여유가 있는 피고인들이 사실상 양형에서 혜택을 받고,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인자이고, 2차 수정, 3차 수정 양형기준에서는 명시적으로 이런 요소들이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보다 증대할 것임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물론 초범인가 여부가 중요한 인자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반복된 사고를 방치할 사업주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에서는 판결에 등장하는 주요 쟁점에 대한 법리분석을 통해서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적정한 수사, 적법한 증거수집, 합리적인 기소여부 결정과 정의로운 재판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무엇에 주목하여야 할 것인지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 Ⅲ. 중대재해사건 판결문의 법리분석





## III. 중대재해사건 판결문의 법리분석

### 1. 개요

본 연구는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전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후 신법이 적용된 사건들의 판결문에서 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법리를 분석하여 관련 수사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법 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 및 타당성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2020년 1월 16일 이후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선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정 법률 전후로 변화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하급심 판례의 해석을 참고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즉 본 연구에서는 2020년 1월 16일 이후 발생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 특히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제63조 및 제65조 제4항) 취지의 신법 적용으로 달라진 법원의 태도를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지만, 아직도 대법원의 특별한 관련 선례가 없기 때문에 하급심 법원들의 신법 적용 후 판례들에서 보이는 법리들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또한 개정 법률 시행 전후를 불문하고 구법과 신법 모두에 변함없이 적용되는 대법원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론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고찰해 보기로 하고, 관련 하급심의 예도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아래에서는 우선 본 연구의 통계 분석에서 나타나고 있는 법리 관련 특성을 간단히 정리한 후에(2.), 대법원의 선례에서 나타나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주요 법리를 정리해 보고(3.) 법률 개정 이후 특히 도급과 관련한 하급심 법원들의 판결 선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4.)<sup>1)</sup>

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리 분석은 별도의 다음 장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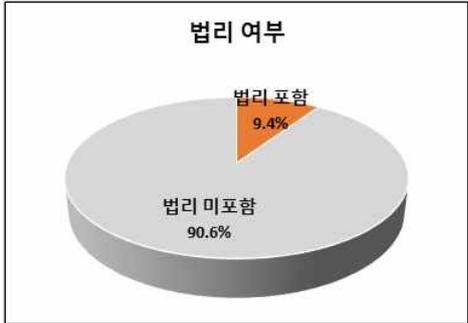
## 2. 법리 관련 통계 분석

### 1) 주요 내용

본 연구 대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중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서 법리가 다루어진 판결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전체 545건의 판결 중 법리가 포함되어 있는 사건은 총 51건으로 전체의 9.4% 정도였고, 법리가 포함되지 않은 사건이 494건으로 90.6%로 나타났다. 10건 중 1건 정도의 사건이 법리가 쟁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sup>2)</sup>

〈표 40〉 중대재해판결 중 법리 포함 판결

법리 여부	사건 수	비율(%)
법리 포함	51	9.4
법리 미포함	494	90.6
전체	545	100



[그림 5] 중대재해판결 중 법리 포함 비율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전·후 발생한 중대재해 관련 판결문에서 법리 포함여부와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즉, 법률 개정 이전 법리가 포함된 사건은 전체 47건 중 36.2%인 17건이었는데, 개정 이후에는 전체 498건 중 6.8%인 34건으로 약 1/5 정도로 대폭

2) 무엇이 법리(法理)인가부터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법률의 의미 해석과 그 적용이 문제되는 사건들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엄격히 보면 '법리가 적용된 판례'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법률 개정 전에 발생하여 기소됨으로써 이미 소송 계속 중 이다가 개정 법률 시행이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의 절대 수가 적어서 본 연구의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건들은 오랫동안 법원에서 심리될 정도로 다소 쟁점이 많은 사건들이었다는 것이 원인일 수도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해 본 연구대상으로 수집된 법률 개정 전 판결들은 전체 사건의 평균을 보여줄 수 있는 표본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분석과는 달리 표본 수가 소수여도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면, 법률 개정 이후 신법이 구법보다 명확해져서 해석의 여지가 줄어들고 기존의 쟁점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법리를 다룬 판결이 대폭 줄어든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표 41〉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전·후 판결에서 법리포함 여부

개정 전후		법리포함 여부		전체
		법리 포함	법리 미포함	
전	사건 수	17	30	47
	%	(36.2)	(63.8)	(100)
후	사건 수	34	464	498
	%	(6.8)	(93.2)	(100)
전체	사건 수	51	494	545
	%	(9.4)	(90.6)	(100)

개정 전	개정 후
포함: 36.2%	포함: 6.8%
미포함: 63.8%	미포함: 93.2%

$\chi^2 = 42.376$ (p-value=0.000)로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림 6] 법률 개정 전후 중대재해판결 중 법리 포함 비율

물론 필자의 판단에 후자가 이유일 가능성은 희박에 보인다.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표본 취사에서부터 목적에 맞는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한편, 중대재해 사건 중 도급 관계에 포함된 사건인지 여부와 법리 포함 여부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45건 중 도급사건 중 법리가 포함되어 있는 사건(법해석·법리가 쟁점이 된 사건)이 18.2%(29건)이며, 도급 아닌 사건 중에 법리가 포함되어 있는 사건은 5.7%(22건)로 도급사건이 도급 아닌 사건에 비해 법리가 포함되어 있는 사건의 비율이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급이 쟁점이 되기도 하겠지만 도급이 문제된 만큼 수급인(회사)을 포함하여 다수의 가별성이 문제된다는 점에서 쟁점의 비율이 높은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표 42〉 도급여부에 따른 법리여부의 연관성 분석

전후		법리 여부		전체
		법리있음	법리없음	
도급	사건 수	29	130	159
	비율(%)	(18.2)	(81.8)	(100)
도급아님	사건 수	22	364	386
	%	(5.7)	(94.3)	(100)
전체	사건 수	51	494	545
	비율(%)	(9.4)	(90.6)	(100)

$\chi^2 = 17.340$ (p-value=0.000)로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나아가 전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도입으로 도급과 관련한 법리적 다름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기 위해 법리가 포함된 사건 중 도급 사건인 경우

와 도급이 아닌 사건을 나누어 전면 개정 법률 시행 전후 발생한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서 법리가 다루어진 빈도를 검토한 결과 양자 간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급사건 관련 법률 개정 전 판례 16건, 법률 개정 후 판례 143건을 분석한 결과, 개정 전 판례 중 법리가 있는 사건이 전체 16건 중 75%(12건)이었으나, 개정 후 법리가 있는 사건은 단지 11.9%(17건)로 법률 개정 이후에는 전체 사건에서 법리 설시가 있는 판결이 대폭 감소(6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도급여부에 대해 개정 전후 법리여부 비교

도급 여부	법률 개정 전후		법리여부		전체
			법리 있음	법리 없음	
도급	개정 전	사건 수 %	12 (75.0)	4 (25.0)	16 (100.0)
	개정 후	사건 수 %	17 (11.9)	126 (88.1)	143 (100.0)
도급 아님	개정 전	사건 수 %	5 (16.1)	26 (83.9)	31 (100.0)
	개정 후	사건 수 %	17 (4.8)	338 (95.2)	355 (100.0)

도급 사건은  $\chi^2 = 40.058$ (p-value=0.000)로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도급이 아닌 사건은  $\chi^2 = 5.741$ (p-value=0.017)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도급이 아닌 사건의 경우에도 개정 전 31건 중 5건(16.1%)에서 개정 후 355건 중 17건(4.8%)으로 감소(11.3%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그 비율은 도급의 경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도급 여부에 관계 없이 개정 전의 판결들에 비해 개정 후 판례들에서 법리가 포함되어 있는 사건의 비율이 줄어 들었으나, 도급 사건에서 법리 사건이 줄어든 비율이 도급이 아닌 사건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법리 분쟁이 축소된 주 원인은 도급 관계가 포함된 사건이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총 51건의 제1심 판결에서 문제된 법리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본 결과 주로 다음과 같은 쟁점들이 다투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의 사건에서 다수의 쟁점이 등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아래의 건수는 복수로 계산된 것인데, 가장 많이 쟁점으로 등장한 유형은 과실, 주의의무위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업무상과실, 예견가능성 및 인과관계 관련 다툼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의무의 주체, 즉 안전보건조치의무의 주체인지,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많이 다투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수사나 공판의 핵심 대상은 행위주체의 확정과 어떤 과실·주의의무위반·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부작위)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였다고 할 수 있으며, 중대재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의 본질이 부작위와 과실이 포함된 범죄라는 특성상 당연히 예상되는 쟁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 보인다.

〈표 44〉 법률 개정 전후의 법리 유형 비교

법리 유형	법률 개정 전 (건)	법률 개정 후 (건)	유사 유형 합계 (건)
행위주체	3	3	9(4/5)
고용관계	1	2	
주의의무/ 업무상과실/예견가능성(과실) 안전조치의무(부작위)	12	25	54(17/37)
인과관계	5	12	

고의	1	2	3
공동정범		1	1
도급	1	3	4
법적용 대상여부		3	4
면소 등		1	

판결문에 법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법리다툼 여부가 선고된 형벌과 주목할 만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리·법적 쟁점이 포함되지 않은 사건은 금고와 징역의 집행유예가 67.8%(335건)로 법리가 포함된 사건 37.3%(19건) 보다 약 1.82배 높았으며, 벌금형은 법리가 포함된 사건이 37.3%(19건)로 법리를 포함하지 않은 사건 28.3%(140건) 보다 높았다. 또한 법리 포함된 사건이 무죄 비율도 높았으며 실형(금고, 징역) 선고도 법리가 포함되지 않은 사건에 비해 높게 선고되었다. 달리 말해 법리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실형 선고 및 형량과 무죄 선고 비율이 높아지는 특성이 있다고 하겠다.

〈표 45〉 법리 포함 여부에 따른 선고 형종 비교

구분		형벌				전체
		금고 /징역	집행 유예	벌금	무죄 /면소/ 불기소	
법리 포함	사건 수	5	19	19	8	51
	%	(9.8)	(37.3)	(37.3)	(15.7)	(100.0)
법리 미포함	사건 수	16	335	140	3	494
	%	(3.2)	(67.8)	(28.3)	(0.6)	(100.0)
전체	사건 수	21	354	159	11	546
	%	(3.9)	(65.0)	(29.2)	(2.0)	(100.0)

$\chi^2 = 71.430$ (p-value=0.000)로 유의수준 0.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림 기] 법리 포함여부에 따른 형종의 비율

## 2) 분석 및 시사

총 545건의 중대재해 사건 관련 판결문들 중에 법리를 포함하고 있는 판결은 9.4%에 해당하는 51건이었다. 법원에 기소된 사건의 경우 범죄성립여부를 중요 판단대상으로 다룬 경우는 약 10%정도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앞서 통계 분석에 언급했듯이 향후 이러한 범죄성립여부에 대해 다루는 사건들이 점증할 것이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다.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자유형과 실형으로 옮겨간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적극적 방어가 피고인의 권리자 변호인의 활동무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개정 전에 다툼이 있는 판결문보다 개정 후에 법리가 포함된 판결문의 수가 더 적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했을 수 있을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 연구에서는 밝힐 수 없었다. 추가적인 다수의 판례가 집적된 상태에서 추후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도급 관계가 포함된 사건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비율이 더 높았고, 법률 개

정 후 법리 다툼이 축소된 폭도 도급의 경우가 상당히 컸지만, 전체적으로 법리의 다툼의 빈도가 높은 사건은 도급을 포함하는 사건으로 나타났다. 여러 피고인이 등장하고 상호간의 책임 귀속이 문제되는 만큼, 의무자의 인정부터, 의무의 존재, 의무의 이행여부 등 다수의 쟁점이 등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선고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법리가 있는 판결에서의 선고형에서 실행과 무죄 비율이 높다는 것은 논쟁이 있는 만큼 엄격한 판단과 형벌(반성의 태도가 아니거나, 불성실한 합의 노력 등을 보일 가능성도 있어, 이런 사유들이 불이익한 양형요소로 작용했을 수도 있을 것임)이 수반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자백과 인정을 통해 적정한 형벌에서 마무리하는 것보다 범죄 성립을 부인하며 다투는 경우에는 성공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실행)과 성공할 경우의 이익(무죄)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경우에도 다른 범죄들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법리 관련 통계에서 아래의 연구와 관련하여 유의미한 내용은 법리적 다툼의 대상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주의의무위반여부(과실),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여부(부작위), 업무상 과실존부, 예견가능성 및 인과관계 인정 문제였고, 그 다음은 넓은 의미에서 범죄의 주체, 즉 의무자 여부였다는 것이다. 이 점은 수사기관에게는 결국 증거확보의 중요 대상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는 것이고 법원에게는 하급심과 당사자들이 수공할 수 있는 법리를 제공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대법원의 판례들 중 법률의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유효한 중요 법리를 정리하고, 법률개정 이후 하급심의 주요 판례들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 3.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대법원 판결의 주요 법리

#### 1) 개관

2023년 10월 현재 대법원의 최신 선고 판례들은 여전히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1.15. 전부 개정되기 전 법률) 위반사건의 해석론을 내놓고 있다. 도급인의 책임이 강화된 신법의 해석을 둘러싼 대법원의 법리는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이나, 법률의 개정 전후와 무관하게 산업안전보건법의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대법원의 선례들을 간추려 정리해 보기로 한다.

#### 2) 대법원의 관련 주요 판결의 법리

총 52건의 법리가 포함된 판결로 분류된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총 31건의 항소가 있었고, 총 8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결 중에서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만 우선 간략히 정리하고, 이어서 법률 변경과 무관하게 유지되는 대법원의 중요 법리를 몇 가지 언급하기로 한다.

##### (1)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한 도급인의 예외적 예방조치 의무의 발생근거와 도급인과 발주자의 구별기준

2022년 8월 31일 선고한 2021도17523 판결에서 대법원은 1996년 1월 26일 선고 95도2263 판결 등을 원용하면서 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한 도급인의 예방조치 의무의 발생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즉, 아래의 판시내용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서 제한적·예외적으로 일부도급과 전문분야 공사를 대상으로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해석론으로 향후 개

정법률에 대한 해석으로 대체될 내용이다.

1.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sup>3)</sup>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구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이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한 법령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등 참조).<sup>4)</sup>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의무규정과 개정 후 도급인의 의무규정 중

- 3) 아래의 판결들에서 밑줄이나 고딕체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필자가 강조하기 위해 부기한 것임을 밝혀 둔다.
- 4) 대법원 2022.8.31. 선고 2021도17523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도급의 경우 원칙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로는 대법원 1983.9.27. 선고 83도1610 판결 참조

중요한 규정 몇 가지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은 차이를 보인다.

<p>2018.4.17.일부개정 2018.10.18.시행</p> <p><b>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b>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 6. 4., 2011. 7. 2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u></li> <li>2. <u>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u></li> </ol> <p>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lt;신설 2011. 7. 2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li> <li>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li> <li>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li> </ol>	<p>2019.1.15.전부개정, 2020.1.16.시행</p> <p><b>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b>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p> <p><b>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b>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li> <li>2. 작업장 순회점검</li> <li>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 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li> <li>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 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li> </ol>
---	---

<p>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p> <p>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p>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p> <p>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p> <p>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p> <p>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gt;</p> <p>④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 6. 4., 2011. 7. 25.&gt;</p> <p>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p>	<p>시 확인</p>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p> <p>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p> <p>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p> <p>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p> <p>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b>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5)산업재해 예방 조치)</b>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	--

<p>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하는 자가 해당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lt;개정 2017. 4. 18.&gt;</p> <p>1.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p> <p>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p> <p>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p> <p>⑥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또는 제5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7. 25., 2013. 6. 12.&gt;</p> <p>⑦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p>	<p>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p> <p>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p> <p>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p> <p>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	---

<p>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한다.          &lt;개정 2011. 7. 25., 2013. 6. 12.&gt;</p> <p>⑧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7. 25., 2013. 6. 12.&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 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li> <li>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li> </ol> <p>⑨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lt;신설 2011. 7. 25., 2013. 6. 12.&gt;</p> <p>⑩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gt;</p> <p>[전문개정 2009. 2. 6.]</p>	
--	--

5) 산업안전보건법(2020.1.16.시행) 제2조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

무엇보다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를 제한하고 있던 구법에 비해서 신법은 장소적 제한을 제외하고는 그 의무를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발주자 개념과 발주자의 의무도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위 대법원의 판결은 신법 적용사건이 상고심에서 다루어지게 되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은 법 개정 후의 건설발주자의 개념과 의무를 해석론적으로 선취한 듯한 판시를 내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 법률의 성안과정에서 기존의 대법원의 발주자에 대한 이해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향후 대법원의 개정 법률의 발주자 개념의 해석에도 일응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부작위)에 대한 고의인정 요건

2023년 2월 23일 선고된 2022도 10384 판결에서 대법원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66조 제1항과 관련하여 안전조치의무위반이 고의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종래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의 기본행위인 의무위반이나 제168조 이하의 범죄는 모두 진정부작위범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고의범인 위 범죄들의 성립을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하고, 정확히는 부작위범의 고의가 필요한 것이다.

사업주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sup>6)</sup>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하거나, 그와 같은 안전

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3242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도20000 판결 등 참조).<sup>7)</sup>

즉, 고의범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족하며, 미필적 고의·조건적 고의는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족하다는 판례의 고의에 대한 이해가 표현된 판시이다.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하였다면 사업주라는 직업적 특성상 안전조치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며, 안전조치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에는 이미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의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sup>8)</sup> 법률에서 주어진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해야 할 주체가 그 의무를 고의로 부작위한 경우에 처벌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의 본질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6) 2019년 전면 개정 이전의 법률 제23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대법원 2023.2.23. 선고 2022도10384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 9188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8) 세부적인 내용은 김성룡, 중대재해처벌법의 산업재해치사상죄의 성립요건 -작위 의무, 인과관계, 고의, 예견가능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법과 기업연구 제12권 제3호(2022), 3쪽 이하 참조

### (3)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

대법원은 아래의 판시와 같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의미를 장소적 동일성의 의미로 이해하면서 시간적 동일성까지는 필요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개정 법률 제63조에서는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 구법에 비해서 이러한 장소적 제약마저 완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새로운 판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시간적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는 현재의 법률해석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참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입법 취지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2호의 도급인에게도 산업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지우기 위한 위 조항의 개정 목적·경위에 고용노동부가 2012. 9.경 작성한 '사업의 일부 도급 사업주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 적용 지침'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각 공사 전부를 분야별로 나누어 수급인에 도급을 줌으로써 자신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사업의 전체적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하는 등 관리·감독만 하더라도, 위 조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에 해당한다.<sup>9)</sup>

9)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도12560 판결.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4) 안전조치의무를 지는 사업주의 범위와 실질적 고용관계

대법원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 제66조의2의 해석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는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는 것과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을 직접 관리 통제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재해발생 방지의무를 인정해야 하는 요건이 무엇인지에 관한 선례를 내놓고 있다.

비교적 최근 이러한 문제를 다룬 아래 판결에서도 종래 판례와 같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하고,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작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 파견관계와 같은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그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서 제2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위험을 방지할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sup>10)</sup>

1) 법 제2조 제3호는 이 법에서 사용되는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이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3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 제23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1. 5. 28. 고용노동부령 제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5조 내지 제238조는 사업주가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폭발·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0353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802 판결 등 참조

10) 유사 취지로 대법원 2021.3.11. 선고 2018도10353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 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 14559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0353 판결 등 참조).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는 당해 근로관계가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해발생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해발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타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위 규정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sup>11)</sup>

나아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에 대한 법리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감독 작업에 위와 같은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sup>12)</sup> 이러한 해석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도11288 판결

12)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

## (5)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실질적 안전조치

대법원은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이행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구체적인 사업현장에서 예상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행해졌는가를 기준으로 보겠다고 한다. 이러한 기준은 향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무엇보다 2021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다양한 조문에서 ‘실질적’이라는 기준이 등장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들에 대하여 그 명확성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그러한 해석이 자칫 수범자로 하여금 행위위무의 불명확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이다.

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안전보건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등 참조).<sup>13)</sup>

하지만 위 판시에서도 표현되고 있듯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위반치사죄는 일종의 진정부작위범과 결과적 가중범의 성격을 띠고 있어 구체적인 위험발생 상황에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고 가능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결과발생방지에 필요하고 가능한 행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이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

13)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면이 있고 법적 요건을 표현하는 적절한 법문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특히 해당 산업현장에서 동종의 산업재해가 이미 발생하였던 경우에는 사업주가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산업재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각종 예방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sup>14)</sup>라고 하여 반복되는 재해의 경우 의무위반이나 고의존부의 판단에서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추론할 것이니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라는 정책적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 (6) 피해자의 과실·주의의무위반과 안전보건책임자의 주의의무위반의 인과관계 단절 여부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피해자의 과실이 의무자를 책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피해자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의무위반자의 부작위의 인과성은 부정되는가의 문제는 형법의 인과성 판단에서 오랜 쟁점 중의 하나이다. 피해자의 과실, 독립행위의 개입, 인과관계의 단절 사례 등으로 불리는 사안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 몇 가지를 보면 아래와 같다.

아래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이 확실하지 않고, 피해자의 과실이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의무위반만으로도 충분히 결과발생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의무적합한 행위가 있었다면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는 대법원의 표현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만약 피해자의 과실이 없었다면 결과가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인지를 심사할 필요가 있고, 형사법에서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판시 내용은 법리로서

14)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내세우기에 다소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작업발판이 절단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로프를 넘어 비정상적으로 이동을 시도하다가 떨어져 다친 것을 전제로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됨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단지 허술하게 설치되어 있는 로프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어떠한 경위로 추락하였는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는 어렵다.”<sup>15)</sup>

다음 판례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의무위반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위 판례와 사실상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라고 하겠다.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작업계획에 없던 작업을 임의로 실시하면서 작업상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죄책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경사로 부근에 한동안 레미탈 자재가 적치되어 있었으므로 그 부근에서 지게차가 운행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경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들의 과실 역시 상당한 이상 피고인들의 죄책이 없다고 할 수 없다.”<sup>16)</sup>

아래의 판시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였다고 전제하고 단지 그것이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이 아님을 부각시키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피고인의 의무위반과 결과발생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을 것이고, 의무위반관련성이 없다면 상당인과성은 부인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15) 인천지방법원 2021.10.8. 선고 2021고단342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9.23. 선고 2021노3879 판결; 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도12980 판결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10.28. 선고 2020고단3992 판결

“ (3) 피해자 과실의 경합과 상당인과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들 제출의 일체의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됨은 명백하고,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A, B에 대한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부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sup>17)</sup>

결국 대법원은 다수의 원인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모든 원인을 인과적 원인으로 보는 입장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에도, 단지 그 과실이 유일한 원인이었다고 볼 수 없다면, 다른 모든 인과적 원인들도 결과 발생에 대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른바 등가설의 입장에 닮아 있다.<sup>18)</sup> 따라서 수사기관으로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대재해 발생에 다른 원인이 없는지를 충실히 검토하여야 하는 것이다.

#### (7) ‘충분히 알려야 한다’라는 법개념의 위헌성 여부(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의 해석)

1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8.11. 판결 2021노1231 판결;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도10423 판결

18) 의무위반관련성을 적용하면 만약 피고인의 의무위반이 없었다면 결과가 발생했을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만약 피해자의 과실이 있고, 그 과실이 당연히 유일한 인과적 원인이라면 피고인의 의무위반은 인과성이 없다는 결론이 될 것이다. 그런데 만약 피해자의 과실과 피고인의 고의 또는 과실의 부작위가 병존하는 사례에서 그 중 어느 하나의 과실이 절대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없다면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피해자 과실 경합, 인과관계단절 등의 용어로 등장하는 사안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상론은 피한다.

구「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가 사업을 할 때 진동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법 제24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19조(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고 한다)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진동 기계·기구 관리방법, 진동 장해 예방방법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sup>19)</sup>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이러한 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의 위반죄가 성립한다.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취지, 이 사건 규칙의 문언해석, 수범자 및 주지의 상대방, 법령의 체계적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규칙의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부분은 사업주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그 작업을 계속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주지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여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주지 사항을 알려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그 방법이 정형화된 교육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건 규칙은 다른 주지의무 조항과 달리 주지의 정도와 관련하여 ‘충분히’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주지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취지이고, 위 문구의 기재 유무에 따라 주지의무 이행 정도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업주가 주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규모나 환경, 작업의 빈도와 위험성, 근로자의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규칙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sup>20)</sup>

19) 2023.10.8. 현재에도 동일한 내용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유형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이하 생략)

20)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도12986 판결

위 판시내용에서도 결국 그 판단은 규범적 잣대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판사가 그 분야에 활동하는 평균인의 관점에서 판단할 때, 그 정도로 알려 주었다면 평균의 근로자라면 자신의 건강장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전체고려설이 가지는 한계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 특징들이 고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무이행의 인부를 판단해야 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을 것이다.

#### (8) 안전보건규칙 제32조제1항 및 제63조제1항제10호의 해석

대법원이 ‘실질적’ 또는 ‘충실한’으로 표현하는 의무준부의 판단이나 의무이행의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은 안전보건규칙의 의미내용의 이해에까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판결과<sup>21)</sup> 항소심의 판단, 그리고 항소심을 수용한 대법원의 입장이 하나의 예이다. <sup>22)</sup>

##### (사실관계)

B 주식회사는 2020. 11. 17. 08:00경 피해자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 건물의 외벽 도색 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근로자가 추락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근로자들이 안전모와 안전대를 항상 착용하고 도색작업을 진행하는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같은 날 10:25경 도색 작업을 위해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위 아파트 옥상에서 달비계에 탑승하여 25층으로 하강하던 중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11.10. 선고 2021고단610 판결

22) 의정부지방법원(제4-2형사부) 2022.12.8. 선고 2021노2763 판결

23) 2021.11.19일 개정 이전의 안전보건규칙이 적용된 사안이다. 2023.7.1. 시행 안전보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1:17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제1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11.10. 선고 2021고단610 판결)

## 2. 판 단

가. 먼저,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본다.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제2항에서는 “사업주로부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제1항이 사업주에 대하여 ‘보호구의 지급 등 의무’ 외에 ‘보호구 착용상태의 감독의무’까지 규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앞서 본 대로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이러한 착용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A이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안전보건규칙 제32조 제1항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안전보건규칙 제63조 제10호의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 본다. 안전보건규칙 제63조 제10호는 “사업주는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23)</sup>

앞서 본 대로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 A은 이 사건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한 뒤 그 고리를 구명줄에 걸고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이러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여 안전대를 벗어버린 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A이 알

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안전보건규칙 제63조 제10호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을 파기한 항소심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제1항에 ‘사업주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각 호에서 규정한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모 및 안전대 등 보호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문언 자체만 보더라도 이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보호구의 지급 등 의무’ 외에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는 것까지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 규정은 안전을 위하여 근로자에게도 보호구 착용의무가 있다는 것이지, 이 조항의 존재와 문언을 근거로 사업주에게는 보호구 지급의무까지만 있고, 그 착용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일정한 조치의무를 부과하려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시행규칙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것이 실제로 준수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책임을 면하게 해주는 것이어서 전혀 타당하지 않은 법 해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규칙 제32조 제1항의 해석상 사업주가 ‘보호구의 지급 등 의무’만 진다는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피고인의 산업안전보건규칙 제63조 제1항 제10호 위반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산업안전보건규칙 제63조 제1항 제10호는 ‘사업주는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

건규칙 제63조 제10호는 “10.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할 것 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締結)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여 의무가 추가되었다.

우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하고(가목), 근로자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하도록 할 것(나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주로서 하여금 단순히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할 것을 지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달비계를 사용한 작업을 수행할 때 근로자들이 안전대와 구명줄을 체결(연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는지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은 앞서 본 법리 해석과 같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즉, 체결하도록 하라는 요구는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는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라는 의미라는 것이다. 항소심은 업무상과실치사의 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을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하고 중한 후자의 범죄로 처벌하였으며, 대법원은(제3부)은<sup>24)</sup> 항소심의 법리를 수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을 실질적으로 산재예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미의 확장이나 보충이 법원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안전보건규칙도 결국 그 의무내용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이해된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 원칙에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백지형법의 논의를 일단 논외로 하면) 타당한 법리인가에 의문이 있다. 또한 제1심의 경우 적용법조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제10호와 항소심이 인용하고 있는 동 규칙 동조 동호는 제1심 선고 이후 개정되었고, 항소심이 적용한 규칙은 2022년 10월 18일 시행규칙이라는 점에서 항소심의 적용법조가 옳은 것인지도 의문이다. 하지만 결국 대법원의 법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충분히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 선고된 하급심 판결문에서 등장하는 법리를 정리해 보고, 무죄판결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요약해 보기로 한다.

24) 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도17070 판결

## 4.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후 하급심법원 판례의 주요 법리

### 1) 개관

연구대상 기간에 선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의 판결문들 중에서 중대재해 관련 사건 중 법리에 대한 쟁점이 포함되어 있는 제1심 선고 52개의 판결문들 중에서, 사건 발생일이 개정 법률 시행 이전인 경우가 17건, 개정 이후의 판결이 총 35건이었고, 이들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31건, 상고심이 8건이었다. 앞서 8건의 대법원 판결 중 법리를 표현하고 있는 2건의 판결은 살펴보고, 아래에서는 아직 대법원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서 법률 개정 후 선고된 하급심 판결 중 검토 가치가 있는 판결들을 선별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

먼저 개정법률의 중요한 변화의 하나이자 대법원의 향후 법리 형성의 내용이 주목되는 도급인과 발주자의 구별에 대한 하급심의 태도를 살펴본다.

### 2) 도급과 발주의 구별기준

#### (1) 하급심 판례가 제시한 주요 구별 기준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sup>25)</sup> 발주자의 개념을 구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이후인 2020년 9월 22일 도급인의 공장에서 지붕 보수작업을 하던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사한 중대재해 사건을 다룬 울산지방법원은 2021년 11월 11일 다음과 같은 도급과 발주의 차이를 해석한 판결을 내놓았다.<sup>26)</sup> 비록 제1심의 판결이지만 아래에

25)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의 책임강화의 문제점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충북대학교 법학연구 제33권 제1호(2022), 91쪽 이하 참고.

기술하였듯이 항소심에서도<sup>27)</sup> 해당 법리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법원의 법리 형성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내용을 명확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1. 쟁점

피고인 C, D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정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피고인 D 주식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정한 “도급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는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2조 제10호는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으므로, 피고인 D 주식회사가 “도급인”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 즉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 2.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의 판단 기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취지 및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적극적인 조치의무를 부과(적극적인 조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인적·물적 역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역량을 갖추어야 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는 실제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26) 울산지방법원 2021.11.11. 선고 2021고단1782 판결

27) 울산지방법원 2022.9.1. 선고 2021노1261 판결

할 지위에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책임을 방기하고 실제로 총괄·관리하지 않은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의무를 면하고,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의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의무가 없었던 안전조치까지 취하는 등 시공을 총괄·관리하였으나 그 안전조치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이는 규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sup>28)</sup>

공개된 판결문중에서는 가장 먼저 개정 법률의 도급과 발주 구별을 시도한 판결인 울산지방법원의 위 판시내용을 요약하자면, 먼저 외형상 건설공사를 도급한 도급인 중에서 발주자를 가려내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발주자는 법적 개념정의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것인데, 이러한 개념정의의 실질적 표지가 무엇인지가 관건인 것이다.

제1심 법원은 이러한 개념의 구체적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 사업주와 도급인에게 적극적 조치의무를 부과한 취지를 비추어 볼 때, 위 발주자 개념은 단순히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관리할 의무를 지지 않는 자' 또는 '관리할 지위에 있지 않는 자'로 읽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의무를 진 자라면 적극적 조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역량이 부족하면 인적·물적 역량을 갖추어야 할 의무까지 수반되는 것이며 그러한 의무이행이 불가능하면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이다. 우선 그 첫 번째 논거는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의무를 진 자가 사실상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를 두고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면책한다는 것은 본 법률의 의도에 역행하는 해석이라는 것이다. 역량이 있으나 책임을 방기하고 실제 총괄·관리하지 않은 경우는 면책되고, 역량도 없으면서 열심히 안전조치를 취하려 노력한 도급인은 처벌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

28) 울산지방법원 2021.11.11. 선고 2021고단 1782 판결

치하는 것이 규범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우선 이러한 불합리성 논거에 반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사실상의 총괄·관리가 아니라 규범적으로 결정되는 지위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결국 건설공사를 도급한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도급인”의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그 도급인에게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경우에 그런 지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각호(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였다(제29조). 이에 따라, 도급사업주가 건설공사를 도급하였는데 해당 건설공사가 도급사업주의 사업의 일부이거나, 도급사업주의 사업을 구성하는 전문분야의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도급사업주는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였다. 소위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대두됨에 따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고,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었던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도 강화하면서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를 제외하면서도, 다시 도급인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를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하고,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도 제외시켰다.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최대한 넓히고, “도급인”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능력과 의무가 없는 발주자로 그 범위를 최대한 좁히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도급사업주로서의 책

임을 부담하는 건설공사도급인, 즉 도급하는 건설공사가 도급인의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고 도급인의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주화하여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예를 들어, 도급인의 주요 생산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 등 그 건설공사 자체가 도급인의 사업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도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의 지배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어, 도급인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고서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보건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도급인의 총괄·관리가 필수적인 경우에도 도급인에게 그러한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예를 들어, 도급한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도급인만이 그 위험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특수한 위험 설비나 자재가 위치한 공간 내에 있고, 도급인이 주도적으로 시공을 총괄·관리하면서 그 설비나 자재의 폭발, 전도 및 낙하 방지, 근로자 출입 금지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수급인이 독자적으로 그러한 위험을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한, 도급인과 수급인의 각 전문성, 규모,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도급인에게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능력이 있는 반면에 수급인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보건조치를 스스로 이행할 능력이 없음이 도급인의 입장에서 명백한 경우에도 그 도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예를 들어, 스스로 충분히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대규모 사업체가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함이 명백할 정도의 낮은 금액으로 전문성과 안전조치 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이 명백한 영세한 사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판시내용을 요약하자면, 법원은 신법에 따른 도급인의 정의부터 시작하고 있다. 법원의 논지에 따르면 도급인과 발주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사고 도식으로 도출되고 있다.

도급인=

- ▶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하는 지위에 있어야 함
- ▶ 구 산안법과 신법을 비교(도급사업주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 즉 원칙적으로 책임 없음, 예외적으로 책임인정 -> 개정을 통해 도급인 범위 대폭 확대, 즉 원칙적으로 책임인정, 예외적으로 책임부인 = 발주자 -> 발주자에게도 일정 의무를 인정, 즉 구법에서도 인정한 건설공사발주자개념 명확히 하면서 책임을 강화)
- ▶ 도급인의 책임을 지지 않는 도급인 = 건설공사발주자(건설발주자에게 고유한 의무만 이행하도록 함) =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능력과 의무가 없는 자

즉, 도급인은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하는 지위에 있는 자이고, 그러한 지위에 있는 자가 해당 능력이 없다면 그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도 의무라고 하고 있다. 나아가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는 안전보건조치능력이 있고, 수급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해 인식하였다면 도급인 스스로 그 의무를 인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종래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에 책임을 지는 것은 예외적인 모습으로 파악한 법률을 개정하여 개정 산안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발주자의 경우에만 그 책임에서 자유롭게 해 주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발주자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 발주자 스스로에게 부과된 관련 의무를 통해 안전을 고양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발주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도급인에 대한 일종의 면책사유를 인정하는 구조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요약적으로 판시에 등장하는 기준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세부 판단척도로 구체화할 수 있을 듯하다.<sup>29)</sup>

29) 법원의 판례를 반영한 구별기준을 제안하고 있는 경우로는 송지용,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 의의 및 기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77호(2022),

① 건설공사 자체가 도급인 사업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일부인지 여부

(예: 도급인의 주요 생산기계에 대한 유지·보수공사; 도급하는 건설공사가 도급인의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고 도급인의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짐; 건물의 신축이나 기계설비의 설치·해체와 같은 1회성 공사는 제외<sup>30)</sup>)

② 도급하는 건설공사에 도급인의 지배 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 요소가 존재하고, 도급인의 총괄·관리하지 않으면 수급인이 안전조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해지는지 여부

(예: 도급한 건설공사 목적물에 도급인만이 파악, 대처할 수 있는 위험존재, 대처할 위험설비나 자재가 위치한 공간 내에 있고, 도급인의 주도적이고 적극적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③ 도급인에게는 건설공사 시공을 주도 총괄·관리할 능력이 있는 반면, 수급인에게는 이행 능력이 없음이 도급인에게 명백한 경우

(예: 안전조치가 어려울 정도로 낮은 금액으로 도급하는 경우; 수급한 업체가 시공능력이 없이 하도급한 사실을 알았던 경우<sup>31)</sup>)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행해지고, 도급인의 사업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공사·작업이라고 판단되고, 도급인만이 파악·대처할 수 있는 특별한 위험이 있는 작업이어서 도급인의 적극적 조치가 불가결하고, 도급인은 안전조치의 능력이 있음에도 그 능력이 없는 수급인에게 도급한 경우라는 3가지의 요건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과 발주 개념에 대해 울산지방법원에 이어서 법원의 입장을 밝힌 하급심 판결인<sup>32)</sup> 2022년 8월 31일 대전지방

369쪽 이하 참조.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3.16. 선고 2022고단303 판결(유죄취지)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3.16. 선고 2022고단303 판결

3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3.16. 선고 2022고단303 판결의 판시내용은 거의 자구 하나 다르지 않게 원용하고 있어 별도 언급할 내용이 없다.

법원 홍성지원의 판시내용에서도 아래와 같이 동일한 법리가 반복되고 있다.

해당 건설 공사가 도급인의 사업의 일부이고, 도급인의 사업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주화하여 “위험만을 외주화”하는 경우라면 그 위험을 외주화한 사업주는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므로, 그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도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 도급인의 지배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어, 도급인이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고서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보건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여 도급인의 총괄·관리가 필수적인 경우이거나, 도급인과 수급인이 각 전문성, 규모,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도급인에게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능력이 있는 반면에 수급인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보건조치를 스스로 이행할 능력이 없음이 도급인의 입장에서 명백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주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sup>33)</sup>

홍성지원의 판결에서는 외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처럼 보이는 행위를 도급인(발주자)이 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발주자를 도급인으로 지위를 바꾸지는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달리 말해 위의 3가지 요건에 보충적으로 도급인 또는 발주자 여부가 문제되는 사업주의 행위를 아래의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항, 고용노동부 작성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발주자로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법령에 따른 행위와 구별<sup>34)</sup>

3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8.31. 선고 2021고단249 판결(무죄취지)

3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2.8.31. 선고 2021고단249 판결

개정 법률의 도입취지와 내용에서 언급되었듯이 비록 발주자를 도급인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발주자 고유의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도급과 발주의 구별에서 중요한 착안점임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하급심 판결들이 동일한 기준을 사용하면서도 구체적인 판결 대상 사안에서는 도급인으로 처벌한 경우와 발주자로서 무죄 판단한 경우가 섞여 있다는 점에서 해당 판결의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는 것도 수사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비록 연구기간 내의 판결은 아니지만 지난 6월 인천지방법원의 관련 제1심 판결과 항소심의 판결은 여러 가지 이유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간추려 보기로 한다.

## (2) 인천지방법원 제1심과 항소심의 견해 차이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갑문 공사 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으로 법정 구속되었다는 기사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sup>35)</sup>

최근 항소심에서 원심에 반하는 결론을 내어 놓음으로써<sup>36)</sup> 하급심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해석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가 노출되었고, 검찰의 상고로 인해<sup>37)</sup> 조만간 대법원의 법리해석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과연 그러한

35) KBC 광주방송, 갑문 공사 노동자 사망,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법정 구속, 2023.6.7. 자 기사(<http://www.ikbc.co.kr/article/view/kbc202306070050>; 2023.10.8. 최종 검색); 이에 대한 분석으로는 예를 들어 정영훈,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항만법에 따라서 설립된 ○○항만공사가 갑문 정기보수공사의 시공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의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1878 판결 -, 월간 노동리뷰, 2023년 8월호 120쪽 이하; 이승엽, 산업재해사고에 대한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책임 -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1878 판결 -, 해양한국, 2023년 7월호, 111쪽 이하 참조

36) 한겨레, ‘노동자 추락사’ 구속된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2심서 무죄, 2023.9.24. 자 기사(<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09837.html>; 2023.10.8. 최종 검색);

37) 연합뉴스, 검찰 ‘갑문 사망사건’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무죄 불복 상고, 2023.10.4. 자 기

지 이와 관련하여 양 법원의 입장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제1심 법원은 앞서 소개한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서 보인 법리와 동일한 취지의 규범적 해석을 내세웠다.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의 의미는 사실상 의미에서 실제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의해 판별해야 한다고 하겠다. 원래 법원의 법률 해석과 적용 작업이란 규범적 해석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반대로 사실에 맞추어 규범을 해석하는 것은 논리의 역전이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렇게 산업안전보건법을 해석해야만 하는 실질적인 이유를 들자면 이렇다. 즉, 만약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의 의미를 경험적으로 사실상 의미에서 실제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의해 판별하지 않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참을 수 없는 부당한 해석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곧,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도 그와 같은 책임을 방기하고 실제로 총괄·관리하지 않은 도급인은 산업안전법이 정하는 의무를 면하고,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해야 할 지위에 있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지 않는데도 수급인의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산업재해발생예방조치를 취하였는데도 산업재해의 결과가 발생한 사안의 도급인은 처벌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은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해석하여 적용하면, 그로 인해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라는 ‘갑질’이 산업현장에 만연하는 불평등 산업구조 형성을 법원이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의 외주화는 건설공사발주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공기관은 위험의 외주화를 허용 받고, 민간업체는 그것을 금지당하여 서로 불평등한 차별을 받는 것이 되어 중대재해를 예방하여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사(<https://www.yna.co.kr/view/AKR20231004048500065>: 2023.10.8. 최종 검색)

형사법적 관점에서 목적(론)적 해석이 가지는 장단점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판시내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목적(론)적 해석방법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을 논하기는 어려우므로 일단 이러한 규범적 해석기준은 앞선 일련의 하급심 판결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법원은 인천항만공사가 도급인인지 아니면 발주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종국적으로는 “규범적으로 볼 때 이 사건 갑문 정기 보수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다”라고 판단했다.<sup>38)</sup>

#### 가.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시공상 규범적 지위

우선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에도 적용되는 항만공사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항만시설 중 “갑문”은 적어도 항만공사법상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직접사업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항만공사법 제8조 제1항 제4호가 항만의 조성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항만공사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 인천항만공사는 2005. 7.경부터 무려 15년 이상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K 갑문시설 유지보수 공사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우리나라 굴지의 항구인 K의 갑문을 관리해 오고 있으므로(K에 2019년도에 출입항한 선박은 1만톤급 976척, 5만 톤급 2,651척에 이른다. 증거기록 894쪽, 1365~1369쪽, 3065쪽), 이 사건 K 갑문을 항만시설로 유지·보수하는 업무는 규범적으로 볼 때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기본적인 업무라고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규범적인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근거로는 ① 인천항만공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②검찰청에서 청사부지 내에 주차타워를 외부업체에 공사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인천항만 갑문 정기보수

38) 인천지방법원 2023.6.7. 선고 2022고단1878 판결

공사는 인천항만공사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업의 하나이고(8개 갑문을 매년 2개씩 정기적으로 보수하는 공사를 함), ③ 인천항만공사의 3본부 13실 7부 조직 중 갑문보수공사와 재해예방 등의 처리 부서로 사장 직속 재난안전실, 건설본부 산하 갑문관리실, 갑문설비팀, 갑문 운영팀이 조직되어 있고, ④ 인천항만공사가 하수급 회사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sup>39)</sup> 열거하고 있다. 특히 ②의 논거는 사업의 내용에 관련된 논거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요소라고 볼 수 있을 듯하다.

다음으로 도급으로 보아야 할 사실적 특성도 제시하고 있다.

나. 2020년 K 갑문 정기 보수 공사에서 한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사실상 역할

① 피고인 B은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 시점을 전후로 한 기간을 포함하여 2020년도 3월경부터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사장으로 취임하였고, 인천항만공사에서는 갑문정기보수공사에 관련한 업무보고를 월간이나 주간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서면 형태로 작성하여 왔으며, 특히 이 사건 사고 발생일 2020. 6. 3.이 포함된 주(周)에는 건설현장 「근로자보호조치」에 관한 이행지도 계획 수립을 이번 주 계획으로 적시하기도 한 사실(증거기록 1855쪽, 별권 1 전부 및 별권 1-2 전부, 그 중 특히 719쪽),

② R, 피고인 A 등이 위험 작업시 인천항만공사에 허가신청을 하여 인천항만공사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한 사실(증거기록 353쪽 이하), 인천항만공사의 위험성 평가표에 이 사건 사고 전인 2020. 5. 22.을 개선 예정일로 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 미수립에 의한 사고”를 언급하여 이 사건과 같은 중량물 취급 중 발생하는 재해를 예측한 사실(증거기록 2096쪽), 안전점검 순찰일지에 추락방지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표준서에 의한 안전작업 시행여부가 점검 항목란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증거기록 2098쪽),

③ 안전관련회의 및 공사 공정 협의회에 피고인 C 주식회사와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직원 뿐 아니라 인천항만공사의 직원들도 거의 매일 참여하였고, 피고인 C

39) 인천지방법원 2023.6.7. 선고 2022고단1878 판결 (19-22쪽)

주식회사의 피고인 A 등은 공사대상 갑문에 대하여 인천항만공사의 감독관들에게 보수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여 답변이나 조언을 얻고, 설계내용과 상이한 공사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받기도 한 사실(증인 A의 진술, 증언녹취록 3-4쪽, 16쪽, 26쪽),

④ 인천항만공사의 직원 N이 갑문 보수공사 감독일지를 작성하고 수급업체의 보수공사 공정률을 매주 % 단위로 점검한 사실(주간공정보고, 회의록), 피고인 인천항만공사 갑문운영팀에서 갑문 보수공사의 설계, 시공방법, 감리 등 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기획하고, 설계도면도 직접 작성하고, 수급인의 공정상황을 고려해 설계도를 직접 변경하기도 한 사실(보수공사 설계서 기재, 설계도면, 변경시방서의 각 기재),

⑤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 정책국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에 관련하여 도급시 산업재해예방운영지침을 시행한 사실 (증거기록 431쪽),

⑥ 인천항만공사 사장인 피고인 B은 자신이 책임자임을 명백히 규정 보고받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을 사장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받도록 일정을 조율한 사실(증거기록 556쪽, 569쪽),

⑦ 2020년도 위험성평가보고에 피고인 B이 사장으로서 결재하였고, 갑문설비 위험성 점검 등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았으며, 2020년 1분기 안전근로협의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이 작성된 사실(증거기록 589쪽, 795쪽, 1927쪽),

⑧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인 2020. 5. 12. 피고인 인천항만공사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안에 피고인 B이 사장으로서 결재하였고, 그 개정안 제22조의4(안전작업 허가제도)에 “사장은 공사의 작업장에서 발주하는 보수 작업 등의 공사가 안전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작업 허가지침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증거기록 624쪽, 635쪽, 2061쪽),

⑨ 이 사건 근로자의 사망사고 이후 인천항만공사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하고 K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안)을 마련하였으며, 갑문운영팀이 2020년 K갑문 정기보수공사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수립시행(안)도 갖추었는바, 그 개정안이나 대책안에 피고인 B이 사장으로서 결재하고, 공공기관 안전대책 점검회의 결과 및 사고예방활동 강화교육 결과보고서,

2020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내부심사 결과보고에도 결재를 한 사실(증거기록 668쪽, 696쪽, 715쪽, 958쪽, 1794쪽 이하, 별권 3, 1939쪽),

⑩ 피고인 인천항만공사가 피고인 C 주식회사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2020. 4. 경부터 11.경까지 8회에 걸쳐 위 C 주식회사에 안전교육 이행여부 확인 및 기타 위험평가서 작성·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 이를 확인한 사실(증거목록 88번, 89번의 각 안전교육 및 기타사항 이행여부 확인), 위험성평가가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이행점검을 한 사실(증거목록 91번.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일정 알림), 2020. 4. 22.부터 2020. 5. 22.경까지 직접 작업허가서를 발급하고 승인한 사실(증거목록 95번 일반위험작업허가서), 주간작업일보, 월간작업일보 등을 제공받은 사실(증거목록 289, 311번),

⑪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직전인 2020. 3. 및 2020. 5. 등에 추락예방 안전점검 사항이 포함된 「4·4·4 안전점검의 날 실시결과보고서」에 피고인 B이 사장으로서 결재한 사실(증거기록 1943쪽, 별권 3, 2140쪽, 2151쪽, 2159쪽), AB가 실시한 2020. 5. 13.자 재해예방 지도점검서류에서 추락위험이 지적되었고, 2020. 5. 26.에도 ‘추락위험’을 지적하면서 ‘안전대부착설비 및 안전난간대 등 설치 철저’ 대책을 제시하는 기술지도 결과보고서가 작성, 제출된 사실(증거기록 210쪽, 2475쪽, 2794쪽),

⑫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시행되던 피고인 인천항만공사의 위임전결 규정상 이 사건 갑문 보수공사와 같은 3억 원 이상의 공사와, 건설현장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업무가 사장의 결재사항인 사실(증거기록 1016쪽, 1033쪽),

⑬ 그런데도 27년의 공직생활 동안 항만청 등 관련 부처에서 근무를 하였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이수, 2020. 3.경 사장 취임시 갑문운영팀 업무보고 등을 통해(증거기록 713쪽, 1441쪽, 2823쪽, 2841쪽) 항만 내에 상존하는 안전사고의 유형과 위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피고인 B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일하는 근로자가 추락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사실(증거기록 214쪽)을 인정할 수 있다

보고, 관여·개입, 국가기관의 평가, 위험성 평가 보고청취 및 이행점검한 사실, 해당 분야의 다년간 경험으로 안전사고의 유형과 위험을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 등 사실상 안전사고의 예방의 권한과 능력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사실적 근거들은 반대 입장에서는 발주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고, 항소심과 상급법원의 판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지는 미완의 상태이지만, 실질적으로 발주인지 아니면 도급인지를 판단하는데 활용될 수 있고, 고려되어야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개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해당 제1심 법원은 양형측면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이 던지는 사회적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엄벌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피고인들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을 담당하던 인천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원심을 파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시했다.

## 2) 피고인 C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검사는 피고인 C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임을 전제로 같은 법 제63조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근로자 G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는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7호는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한다. 같은 조 제10호는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같은 조 제11호 가목,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는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를 건설공사에 포함하고 있다. 위 각 규정상 도급인에서 제외되는 건설공사발주자의 요소인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률의 규정은 그 규범의 목적에 맞게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실제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그러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을 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기 때문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은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와 별개로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공사발주자가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정을 두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였다는 근거로 삼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설공사를 도급한 자가 공사의 안전관리에 덜 관여할 수록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지위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은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도급인의 독자적인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일부 작업의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이는 사업주가 필요하지만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을 분리해 다른 수급인에게 외주화하면서 비용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책임을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응하여,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수급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억제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다. 한편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발주자를 정의하면서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에 관한 의무를 신설하였다. 이는 건설업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예방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도급한 자는 민법상으로 모두 도급인에 해당할 것임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발주자를 같은 법상 도급인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이 도입된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 시공(施工)은 공사를 시행한다는 의미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법률상의 자격을 가지고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자가 그 공사를 수급인에게 도급하는 경우, 도급을 한 자로서는 자신이 직접 시공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하고 산업재해의 위험 등 안전에 대한 책임을 수급인에게 떠넘기는 결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도급인이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 산업안전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할 당위가 있다. 한편 법률상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할 자격이 없거나,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아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그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하지 않고서는 공사를 할 수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이러한 외관을 야기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사를 자격과 능력을 갖춘 건설업자에게 도급한다고 하여 위험의 외주화의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책임을 부담하는 범위를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로 규정함으로써(제63조), 도급의 유형, 위험장소, 사업의 목적 등에 관계없이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에 대해 책임지도록 하였고, 이를 위반한 도급인에게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과 능력을 갖춘 자가 그 공사를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하는 경우, 공사를 도급한 자로서는 해당 공사의 공정과 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업재해의 위험, 그리고 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도급인이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자가 그 공사를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한

경우, 공사를 도급한 자는 해당 공사의 공정이나 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의 위험, 그리고 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이러한 경우 공사를 도급한 자에게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그 지위나 역할과 비교해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일뿐더러, 산업안전보건법이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 목적과 정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공사를 도급한 자 중 건설공사발주자를 떼어내어 도급인의 책임 대신 독자적인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을 부과한 것은 이러한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다.

마)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이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할 수밖에 없는 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할 뿐 도급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2020. 3. 발간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 1. 16.)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 중에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자신의 주도하에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로서 자체사업으로 건설공사를 총괄·관리하며 시공하는 자(자기공사자)를 의미”한다. 고용노동부는 질의회신에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는 발주와 시공을 함께 실시하는 자를 제외하고 순수 발주만 하는 자를 말한다’(산업안전과-4675, 2019. 10. 28.),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며, 직접감독 업무는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산업안전과-2524, 2019. 6. 5.),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경우 일반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해당 건설공사의 공정 및 품질 등의 관리감독 업무는 발주자 및 감리의 업무에 포함되므로, 고속도로 공사를 발주하고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산업안전과-1840, 2020. 4. 2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용하는 건설공사발주자의 용어를 정할 때 발주행위와 함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는 단순 발주자와 달리 시공에 참여하므로 도급인의 의무를 주고자 법상 정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

이다'(산업안전과-1695, 2021. 4. 9.), '사용 중인 건축물 내 승강기 교체공사를 수행할 경우 그 설치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최초로 도급하는 자에 해당한다면 동 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산업안전과-2310, 2020. 5. 24.)고 유권해석하였다. 유관부처의 법률해석이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자기의 주도하에 자체사업으로 직접 시공하지 않는 자의 경우 설령 그 공사를 감독하거나 품질관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이 아니라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건설공사를 시공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자라면 그 공사를 자신의 주도하에 자체사업으로 직접 시공할 수는 없다.

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공사는 대규모 갑문에 대한 정기보수공사로서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서 규정하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하나인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 C는 강구조물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국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도 없으므로 위 공사업에 대한 시공자격을 갖추 가능성이 없다.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 C의 설립 목적 중 하나인 '항만시설의 유지 및 보수'의 일환으로 시행되었고, 그 보수공사는 매년 2개의 갑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오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C로서는 그 공사를 발주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피고인 C는 갑문관리실 등의 직제와 인력을 갖추어 일상적인 갑문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정기적으로 갑문 보수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소규모의 관리작업은 직접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갑문 보수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였다. 반면 E 등은 비록 규모는 피고인 C보다 작았지만,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마치고 공사대금 22억여 원의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회사였다. 각 시공 과정과 공정, 시공에 필요한 자재 및 운반방법,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업재해의 위험성 등에 관하여 피고인 C는 E 등이 가진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 있어 발주자인 피고인 C의 지배하에 있는 특수한

위험요소가 있어 E 등이 실질적으로 안전및 보건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아) 피고인 C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사업을 기획하고, 설계, 감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소속 직원이 현장에서 공정률을 점검하고 공사를 감독하였다. 그러나 건설공사에 대한 사업 기획, 설계, 감리, 공정률 점검과 같은 공사의 관리와 감독에 관한 업무는 본래 건설공사 발주계약에서 발주자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두고 피고인 C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할 수 있었다거나 시공에 참여하였다는 징표로 삼을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 C는 사장인 피고인 B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였고, E 등 측으로부터 안전교육 이행여부 확인 및 그 밖의 위험평가서 작성·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위험성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이행점검을 하는 등 이 사건 공사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를 점검하고 관리하였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 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건설공사가 적절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일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67조 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사업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62조 제1항)고 규정하는 등 여러 법률에서 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해 온 것을 두고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

자) 결국 피고인 C는 스스로 시공할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지 못한 건설공사를 E 등에 도급한 것이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할 뿐 도급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장황한 판시내용을 요약하자면, 항소심이 원심을 파기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위 설사에서 법률해석과 도급과 발주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원심과 사실상 견해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법원의 결론이 달라진 것은 법적 요건에 사실을 포섭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 차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말해 사실에 대한 평가의 관점에서 양 법원의 판단이 상이했던 것이다.

결국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고 가장 중요한 쟁점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는 도급인과 발주자의 구별에 대해서는 다수의 하급심과 항소심의 판결에서 제시되고 있는 법률해석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규범적 도급·발주 개념에 어떤 사실이 포섭될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평가의 문제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입증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 3) 하급심 판결의 주요 쟁점과 법리

도급과 발주 구별에 천착한 위 판결들 외에 법리가 포함된 제1심 판결 중 법률 개정 이후에 선고된 판결에서 주로 다루어진 쟁점은 위의 통계 분석에서 보았듯이 주의의무의 존부, 안전조치의무의 존부, 이들 의무위반과 결과 사이의 인과성, 과실이나 부작위, 행위주체여부, 실질적 고용관계의 존부 등이 주를 이루고 있고, 도급여부, 공동정범, 고의 등의 쟁점도 3~4건 정도 보인다. 이들 쟁점들은 법률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변경되지 않은 법률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그 중 의미있는 판결들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 (1)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위의무 부작위에 대한 고의인정 방법

백화점 공조실에서 수급인 근로자로 하여금 고압살수기를 사용하여 식당가 하수관 세척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울산지방법원은<sup>40)</sup> 해당 공간을 밀폐된

40) 울산지방법원 2021.12.23. 선고 2021고단623판결

공간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하고, 도급사인 백화점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대해서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밀폐공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선고하였다.

동 판결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에서 반복되어 제시되고 있듯이 제168조 이하의 규정에 의해 처벌되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나 제167조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의 성립에는 의무위반에 대한 고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그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 족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위반죄는 위 피고인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위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위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sup>41)</sup>. 다만 위 피고인이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서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위 피고인이 그러한 작업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 죄는 성립한다는 것이다.<sup>42)</sup>

부작위범의 고의라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의의 대상을 언급한다면, 자신의 안전보건조치의무, 그 의무의 내용과 이행가능성, 의무의 부작위(불이행), 결과발생가능성의 인식, 이러한 결과발생에 대한 용인의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증거의 존재여부가 유죄 입증의 중요한 판단

41) 대법원 2007. 3. 9. 선고 2006도8874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1.12.23. 선고 2021고단623 판결

42)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참조

대상이 될 것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 (2)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여부 판단기준으로 규범 목적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제1심의 판결은 그 의무 내용을 너무 넓게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대해 울산지방법원 항소심은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원용하며<sup>43)</sup> 안전보건조치의 내용도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sup>44)</sup> 것이다. 이른바 모든 사정을 고려한 종합판단이며, 규범적 관점에서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작위범의 구체적인 작위의무는 일견 관련 안전규범에서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의무는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의무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고 발생의 구체적인 상황, 그 사업장이나 사업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특수한 위험 등이 당연히 고려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규범적 관점, 또는 규범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대법원이나 하급심의 기준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수범자의 입장에서는

43)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등 참조

44) 울산지방법원 2022.10.13. 선고 2022노48 판결

당연히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사업장 마다의 특수한 위험요소를 고려한 위험성 평가나 업무매뉴얼을 만들어가는 노사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그 공사·사업분야의 지식을 가진(사업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평균인이라면 예상할 수 있었을 위험에 대한 예상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 (3) (작위)의무위반관련성과 인과관계

부작위범의 인과성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작위)하였었다면 발생한 그 결과가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이른바 의무위반관련성 판단에 의해 심사된다. 비록 피고인의 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해 범죄적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면 발생한 결과와 의무위반과의 인과관련성이 부인된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례도 여러 건 발견된다.<sup>45)</sup>

철근 콘크리트 해체작업 중 발생한 콘크리트 파편이 피해자에게 날아가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가격, 흉부손상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은<sup>46)</sup> 설령 피고인들이 작업계획서에 따른 신호수 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의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38조 제3항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의무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45) 춘천지방법원 2022.5.25. 선고 2021고단128 판결

4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11.10. 선고 2021고단227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2.9.2. 선고 2021노4492 판결

#### (4) 피해자의 과실과 인과관계

피해자의 과실이나 알 수 없는 다른 원인이 어느 정도 개입되더라도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는 판례는<sup>47)</sup> 의무위반관련성 문제와 혼동해서는 안되는 사례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항소심 법원의 판시처럼 중대재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판례는 다수의 원인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중 어느 하나의 원인이 인과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므로, 마치 등가설의 결론과 같이, 모든 원인에 인과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의무위반 관련성은 문제되는 의무위반이 없어도 결과는 발생할 수 있다는 구조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과실이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면 다른 원인 제공자들에게도 당연히 인과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 (5) 주의의무위반 관련성

주의의무위반은 과실의 전형적 표지로서 업무상 과실범이나 결과적 가중범인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의 과실부분의 입증을 위해 증명되어야 하는 범죄성립요소이다. 하급심 판결 중에서는 피해자의 지병으로 인한 추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인과성 인정에 문제가 있다는 판시가 등장하기도 한다.<sup>48)</sup>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소각재 배출구로 추락하기 이전에 이미 동맥경화로 인한 급성 심장질환이 발병하여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소각재 배출구 추락하고 추락한 이후에도 얼마간 호흡이 유지되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나머지 수심이 0.6m에 불과한 수조에서 스스로 빠져나오거나 구조요청도 못한 채 결국 익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47) 춘천지방법원 2022.12.23. 선고 2022노571

48) 청주지방법원 2021.12.2. 선고 2019고단2233 판결; 청주지방법원 2023.1.12. 선고 2021노1602 판결

나아가 피해자가 급성 심장질환의 발병에 불구하고 소각재 배출구로 추락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응급구호를 받는 등의 사유로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단정할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하므로, 앞서 본 사실 등만으로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가 피고인 A 등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내지 업무상 과실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sup>49)</sup>

위 사안에서는 우선 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질병으로 인해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면 피고인의 의무위반과 사망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점, 설령 질병이 있어서 쓰러져도 배출구로 추락하지만 않았다면 (의무위반을 하지 않아 배출구 추락을 방지할 조치가 이루어졌었다면, 의무위반이 없었다면) 사망하지 않았으리라는 확신도 없는 상태라면 의무위반 관련성(안전조치의무위반 또는 주의의무위반(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 (6) 규범적 판단기준으로 실질적인 안전조치

구체적 사안에서 어떤 안전보건조치가 요구되는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원은 규범적 기준, 즉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요구되는 안전보건조치를 취했는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해당 안전보건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sup>50)</sup> 대법원의 판시에 따른 하급심의 설시도 해당 의무행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도의 실질적인 조치였는지를 묻겠다

49) 청주지방법원2021.12.2. 선고 2019고단2233 판결

50) 대법원 2021.9.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2.12.23. 선고 2022노571 판결

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신호수 역할에 대해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하며 이 사건 투하 현장에 진입하지 말 것 등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켰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 A, 증인 K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를 선뜻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근무 현장에서의 위험 상황 및 작업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전교육이나 구체적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비록 어느 정도의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본질적 위험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는 없었다고 판단된다).<sup>51)</sup>

#### 4) 무죄판결 분석

끝으로 중대재해 사건 중 최고책임자인 자연인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결들의 중요한 무죄 이유들은 아래에서 간략히 요약한 바와 같다.

번호	사건번호	무죄이유 등	비고
1	울산지법 2021고단1782	도급 아닌 발주자	행위 주체 (작위의무자)
2	청주지법 2020고단1720	사실상 고용관계 부재	
3	창원지법 2021고단1668	도급인의 의무 부인	
4	대전지법 서산지원 2020고단809	도급사 대표이사의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위반 불인정, 고의부정 (법인)실질적 고용관계 부재	행위(작위와 부작위), 결과, 인과관계 등

51) 춘천지방법원 2022.12.23. 선고 2022노571 판결

5	청주지법 제천지원 2020고단20	사고발생의 원인불명확 증거불충분(입증부족)	작위의무존부 · 작위의무이행 여부 · 부작위와 결과의 인과성 등
6	창원지법 진주지원 2020고단400	안전조치불이행 불인정	
7	인천지법 부천지원 2021고단227	안전조치불이행 (의무위반) 불인정, 범죄증명없음	
8	춘천지법 2021고단128	사실확정의 불명확성 의무위반관련성 불명확 증거불충분	
9	서울중앙지법 2020고정1030	의무불인정, 고의입증 부족 증거불충분	

실질적 고용관계가 존재하는지, 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인지, 따라서 안전조치의무가 인정되는지와 같은 주체의 문제, 그리고 의무위반이 있는지, 인과성이 있는지, 고의가 있는지 등의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다. 달리 말해 행위주체, 행위(의무위반의 부작위), 부작위와 결과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사실적·법적 문제들이 주요 이유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무죄 사건들의 사유들을 간략히 정리해 본다.

#### (1) 행위주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자 관련

울산지법 사건은<sup>52)</sup>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을 수용한 경우로,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은 요건을 심사한 결과, 도급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경우이다. 문제된 공사가 도급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의 일부라고 볼 수 없고, 도급회사만이 파악할 수 있는 특별한 위험요소가 있거나, 도급인이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않고서는 수급인이 실질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기 현저히 곤란하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

52) 울산지방법원 2021.11.11. 선고 2021고단1782 판결

는다는 것이다. 이 사안에서 이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본 것이다.

청주지법 사건은 법률 개정 이전에 발생한 간판교체작업을 하다가 추락사한 사고 관련 판결인데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기소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동 판결에서는 실질적인 고용관계 유무는 고용계약이나 도급계약 등 근로계약의 형식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sup>53)</sup>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고 있다. 고용관계의 실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범죄의 주체를 잘못 인정한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사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단서의 도급인의 안전조치 범위에서 보호구 착용지시 등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 점, 산업안전보건법상 추락방지 의무의 주체는 사업주로 도급인의 책임은 배제된다는 점, 관련 계약상 안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다.<sup>54)</sup>

이러한 판결들은 모두 피고인이 작위의무를 지는 자인가에 대한 판단오류가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사고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지는 자를 정확하게 선별하는 것이 수사나 기소의 적법성과 효과성을 위해 필수적인 선행 작업이라는 것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 (2) 의무위반, 인과관계 및 증거불충분

대전지법 서산지원의 판결은 도급회사의 경우 실질적 고용관계의 부재로 무죄, 도급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을 져야

53)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등 참조

54) 창원지방법원 2022.2.10. 선고 2021고단1668 판결

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자로 회사 내의 지휘계통을 통해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관리감독하는 일반적, 추상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선고한 사건이다.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본사에도 안전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고, 본사 아래의 사고발생과 직접 관련된 본부에도 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었고, 사고 현장의 업무와 그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할 사정이 아니었다는 등의 사실을 제시(고의부정)하고 있는데,<sup>55)</sup> 이러한 사안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해 향후에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의 판결대상 사건은 폭발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누구의 과실이나 부작위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른바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 원칙이 적용된 결과, 무죄선고가 내려진 사건이다.<sup>56)</sup>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다룬 사건은 굴착기로 철근 콘크리트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콘크리트 파편이 살수작업을 하던 피해자에게 날아가 흉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사실을 다루었는데,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가슴부위에 파편이 맞아 사망한 사실과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의 부작위(출입금지위반이나 신호수를 별도로 배치하지 않은 작위의무위반)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선고하였다<sup>57)</sup>. 비록 의무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위반이 중대사고의 원인임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춘천지방법원 판결의<sup>58)</sup> 대상 사안은 사고발생의 경위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위반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행위가 예상할 수 없는 경우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다.

5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2.10. 선고 2020고단809 판결

5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8.26. 선고 2020고단20 판결

5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11.10. 선고 2021고단227 판결

58) 춘천지방법원 2022.5.25. 선고 2021고단128 판결

서울중앙지법 판결에서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A/S 수행으로 베란다 난간 외측에 위치한 소자류(케이블 연결부) 교체 작업후 사진 촬영 중 31.2m 아래의 지상 화단으로 추락사한 사건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고의를 입증하지 못해 무죄가 선고되었다.<sup>59)</sup> 매니저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A/S 담당기사가 작업을 완료한 것을 확인하고 촬영해야 하는 공식적인 절차나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진 촬영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나 방치 등의 고의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 5. 소결

지금까지 2020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선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중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된 판결들에서 등장하는 법리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상고심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도급인의 책임강화와 관련된 규정 개정 이외에 기존의 대법원의 해석론, 즉 법리를 바꾸어 놓을 특징적인 규정 개정은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한편으로는 대법원의 기존의 해석론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사건의 처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들을 발췌하여 정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록 하급심 판결이지만 다수의 하급심 판결들이 동일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 도급인과 발주자의 구별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해 보았다. 도급인과 발주자의 구분에 대한 하급심의 법리는 2개의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대법원의 법리 형성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규범적 해석은 대법원이 최근 들어 사업장에서의 재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실질적이고 충실한 조치와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식으로 명백한 방향설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7.7. 선고 2020고정1030판결

점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기간 동안 선고된 중대재해 관련 사건의 판결문 중에서 대법원의 법리를 확인하거나 보충하는 내용의 하급심의 내용을 검토해 보았고, 마지막으로 무죄판결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검토해 보았다.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건에서의 쟁점은 대부분 기소된 피고인이 행위주체, 즉 의무위반의 주체인지가 문제된 경우가 아니면 의무위반여부, 의무위반이 결과발생의 원인이었는지 여부를 다룬 문제였음을 알 수 있었다. 도급 관계가 문제된 사례에서 도급인의 최고책임자가 무죄 선고된 5건은 전체 무죄사건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도급을 둘러싼 의견차이가 크게 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의 안전보건의무위반치사죄는 부작위의 기본행위(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로 인해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결과적 가중범)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부작위범, 과실범, 인과성(직접성 원칙) 등 고의작위범과 달리 다소 난해한 법리가 등장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대법원이 규범적 해석론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이 근로자의 안전확보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지만, 작위의무자들의 행위정향이라는 관점에서 다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방향일 수도 있다는 점은 지적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대재해를 수사하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법적 쟁점이 된 부분들을 고려한 수사목표와 절차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인권의 침해를 막으면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본 연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무관하지만 범죄성립요건의 해석이나 죄수론 등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들을 검토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와 수사 실무에 어떤 시사가 있는지를 보기로 한다.



## IV.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판결문 분석





## IV.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판결문 분석

### 1. 개요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줄임)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와 유사하게 ‘중대 산업재해’를 규정하고 있고, 종래의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 관련 판례의 법리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표 46〉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중대재해 개념정의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u>3개월 이상</u> 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u>동시에 10명 이상</u>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 처벌법	제2조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u>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u>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u>동일한 유해요인으로</u>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u>1년 이내에 3명 이상</u> 발생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사상의 결과(산업재해치사죄)가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의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판결문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법리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검토는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조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점에서 도급과 관련한 법리 이해에도 중요한 착안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고의와 과실, 인과관계,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 죄수 판단 등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2023년 10월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 등장하는 법리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 2.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재판 현황

2022년 1월 27일 시행 후 1년 6개월여 경과한 2023년 6월30일까지 검찰에 의해 기소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아래 <표 31>에서 정리된 것과 같이 총 20건으로 그 중 최근까지 5개의 사건에 대한 제1심 또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상태이다.

현재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기소 및 공판 현황을 보면, 근로감독관의 수사기간을 제외하고 기소 이후 공소제기까지 1~2개월이 걸리지 않은 사건이 있는가 하면 1년 이상이 소요된 사건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처리 기간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소요기간 보다는 장기간이 될 것이라고 일반화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대상 범죄의 속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장기의 처리기간이 소요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산업안전보건법의 수사기관과 공판절차도 함께 장기화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적절한 문제해소 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47〉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절차 진행 현황

구분	관할법원	사건번호	피고인	송치일	기소일	선고일 (확정여부)
1	창원지법	22고단14 29	○○산업	22.04.11	22.06.27	
2	대구지법 서부지원	22고단29 40	○○○○ 산업개발	22.05.06	22.10.19	
3	인천지법	23고단651	○○○ 건설	22.05.11	22.12.29	23.06.23
	(항) 인천지법	23노000		쌍방항소	-	
4	창원지법 마산지원	22고합95	○○제강	22.05.17	22.11.03	23.04.26
	(항) 부산고법	23노167		항소	-	23.08.23
5	창원지법 통영지원	23고단95	○○○○○○○	22.05.31	22.11.03	
6	의정부 지법 고양지원	22고단32 55	○○건설	22.05.31	22.12.09	23.08.25
7	의정부 지법 고양지원	22고단32 54	○○○○○○○	22.06.29	22.12.09	23.04.15 (확정)
8	춘천지법	22고단14 45	○○종합건설	22.07.26	22.12.29	

9	창원지법 마산지원	23고합8	○○건설	22.08.25	22.12.29	23.08.25
10	제주지법	23고단146	○○종합건설	22.09.19	22.12.30	
11	울산지법	22고단44 97	○○	22.11.04	22.12.27	
12	대구지법 서부지원	23고단593	○○○○○	22.10.24	23.02.14	
13	대구지법 서부지원	23고단834	○○건설	22.12.06	23.03.17	
14	의정부 지법	23고단16 87	○○산업	22.06.14	23.03.31	
15	울산지법	23고단16 87	○○산업	23.01.10	23.05.08	
16	부산지법	23고단16 16	○○종합건설	22.11.03	23.05.08	
17	광주지법 순천지원	23고단778	○○스틸산업	22.11.14	23.05.22	
18	서울 중앙지법	23고단32 37	○○	22.08.04	23.06.02	
19	청주지법	23고단14 64	○○○○○	22.05.23	23.06.05	
20	서울 북부지법	23고단25 37	○○○○산업	22.06.16	23.06.14	

아래에서는 현재까지 선고된 제1심과 항소심 판결에서 보여주고 있는 하급심 법원들의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을 둘러싼 법리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기로 한다.

### 3. 산업재해치사상죄에 대한 법원의 법리 분석

#### 1) 판결 현황 개관

2023년 9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제1심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는 아래의 5건의 판결이다. 중복되는 부분을 피하고 관련 법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48〉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판결 선고 현황

구분	사건번호	비고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4.6. 선고 2022고단3254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4.26. 선고 2022고합95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 2023.8.23. 선고 2023노167	
3	인천지방법원 2023.6.23. 선고 2023고단651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8.25. 선고 23고합8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심 판결

### (1) 개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최초의 제1심 판결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판결에서 재판부는 도급 회사에 대해 벌금 3천만 원, 동 회사의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6월에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현장소장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현장안전관리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수급회사에 벌금 1천만 원, 동 회사의 현장소장에게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을 유예하였다. 도급회사의 경영책임자가 피고인들 중에서 가장 중한 형을 받았다는 사실이 특히 강조되기도 하였지만,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도 있었다.<sup>60)</sup>

도급인의 책임이 가중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물론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처벌규정이 도급인에게도 동법 제5조를 통해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법적 책임이 상당히 중하게 변경된 상황에서 나온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고, 대법원의 확정판결 전에는 선불리 어떤 것을 단정하는 것도 시기상조일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다른 3개의 제1심 판결과 종합하여 검토하면, 지금까지 법원의 양형실무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성립여부 판단과 양형의 추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0) 한겨레,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 아쉽지만 진일보한 첫걸음, 2023.4.12.자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87655.html> : 2023.7.10. 최종 검색); Kim&Chang, 뉴스레터,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3.4.25.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_x=27178](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_x=27178): 2023.7.12. 최종 검색)=법률신문, 뉴스레터, 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3.5.11.자 (<https://www.lawtimes.co.kr/news/187478>: 2023.7.10. 최종 검색); 연합뉴스, 중대재해법 '1호 판결' 집행유예...노동계 "숨방망이", 2023.4.6.자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406018900641>: 2023.7.14. 최종 검색)

주지하다시피,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적용을 피할 수 있었던 최고경영자, 그것도 도급인 사업주의 최고경영자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중형이라는 평가가 경영계의 전반적 반응이라면, 노동계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사뭇 다른 평가가 병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다수의 판례가 쌓이고 중요 범죄성립요소 등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가 형성되고 안정되기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상이한 평가들이 대립하는 것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인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최초의 판결과 연이은 2개의 제1심 판결에서 읽을 수 있는 법원의 태도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다룬 사건의 피고인의 소속·지위 및 선고형을 우선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소속(지위), 형벌, 적용법조 및 죄수]**

피고인 (지위)		형벌	적용법조
			죄수 등
도 급 인	주식회사 온00000	벌금 3천만원	중처법 7, 1호, 6①, 5, 4①1호, 2,2,가목 (중대산업재해의 점) 산안법 173, 167①, 63, 38②,③(안전조 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안법 173, 168,1호, 63, 38①,③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sup>61)</sup> 형법 40, 형법 50(더 중한 중대재해처벌위반으로 처벌) -경합범 가중 형법 37전, 38①2호, 50, 42단
	피고인 정00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징역 1년 6월 3년 집행유예	중처법 6①, 5, 4①,1호, 2,2호 가목

	피고인 김OO (현장소장/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징역 8월 2년 집행유예	산안법 173, 167①, 63, 38②,③(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268, 30(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안법 168, 1호, 63, 38①,③(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40, 형법 50(더 중한 산안법위반으로 처벌) -경합범 가중 형법 37전, 38①2호, 50, 42단
	피고인 방OO (현장안전관리자)	벌금 5백만원	형법 268, 30
수 급 인	주식회사 아OOOOO	벌금 1천만원	산안법 173, 167①, 38②, ③
	피고인 권OO (현장소장)	징역 8월 2년 집행유예	산안법 173, 167①, 38②, ③ 형법 268, 30 형법 40 형법 50(더 중한 산안법위반으로 처벌)

수급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유예된 사업장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처벌가능성이 있지만, 기존 대부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특히 건설분야)에서 흔히 그러하듯이 현장소장의 책임만이 문제되고, 대표이사는 (대체로 고의·과실이 결여되어) 구체적인 의무위반을

61) “검사는 피고인 주식회사 온OOOOO의 위 각 죄의 관계를 경합범 관계로 보아 공소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각 죄는 모두 근로자의 생명이라는 동일한 보호법익을 보호하고 있고, 의무 위반행위 각각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으로 향해 있는 일련의 행위라는 점에서 규범적으로 동일하고 단일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로 봄이 상당하다(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123-124면 참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4.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태도가 여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 (2) 사실관계 요약

### 가) 피고인의 지위

수급인인 주식회사 아○○○○○는 주식회사 온○○○○○로부터 693,000,000원에 철골 및 데크플레이트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현장에 자신 회사 소속 근로자를 현장에서 작업하게 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권○○은 동 회사 소속으로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다. 권○○은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아○○○○○는 안전조치의무를 지는 사업주이다.

주식회사 온○○○○○은 건축공사를 영위하는 법인사업주로 고양시의 한 요양병원 신축공사를 8,138,900,000원에 도급받아 2022.3.29.경부터 착공, 자신 회사의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주식회사 아○○○○○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정○○은 주식회사 온○○○○○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다. 피고인 김○○은 동 회사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방○○은 같은 회사 소속 공사 현장 안전관리자로서 피고인 김○○의 지시를 받아 소속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자이다.

### 나) 사건개요

아래 판결문에 서술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도급 회사 소속 현장소장 피고인

김○○과 안전관리자 방○○과 수급회사 소속 현장소장 권○○의 의무위반, 즉 작업장의 상태 등 사전조사 부작위,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지휘자 지정의 부작위, 의무위반의 방치(상단 봉 해체 작업), 안전대 지급 부작위, 부착설비 미설치, 수평인양의무 위반의 고의의 방치 등의 의무위반이 피해자인 작업자의 추락 사망을 야기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 방○○은 법률상 작위의무자가 아니므로 사업장에서의 위험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주의의무(업무상주의의무) 위반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2022. 5. 14. 13:38경 피고인 김○○, 피고인 권○○, 피고인 방○○은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지는 병원 건물 5층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아○○○○○ 소속 피해자 김낙수(48세)로 하여금 고정앵글(크기: 75mm × 75mm, 두께: 6mm, 길이: 2,750mm, 무게: 18.84kg의 철근)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고정앵글을 설치하기 위하여서는 위 건물 6층에 설치된 윈치(반자동 도르래)를 이용하여 위 건물 1층에서부터 6층까지 그 내부에 있는 길이 4,100mm, 폭 1,630mm의 개구부를 통해 고정앵글을 인양하여야 하는데, 그 높이가 16.5m(건물 5층 개구부 단부에서부터 1층 바닥까지의 높이)이며 고정앵글의 무게도 약 94.2kg(고정앵글 5개 × 18.84kg)에 달하여 중량물이었으므로 근로자가 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 무게 등으로 위 개구부 내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피고인들은 고정앵글을 발주하는 등 피해자를 포함한 앵글 작업자들이 2022. 5. 14.에 고정앵글을 인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중량물인 고정앵글의 인양을 위한 작업의 내용, 작업장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고 작업지휘자도 지정하지 않아 위 앵글 작업팀으로 하여금 임의로 작업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② 피고인 김○○와 피고인 방○○은 앵글 작업팀이 기존에 중량물을 6층에 있는 양중기인 윈치를 이용해 개구부를 통해 인양함에 있어 수월하게 건물 내부로 중량물을 인양하기 위해 개구부 단부에 설치된 안전난간 상단 봉을 해체하여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권○○는 위와 같이 사전조사 등을 통해 중량물취급을 위한 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위 앵글 작업을 방

치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③ 또한 피고인 김○○와 피고인 방○○은 위 원치에 설치된 와이어 로프에 자전 방지 기능이 없어 하중이 가해질 경우 자전함에 따라 두 줄로 묶어 인양할 시 로프의 자전으로 철근이 벽에 부딪히는 등 인양이 어려워 앵글 작업팀이 한 줄로 묶어 기울어진 상태로 철근을 인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권○○는 마찬가지로 사전 조사 등을 통해 중량물 취급을 위한 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위 앵글 작업을 방치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포함한 앵글 작업자들이 이 사건 고정앵글을 운반함에 있어 한줄 걸이를 하도록 한 과실로, 2022. 5. 14. 13:46경 위 건물 5층 개구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가 상단 봉이 해체된 안전난간 위로 손을 뻗어 슬링 벨트로 한 군데만 묶어 원치로 인양 중인 약 94.2kg 상당의 고정앵글 5개 1묶음을 건물 내부로 당기던 중 위 고정앵글이 슬링 벨트에서 이탈해 바닥으로 떨어지자 그 반동으로 함께 16.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도록 하였고, 같은 날 14:24경 일산병원 응급실에서 머리부위, 몸통 등 둔력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다) 피고인들의 범죄행위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도급 및 수급사업주의 현장소장들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위반(안전보건조치위반치사죄)과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 그리고 도급사업주의 현장안전관리자의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법원은 우선 도급사업주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1. 피고인 김○○, 피고인 권○○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방○○의 업무상과실치사

위 피고인들은 2022. 5. 14. 13:38경 피고인 김○○, 피고인 권○○, 피고인 방○○은 이 사건 공사가 이루어지는 병원 건물 5층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아○○○○ 소속 피해자 김낙수(48세)로 하여금 고정앵글(크기: 75mm × 75mm, 두께: 6mm, 길이: 2,750mm, 무게: 18.84kg의 철근)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고정앵글을 설치하기 위하여서는 위 건물 6층에 설치된 윈치(반자동 도르래)를 이용하여 위 건물 1층에서부터 6층까지 그 내부에 있는 길이 4,100mm, 폭 1,630mm의 개구부를 통해 고정앵글을 인양하여야 하는데, 그 높이가 16.5m(건물 5층 개구부 단부에서부터 1층 바닥까지의 높이)이며 고정앵글의 무게도 약 94.2kg(고정앵글 5개 × 18.84kg)에 달하여 중량물이었으므로 근로자가 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그 무게 등으로 위 개구부 내부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공사 현장에서 중량물을 취급할 때에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① 이에 따라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여 중량물 낙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와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따라 ②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경우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가 곤란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안전대 및 부착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고, ③ 철근 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 두 군데 이상을 묶어 수평으로 운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도급인인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권○○는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아○○○○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김○○는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온○○○○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으로서 관계 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아○○○○○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방○○은 피고인 주식회사 온○○○○○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자였으므로 관계 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아○○○○○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등 근로자들의 작업을 적절히 지휘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피고인들은 고정앵글을 발주하는 등 피해자를 포함한 앵글 작업자들이 2022. 5. 14.에 고정앵글을 인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중량물인 고정앵글의 인양을 위한 작업의 내용, 작업장의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고 작업지휘자도 지정하지 않아 위 앵글 작업팀으로 하여금 임의로 작업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② 피고인 김○○와 피고인 방○○은 앵글 작업팀이 기존에 중량물을 6층에 있는 양중기인 원치를 이용해 개구부를 통해 인양함에 있어 수월하게 건물 내부로 중량물을 인양하기 위해 개구부 단부에 설치된 안전난간 상단 봉을 해체하여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권○○은 위와 같이 사전조사 등을 통해 중량물취급을 위한 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위 앵글 작업을 방치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안전대를 걸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③ 또한 피고인 김○○와 피고인 방○○은 위 원치에 설치된 와이어 로프에 자전 방지 기능이 없어 하중이 가해질 경우 자전함에 따라 두 줄로 묶어 인양할 시 로프의 자전으로 철근이 벽에 부딪히는 등 인양이 어려워 앵글 작업팀이 한 줄로 묶어 기울어진 상태로 철근을 인양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권○○은 마찬가지로 사전조사 등을 통해 중량물 취급을 위한 작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위 앵글 작업을 방치함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포함한 앵글 작업자들이 이 사건 고정앵글을 운반함에 있어 한줄 걸이를 하도록 한 과실로, 2022. 5. 14. 13:46경 위 건물 5층 개구부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가 상단 봉이 해체된 안전난간 위로 손을 뻗어 슬링 벨트로 한 군데만 묶어 원치로 인양 중인 약 94.2kg 상당의 고정앵글 5개 1묶음을 건물 내부로 당기던 중 위 고정앵글이 슬링 벨트에서 이탈해

바닥으로 떨어지자 그 반동으로 함께 16.5m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 피고인 권○○는 추락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4경 일산병원 응급실에서 머리부위, 몸통 등 둔력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가) 도급인의 의무 변화와 책임 가중

2019년 1월 15일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와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제63조 및 제65조제4항)를 중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유해성·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의 사내도급 등 외주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산업재해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도급작업 등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은 작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주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작업에 대한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시·간헐적으로 작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만 도급할 수 있도록” 하여 도급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 확대하여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도급인이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저장탱크 등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는 수급인에게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하여 수급인의 보호범위도 확대한 것이다. 처벌에 있어서도 2019년 개정 전 법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이 가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p><b>산업안전보건법</b> [법률 제15588호, 2018. 4. 17., 일부개정]</p>	<p><b>산업안전보건법</b> [법률 제16272호, 2019. 1. 15, 전부개정]</p>	<p><b>산업안전보건법</b> [법률 제18180호, 2021. 5. 18, 일부개정]</p>
<p>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 6. 4., 2011. 7. 2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li> <li>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li> </ol> <p>-&gt; 제70조 50만원이하 벌금</p> <p>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lt;신설 2011. 7. 25.&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보건에 관한 협</li> </ol>	<p>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p> <p>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li> <li>2. 작업장 순회점검</li> </ol>	<p>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p> <p>좌동</p> <p>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lt;개정 2021.5.1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li> <li>2. 작업장 순회점검</li> <li>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li> </ol>

<p>의체의 구성 및 운영</p> <p>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p> <p>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p> <p>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p>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p> <p>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 작업을 하는 경우</p> <p>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p> <p>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 6.</p>	<p>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p> <p>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p>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p> <p>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 작업을 하는 경우</p> <p>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p> <p>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p>	<p>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p> <p>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p> <p>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p> <p>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 작업을 하는 경우</p> <p>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p> <p>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p> <p>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p> <p>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흔재로 인하여 화재·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p>
---	---	--

<p>4., 2011. 7. 25., 2013. 6. 12.&gt;</p> <p>-&gt; 제68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p> <p>④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0. 6. 4., 2011. 7. 25.&gt;</p> <p>-&gt; 제70조 50만원이하 벌금</p> <p>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하는 자가 해당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이 정보를 제공을 직접 요청할 수 있</p>	<p>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제167조(벌칙) ①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p>	<p>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p> <p>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p> <p>제167조(벌칙) ①</p>
--	--	---

<p>다. &lt;개정 2017. 4. 18.&gt;</p> <p>1.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p> <p>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p> <p>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p> <p>-&gt; (5항 전단) 제68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p> <p>⑥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또는 제5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7. 25., 2013. 6. 12.&gt;</p> <p>⑦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한다. &lt;개정 2011. 7. 25., 2013. 6. 12.&gt;</p>	<p>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2020. 3. 31.&gt;</p> <p>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lt;개정 2020. 5. 26.&gt;</p> <p>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2020. 3. 31.&gt;</p> <p>1. 제44조제1항 후단,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6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제139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p>	<p>좌동</p> <p>②</p> <p>좌동</p> <p>제169조(벌칙)</p> <p>좌동</p>
---	--	---

<p>⑧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7. 25., 2013. 6. 12.&gt;</p> <p>1.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p> <p>2.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p> <p>-&gt; 제69조 1천만원 이하 벌금</p> <p>⑨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lt;신설 2011. 7. 25., 2013. 6. 12.&gt;</p> <p>⑩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의</p>		
---	--	--

<p>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0. 6. 4., 2011. 7. 25., 2013. 6. 12.&gt;</p> <p>[전문개정 2009. 2. 6.]</p>		
--	--	--

이러한 도급인 처벌 가중의 기초는 아래의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와 제6조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특히 건설공사의 발주자 개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 발주자의 경우에는 중처벌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한 상태이다.

<b>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b>
<p>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li> <li>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li> <li>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li> <li>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li> </ol> <p>② 제1항제1호·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p>

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제1호 판결로 불리는 본 판결에서는 이러한 도급인의 책임강화 입법의 의도와 같이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있음을 명백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수급인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요구하는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예: 제38조)를 그대로 지는 것이고, 도급인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예: 제63조)를 당연히 지는 것이므로, 결국 근로자에 대한 이중의 안전보건조치가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의 관계

판결문에서 판사는 “피고인 김○○, 피고인 권○○는 추락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24경 일산병원 응급실에서 머리부위, 몸통 등 둔력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의 범죄구성요건과 형법 제268조의 범죄구성요건 사이의 관계에 대해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의문이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보건 조치위반치사죄)은 고의와 과실이 결합된 결과적 가중범으로 볼 수 있고, 업무상과실치사죄는 과실범인데 이들 두 가지 범죄 간에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의 태도가 사건의 본질에 부합하는 판단인가 하는 점이다.<sup>62)</sup>

물론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 자체에 대한 고의범 간의 죄수판단을 양 죄 간의 법정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는 대법원의 태도에 따를 때, 죄수판단이 법정형 이전에 범죄의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부합할 수 없어 보인다는 점에서, 우선 법원의 논리를 먼저 확인해보고 본 판결의 당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또는 제63조 위반행위의 성격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 도급사업자의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은 고의범이다. 형법 제8조는 실질적 의미의 형법 규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형법 총칙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형법 제13조와 제14조는 고의와 과실이라는 표제 아래,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즉 과실을 처벌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62) 여전히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즉 일반적인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당연히 두 가지 의무위반이 모두 인정되어(작위의무위반과 주의의무위반?) 양자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성립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사안에 따라서는 이중 처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판결 선례 중에는 특이하게 해석상 과실도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비록 고의범의 형식으로 규정된 범죄를 과실에도 확장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해석이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조치의무에 해당하는 의무위반은 고의범의 형태이므로 위 사안에서도 작업계획서 미작성, 안전모 미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작위의무위반은 모두 고의범인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위반은 이러한 제38조 또는 제63조에서 요구된 의무를 (미필적) 고의로 부작위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 사망이라는 결과가 의무자에게 예견가능하였고, 즉 적어도 과실이었고, 그 의무위반이 없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이 방지되었으리라는 인과관계, 즉 상당인과관계(예견가능한 원인과 결과관계, 개연적인 관계)가 인정되면 성립하는 것이다.

법원이 이러한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안전조치의무를 진 자(현장소장들)가 고의로 그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죄수 판단에서 알 수 있듯이 양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안전조치의무의 고의의 위반이 업무상 과실의 존재 또는 인정 근거로 보고 있다는 해석·주장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되는 사례 형상은 무언인지를 분명히 해야만 한다. 도급인 회사의 현장안전관리자인 피고인 방○○은 현장책임자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자가 아니라고 보아 단순한 과실을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경우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독자적으로 인정할 실익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고의의 의무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 자가 동료 근로자나 함께 사업장에서 위험한 행위를 공동으로 하는 자의 안전에 대하여 상호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의무를 (인식있는 또는 인식없는) 과실로 위반한 것이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지만 이러한 범행의 수사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독자적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과실의 판단도 당연히 근로감독관이나 현장의 전문가들의 관할로 하는 것이 상식적인 권한분배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법원은 진정부작위범으로 안전(보건)조치불이행죄, 즉 피고인 김○○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진정부작위범, 즉 의무불이행에 대한 형사제재의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고의범죄이다.

## 2. 피고인 김○○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 등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누전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6.경부터 6. 17.경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 병원 건물 7층에서 작업이 끝난 LPG 용기를 위험물 보관소에 보관하지 아니하였고, 위 7층에 설치된 금속제 외함으로 제작된 배전반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6.경부터 6. 17.경 사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 지하 1층 내부 비계작업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전도 방지를 위하여 바퀴를 고정시키고 아웃트리거(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6.경부터 6. 17.경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 7층부터 9층까지의 각 단부와 9층에 설치된 비계 후면부의 일부에 각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지하 1층에 설치된 이동식비계에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전도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 (라) 산업재해치사죄의 성립요건

이어서 도급업체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정○○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3. 피고인 정○○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경영책임자는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3자에게 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제3자의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야 하고,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③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 주식회사 온○○○○○의 경영책임자로서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 절차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전혀 마련하지 아니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중량물을 인양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추락, 낙하 위험을 적절히 평가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에 따라 안전대의 지급 및 부착설비가 설치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 병원 건물 내부에서 개구부를 통해 중량물을 인양함에 있어 안전난간을 해체하여 작업이 이루어짐에도 안전대가 지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대를 연결할 수 있는 부착설비가 전혀 설치되지 않아 언제든지 추락에 의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하거나 즉시 그 추락위험을 제거하도록 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14. 13:4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아○○○○○ 소속 근로자인 종사자 김○○로 하여금 위 건물 5층 내부 개구부에서 약 16.5m 아래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같은 날 14:24경 일산병원 응급실에서 머리부위, 몸통 등 둔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위 판결에서는 도급사업주의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의 산업재해치사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동 시행령 제4조 제3호와 제8호를 주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라는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현장에서 적절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이 수립되거나 위험제거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보면 이른바 2단계의 인과성 심사방법을 취하고 있고, 내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와 제5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는 동 시행령에 나열된 9가지의 의무 중 2가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무위로 돌아갔고, 결국 사망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끝으로 도급과 하수급업체인 주식회사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의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법인 처벌에서도 예를 들면 대표이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동시에 문제되거나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안전보건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등에서는 죄수문제가 등장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 4. 피고인 주식회사 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피고인 권○○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근로자 김○○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5. 피고인 주식회사 온○○○○○

#####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1)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피고인 김○○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관계 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아○○○○○ 소속 근로자 김○○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2) 안전조치의무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피고인 김○○가 피고

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정○○이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 (마) 법인의 양벌규정간의 관계

도급 사업주인 주식회사는 현장소장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조치의무위반과 동법 제167조 제1항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의 범죄에 대해 모두 양벌규정을 근거로 재산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무엇보다 현장소장인 피고인 김○○의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의 죄와 대표이사 정○○의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의 죄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과실로 인한 법인의 형사책임을 상상적 경합관계로 보고, 그 중한 죄인 후자로 처벌한다고 판단한 점이 특징적이다. 자연인인 정범이 서로 다르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가 다르다고 보면 이를 감독할 법인의 책임은 서로 다른 내용의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임에도 실제적 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한 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논거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동일한 법익(예: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서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이를 모두 무위가 되도록 방치한 것은 하나의 부작위에 의한 범죄라고 보면 상상적 경합을 넘어 법조경합으로 판단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판단의 구체적인 논거가 필요해 보인다.

### (3) 양형이유

본 판결은 아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

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함께 다루어지는 사건에서 과연 법원은 양자의 범죄 사이의 관계, 즉 각 범행의 특징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를 간접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 판결에서 제시된 양형이유에서 보듯이 양형기준이 없는 범행에 대한 선고형은 결국 당해 법원이 중대산업재해를 야기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범행이 어떤 불법과 책임을 가진 범행으로 보는 것인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수정되면서 종래 보다 양형의 폭이 상향 조정된 상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느 정도의 형량 범위를 가질 것인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가) 처단형, 양형기준, 선고형, 집행유예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양형기준에서는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양형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이유로 판결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경우에만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이 제시되어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	처단형	양형기준	선고형
주식회사 온00000	벌금 50만~50억5 천만	없음	벌금 3천만원
피고인 정00 (대표이사/ 경영책임자)	징역 1년~ 30년	없음	징역 1년 6월 3년 집행유예
피고인	징역	1) 기본범죄: 근로자 사망에 따른 산업	징역 8월

<p>김OO (현장소장/ 안전보건 총괄책임자)</p>	<p>1월~10년6월</p>	<p>안전보건법위반죄</p> <p>가)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산업 안전보건범죄군, 산업안전보건 범죄, 안전 · 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제3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u>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u>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감경영역)</p> <p>2) 경합범죄: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p> <p>가)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산업안전보건범죄군, 산업안전보건 범죄, 도급인 의 안전 · 보건조치의무위반(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p> <p>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기본범죄 형량의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의 상한의 1/2인 징역 5월을 합산)</p>	<p>2년 집행유예</p>
<p>피고인 방OO (현장안전 관리자)</p>	<p>벌금 5만~2천만</p>	<p>없음</p>	<p>벌금 5백만원</p>
<p>주식회사 아 OOOOO</p>	<p>벌금 5만~10억</p>	<p>없음</p>	<p>벌금 1천만원</p>
<p>피고인 권OO (현장소장)</p>	<p>징역 1월~7년</p>	<p>1)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산업안전보건범죄군, 산업안전보건 범죄, 안전 · 조건 조치의무위반치사(제3유형)</p>	<p>징역 8월 2년 집행유예</p>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	--	---	--

양형인자에 대한 판시를 보면 유리한 인자와 불리한 인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상당 부분 겹치고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만이 가지는 특징을 보여주는 인자들도 특히 불리한 양형인자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즉 사회적 합의, 법률제정의 목적, 업무상 의무 중 일부의 이행도 하지 않았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물론 이러한 양형인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정착되고 양형기준이 마련될 때에는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선고형의 결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선고형 결정이유]

<b>불리한 양형인자</b>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① <sup>63</sup> 산업재해에 대하여, 최근 사업주 및 도급인에 대하여 보다 무거운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하였는바, ②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의무위반 행위에 나아간 점, 그로 인하여 ③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위와 같은 결과는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은 ④ <b>업무상 의무 중 일부만을 이행하였더라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b>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b>유리한 양형인자</b>	다만, 판시와 같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①피해자를 비롯한 건설근로자 사이에서 만연하여 있던 <b>안전난간의 임의적 철거 등의 관행도 일부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b> , 위와 같은 결과의 책임을 모두 피고인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② <b>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진정어린 사과</b> 를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아○○○○○가 가입한 ③ <b>근재보험에서 181,528,000원이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지급되었고</b> , 이에 더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아○○○○○가 5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온○○○○○가 100,000,000원을 각 <b>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지급함에 따라</b> ④ <b>피해자의 유가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b> , 피고인 주식회사 온○○

	<p>○○○, 정○○은 향후 이와 같은 ⑤-1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⑤-2 중대재해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아○○○○○○, 김○○, 주식회사 온○○○○○○는 ⑥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권○○, 정○○, 방○○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위 범죄전력들도 모두 이 사건과는 다른 종류의 범죄전력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이다).</p>
--	---

위 양형설시를 구체적으로 보면, 불리한 양형인자로 언급된 대략 4가지의 논거들 중에서 마지막 인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특히 불리한 양형인자로 언급한 것 자체가 다소간 의도적인 중한 형을 선고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유리한 양형인자로 크게 6가지 유형의 이유가 제시되고 있는데 ①의 경우 경영계에서 항상 주장하고 있는 근로·노동자의 과실이나 의무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②~④는 사고 후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배상하고 사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고소취소)가 있었는지 여부, ⑤는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자세를 보이는지 여부, ⑥은 동종의무위반이 반복되었는가 여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검토

입법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하여 중대산업재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자연인을 형사별로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첫 번째 선고된 사건의 판사가 본 판결문 작성과정에서 들인 공과 고민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 이유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양형기준을 엄격히 따르고자 한 노력이 보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취지도 적극 반영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선고형과 집행유예 판단을 보면 종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되던 현장소장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도급과 수급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징역 8월에

63) 밑줄과 원문자는 연구진이 표기한 것임.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는 도급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1년 6월의 징역형에 3년간 집행을 유예하였다. 징역형만을 비교한다면 8개월과 18개월로 약 2.2배로 중한 형을 선택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판사들은 사실상 불가피하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제3유형, 즉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를 참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이라는 특별양형인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의 가중 형량이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산업재해치사죄의 기본유형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달리 말해 판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산업재해치사상죄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범죄로 파악할 수 있고, 그렇다면 입법자가 의욕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은 상징적 의미로 퇴색할 수도 있는 것이다.

###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심 판결

#### (1) 개요

2023년 4월 26일 선고된 두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다룬 사건이다.

피고인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법정구속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으로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sup>64)</sup> 판결문에 별지로 총 21개의 의무위반사

64) KBS 뉴스, '중대재해법 2호 판결' 한국제강 대표 실형 법정구속, 2023.4.26.자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61097> : 2023.7.14. 최종 검색); 법무법인[유]지평, 중대재해처벌법 제2호 판결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2023.4.28.자 ([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2044&page=&value=&type=&nownum=4](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2044&page=&value=&type=&nownum=4): 2023.7.12. 최종 검색); 법률신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2호 사건 실형은 '동종전과'가 주된 원인, 2023.4.29.자(<https://www.lawtimes.co.kr/news/187190>; 2023.7.12. 최종 검색).

항을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다수의 선행 의무위반들이 실행 선고의 원인이 되었다는 분석이 많다.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피고인의 소속과 형벌, 적용법조와 죄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소속(지위), 형벌, 적용법조 및 죄수]**

피고인 (지위)		형벌	적용법조
			죄수 등
도 급	피고인 한국○○ 주식회사	벌금 1억	<p>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 재해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보건조치 불이행의 점)</p> <p>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p> <p>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 한국제강의 경우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p>
	피고인 B	징역 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

	(대표이사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p>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 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안전보건 확 보의무 위반으로 인한 중대산업재해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 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보건조치 불이행의 점)</p> <p>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 죄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 치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형으 로 처벌]<sup>65)</sup></p> <p>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조[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 합범가중(피고인 한국제강의 경우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p>
수 감	피고인 A (개인사업주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징역 6개월 집유 2년 사회봉사 40시간	<p>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p> <p>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p>

65) “검사는, 피고인 B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한편, 피고인 B의 위 각 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및 피고인 한국제강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은 각각 실제적 경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본 사안의 도급사업주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까지 겸하고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전 상태라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이중처벌의 문제도 문제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 (2) 사실관계 요약

###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 한국○○주식회사는 (주소지)에 본점 및 사업장을 두고 연간 압연, 압출 및 인발제품 제강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 3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2014년경부터 개인사업체인 ‘강백산업’과 한국○○의 제강 및 압연 일용보수작업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피고인 B는 한국○○의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로서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이자, 사업장의 종사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

는 모두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고, 위 두 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주의의무는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각각의 의무위반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으로 향해 있는 일련의 행위라는 점에서 규범적으로 동일하고 단일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 조치의 무와 마찬가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역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4.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피고인 A은 ‘강백산업’이라는 상호로 한국○○ 사업장에서 금속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해자 김○환(남, 65세)은 위 강백산업 소속 근로자이다.

#### 나) 사건개요

수급인 근로자가 방열판 보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급인 사업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제167조제1항), 도급인 사업주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제167조제1항)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제6조 제1항) 및 각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문제된 사안이다.

피고인 A은 2022. 3. 16. 13:50경 (주소 생략)에 있는 한국제강의 야외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도급계약에 따라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방열판 보수 작업은 무게 1,220kg, 규모 가로 300cm, 세로 140cm, 두께 6~12cm인 철제 방열판의 앞면과 뒷면에 있는 슬래그(광석으로부터 금속을 빼내고 남은 찌꺼기)를 제거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연삭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방열판 상부에 부착된 리프팅 러그홀(벨트 연결 고리)에 섬유벨트를 끼우고, 양 끝 고리를 크레인 훅에 거는 방법으로 줄걸이를 실시한 후, 무선원격 제어기로 크레인을 조작하여 섬유벨트에 걸려 있는 방열판을 들어 올려 뒤집어 앞뒷면에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방열판을 뒤집기 위해 방열판의 러그홀에 위와 같이 손상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섬유벨트를 샤클 없이, 표면이 날카로운 고리에 직접 연결한 후 크레인을 조작하여 방열판을 들어 올리면서 중량물과 근접하여 크레인을 조종하게 함으로써, 때마침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방열판과 바닥 사이에 협착되도록 하여 같은 날 18:2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좌측 대퇴동맥 손상에 의한 실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범죄행위

아래의 판결문에는 자연인인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판시에서는 구체적인 위반 사항과 함께 업무상 주의의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1. 피고인 A, B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B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가. 피고인 A은 2022. 3. 16. 13:50경 (주소 생략)에 있는 한국제강의 야외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도급계약에 따라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방열판 보수 작업은 무게 1,220kg, 규모 가로 300cm, 세로 140cm, 두께 6~12cm인 철제 방열판의 앞면과 뒷면에 있는 슬래그(광석으로부터 금속을 빼내고 남은 찌꺼기)를 제거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하는 연삭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방열판 상부에 부착된 리프팅 러그홀(벨트 연결 고리)에 섬유벨트를 끼우고, 양 끝 고리를 크레인 훅에 거는 방법으로 줄걸이를 실시한 후, 무선원격제어기로 크레인을 조작하여 섬유벨트에 걸려 있는 방열판을 들어 올려 뒤집어 앞뒷면에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처럼 위 방열판 보수 작업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방열판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안전한 섬유벨트나 샤클(크레인과 방열판 고리를 연결하는 쇠고랑) 등 중량물 취급 용구를 마련하고, 그 손상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인양할 때 중량물과 근로자 사이에 안전거리를 두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 한편, 한국제강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B은 이전부터 관계수급인인 강백산업의 근로자들이 한국제강의 야외작업장에서 방열판 등 중량물을 취급하여 작업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에게는 관계수

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한국제강의 경영책임자이기도 한 피고인 B은 한국제강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통틀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라 한다)가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하고,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뒤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중량물 취급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작업할 때 사용하는 섬유벨트가 오래되어 표면이 딱딱하고, 불티에 용해되거나 굵힌 흠이 있고, 기본 사용하중 표시가 없어서 안전성조차 알 수 없도록 심하게 손상되어 있음에도 이를 작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중량물 인양 작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강백산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방열판을 뒤집기 위해 방열판의 리그홀에

위와 같이 손상되고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섬유벨트를 샤클 없이, 표면이 날카로운 고리에 직접 연결한 후 크레인을 조작하여 방열판을 들어 올리면서 중량물과 근접하여 크레인을 조종하게 함으로써, 때마침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피해자를 덮쳐 피해자의 왼쪽 다리가 방열판과 바닥 사이에 협착되도록 하여 같은 날 18:2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158에 있는 삼성창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좌측 대퇴동맥 손상에 의한 실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 (가) 작위의무와 주의의무의 구별

작위의무는 부작위범을 특징짓는 의무이고, 주의의무는 과실범을 특징짓는 의무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기초한 다양한 안전보건조치의무들은 작위의무이고, 이러한 작위의무를 불이행 또는 부작위한 경우에 고의로 부작위한 경우와 과실로 부작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전자는 고의로 작위의무를 위반·불이행한 것이고, 후자는 실수로·과실로·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주의의무(예견+회피)를 위반하여, 작위의무를 위반·불이행한 것이다. 이러한 구별기준에 따를 때 판결에서 언급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는 ‘업무상 작위의무’, 보다 정확하게는 ‘법률상 작위의무’라고 표현하는 것이 형법의 기본 개념사용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호하고 부정확한 용어사용은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문제가 혼란스럽게 여전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향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판례가 말하는 업무상 주의의무, 업무상 과실,

업무상주의의무위반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안전보건조치·안전보건확보의무를 말하는 것이라면 법률에서 이미 고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해석으로 과실로 족한 것으로 보는 죄형법정주의의 심각한 침해가 문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 (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진정부작위범

아래의 판결문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의무의 부작위, 즉 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는 의무들을 나열하고 있다. 이는 사망의 결과발생과는 무관한 부작위만으로 처벌되는 진정부작위범이다. 고의범이어야만 하고, 과실범은 처벌할 수 없다.

#### 2. 피고인 B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및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9.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한국제강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9.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한국제강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

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9.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한국제강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내지 19번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방사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9.경부터 같은 달 10.경 사이에 한국제강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1번 기재와 같이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 (다) 법인의 처벌

도급사업주 법인의 범죄에 대한 기술에서는 앞선 판결에서와는 달리 주의 감독의 대상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다. 달리 말해 앞서 살펴본 판결에서는 현장소장과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이어서 법인의 감독 대상은 2인의 자연인이었지만 여기서는 양 법률의 위반의 주체가 동일한 피고인 B라는 자연인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 경우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것도 합리적인 법률해석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할 것이고, 법조경합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 논리를 일관되게 펼친다면 대표이사가 현장의 책임자의 역할을 함께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른 목적의 법률이라는 이유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는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것이다.

### 3. 피고인 한국제강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관계수급인인 강백산업 소속 근로자 김○환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양형이유

가) 처단형, 양형기준, 선고형, 집행유예

피고인 B의 처단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상한 30년과 산업안전보건법 제 167조 제1항의 형벌 상한 7년 이하의 징역을 합산하여 징역 1년 이상 37년 이하,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의 5년 이하의 징역을 합산하면 42년 이하의 징역인데 징역 45년으로 판시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 예를 들어 피고인 A의 경우 법원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기본 형량에서 출발하여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회복 노력이라는 유리한 감경인자를 고려하여 안전·보건의무위반치사죄의 감경형량을 선택(6월 이상 1년 6월 이하)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양형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	처단형	양형기준	선고형
피고인 A	징역 1개월~7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징역 6개월 집유 2년

		[제3유형]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b>피고인 B</b>	징역1년~ 45년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징역 1년
<b>피고인 한국○○ 주식회사</b>	벌금 5만~ 60억5천만원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형이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벌금 1억원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이 없다고 하지만 동죄의 법정형 하한이 1년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도 문제됨에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감경형량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을 듯하다. 물론 기존의 관행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였다는 자체가 판사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한 형으로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선고형의 결정이유를 실시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벌금형을 받은 전과사실이 유리한 양형인자, 불리한 양형인자 모두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적절한 논리인지 의문이 든다. 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주된 이유는 반복된 위반과 재판 진행 중에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도 위의 판결과 같이 적지 않게 반영되고 있다.

## [선고형 결정이유]

불리한 양형인자	<p>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는 근로자 등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는 사회적 문제로서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중대재해사고를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견지에서 최근에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졌다. 즉, 안전사고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영책임자 개념을 신설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등을 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2021. 1. 2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2022. 1. 27. 시행된 것이다.</p> <p>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목적과 제정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b>피고인 B</b>은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분할 전 한국제강 및 그로부터 분할 설립된 한국제강의 경영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재직해 왔고, 2010. 6. 9. 분할 전 한국제강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된 검찰청-고용노동부 합동점검에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2011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b>피고인 B</b>은 2020. 12. 2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 지금의 한국제강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사고 예방 감독에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2021. 3.경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이후 2021. 5. 24.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계기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2021. 5. 27.경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 감독에서 또 다시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적발되어 2021. 11.경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21. 5. 에 발생한 위 사망사고로 인해 2021. 10. 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공소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아 왔다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2. 5. 10. 이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2023. 2. 9. 항소심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2023.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p> <p>사정이 이러하다면, 한국제강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수년간에 걸쳐 안전조치의무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되고 산업재해 사망사고까지 발생한 것은 위 사업장에 근로자 등 종사자의 안전권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p>
----------	--

	<p>B은 종전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u>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2022. 3. 16. 재차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u></p> <p>이에 대하여 <b>피고인 B과 피고인 한국제강은</b>,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맞추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준비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최종 평가기준이 마련되기도 전에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자신들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하였음을 정상참작 사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공포된 날부터 시행일까지 1년의 시행유예기간이 있었던 점, 더구나 한국제강 사업장의 경우 위 <u>시행유예기간 중에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u> 관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다른 사업장에 비해 간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준비기간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p> <p>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의 죄책은 상당히 무거우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 한국제강에도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p>
<p><b>유리한 양형인자</b></p>	<p>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u>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u> 이 사건 이후 피고인 B, 한국제강은 관계 당국의 시정명령을 모두 이행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도급·용역·위탁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평가기준을 마련하였다. 피고인 A은 강백산업을 폐업하였다. 피고인 A은 30여 년 전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p>

즉, 양형인자를 보면 불리한 양형인자로는 사전에 다양한 법률위반 사실이 적발되었고, 심지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본 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넘어, 예견, 심지어는 미필적 고의의 용인의사도 쉽게 부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법률시행에 대비한 사업체 내에서의 체계적인 준비노력이 부족하였다는 점도 강조되고 있다.

유리한 양형인자로써는 진정한 반성, 피해자의 과실, 원만한 합의와 선처 탄원(불처벌의사), 안전보건평가기준등의 마련, 시정명령 준수, 문제된 하도급 업체(강백산업)의 폐업 등이 제시되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피고인에게 불리한 일반·특별 양형인자가 2개 이상 많다거나 우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된 것은 반복된 사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나) 검토

이 판결에서도 입법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하여 기업의 조직문화나 안전관리시스템을 변화시켜보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법원으로서도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간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의 선고형이 보여준 특징을 감안하면 실형 1년의 선고는 상당히 중한 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여론의 평가는 극단적으로 나누어진다.

여하튼 이 판결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1년의 실형은 상당히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기업 문화가 야기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처벌 수준으로 본다는 것이 판사들의 인식이라는 것이다. 물론 다수의 판결이 집적되고 양형기준이 만들어 질 때까지 쉽게 추정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다.

피고인 B는 처단형의 최고 하한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는 점에서도 현재 법정형의 하한 제한이 법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다.

#### 4)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판결

##### (1) 개요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는<sup>66)</sup> 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양형부당이라는 항소이유와 검사의 죄수판단에 대한 항소이유, 즉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산업재해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별개의 행위로서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모든 항소는 이유 없다고 이를 기각했다. 그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2) 양형부당 판단

앞서 원심에서 양형사유로 제시한 이유들 외에 항소심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 2021.5.24. OO제강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후 채 1년도 되지 전에 다시 발생한 사망사고이다.
- OO제강 340명, OO산업 4명 근로자의 수에 비추어 10개월만에 2명의 사망이라는 산업재해는 이례적이다.
- 두 업체의 밀접한 업무상 관계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전형적인 위험의 외주화에 해당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항소심은 잦은 사망사고는 우연이나 사고라고 하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도급사의 대표가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의무에 대해 전혀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문제에 비추어 1년의 실형은 과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66)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형사부) 2023.8.23. 선고 2023노167 판결

### (3) 죄수판단

죄수판단은 본 사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범죄간의 문제임은 물론이고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와도 관련된 것으로 항소심의 입장이 무엇인지 보기로 한다. 본 항소심의 판단은 향후 대법원의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원심과 항소심의 죄수판단의 근거, 즉 검찰과 달리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제1심의 이유

- ①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죄와 산업재해치사죄는 모두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 ② 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주의의무는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산업재해예방이라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각각의 의무위반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으로 향해 있는 일련의 행위이므로 규범적으로 단일하고 동일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 ③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다.
- ④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되지 않는)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재해치사죄도 상상적 경합한다.

#### 항소심의 이유

- 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여기서 1개의 행위는 법적 평가 이전의 사회관념상의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말한다.<sup>67)</sup>
- ⑥ 피고인 B의 범죄로 언급된 모든 유형은 피고인이 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범행에 해당하여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볼 수

있다.

⑦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보호법익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지만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종사자의 안전을 유지·증진하거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서 일치하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와도 같다.

다행히도 법원이 실제적 경합이 아니라고 본 것은 범죄의 본질에 충실한 해석으로 볼 수 있으나 법조경합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점을 다루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물론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은 양자택일과 단순일죄라는 결정적 차이가 있으므로 실무적 관점에서 가능한 법조경합보다는 상상적 경합의 수죄를 인정하려는 경향을 이해할 수 있으나, 추후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그 당부를 다루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사건 중 지금까지는 유일하게 실행 1년의 징역 형이 선고된 사건의 경우 그 주된 원인은 반복된 사고, 대표자의 안전의식 불감증 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5) 기타 판결

### (1) 인천지방법원

거푸집 동바리의 높이 조정작업을 하던 수급인의 근로자가 추락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자가 모두 처벌된 사건으로 도급회사(A)의 대표이사(B)의 산업재해치사죄, 도급사의 현장소장(C), 수급사(D)의 실질적인 대표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F)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

67) 대법원 2017.9.12. 선고 2017도11687 판결 등

치사죄, 그리고 각 법인의 범죄가 문제된 사건이다.

## 법령의 적용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주식회사 A: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피고인 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의 점)

○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 피고인 F: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주식회사 A: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C, 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 피고인 B: 징역형 선택(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후문에 따른 벌금형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C, 피고인 F: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sup>68)</sup>

1. 수강명령

○ 피고인 C, 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죄수판단의 경우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률적용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1심 판결들에서의 법률적용과 동일하게 판시하고 있다.

법원의 양형설시를 보면 불리한 정상은 피해자의 사망결과, 피고인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2017년, 피고인 B 대표이사가 2014년과 2017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주요 사유로 제시되어 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의사,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것이 사유라고 적시되어 있다.

이 판결은 양형 사유에 있어서도 가장 전형적인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은 도급사의 대표이사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sup>69)</sup>을 선고받음으로써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평균 형량을 보

68) 피고인 B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되므로, 별도의 부수처분을 명하지 아니한다고 부기하고 있다.

69) 창원지법 마산지원의 판결에서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집

여주는 판결로 보이기도 한다.

##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가압장 개선사업 공사현장에서 굴착기로 토사를 굴착한 후 덤프트럭에 상차하는 터파기 작업을 하던 중 동시에 이루어지는 여러 작업자들의 안전과 관련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굴착기 후방 통로를 이용하여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피해자의 머리가 회전하는 굴착기의 후면과 담장 사이에 협착하여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된 사건에서 법원은 사고를 야기한 굴착기 운전자를 금고 6월, 수급인의 안전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을 각 징역 10개월, 도급 회사의 책임자를 징역 1년에 처하고 모두 2년간 집행유예하였다. 수급법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 도급법인에 대해서는 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sup>70)</sup>

법원조직법상 단독 관할임에도 합의부에서 판단한 본 판결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답한 재판부의 입장을 간략히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제4조 제1호의 의무의 이동(異同)

피고인 측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의 일환으로 이사회에 보고한 안전·보건 경영목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요구하는 의무의 이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OO건설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과 규모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대부분 건설회사라면

행유에는 3년이 조금 장기로 보인다. 달리 말해 제1심 법원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대표이사에게 일반적인 사건인 경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2년 6개월 정도를 기준(평균)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70) 언론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게재되기도 했다(일요주간, 만덕건설 사망사건, ‘집유·벌금형’ 솜방망이 처벌 논란...건설노조 “중대재해 무용론” 비판, 2023.8.28자 기사(<http://ilyoweekly.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1681793347> : 2023.10.8. 최종 검색)

어디나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적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을 뿐이어서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재해의 예방, 유해·위험유인의 개선,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담겨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sup>71)</sup>

#### 나) 인과성과 주관적 요건의 추론 방법

나아가 인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무위반과 중대재해발생 사이에 2단계 인과성 심사방법을 활용하는 다른 법원의 판례들과 동일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고의의 인정과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다소 혼란스러운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고의를 추정하는 방법을 표현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을 듯하다.

이 사건 중대산업재해 발생 장소는 협소한 공간에서 굴착기, 덤프트럭 등 대형 장비에 의한 터파기 작업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고, 피고인 류OO은 물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과 상당수의 종사자들도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류OO에게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예견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류OO에게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여기서 고의라는 것은 산업재해치사에 대한 고의가 아니라 산업재해치사에 이르게 한 안전보건확보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고의를 말하는 것이다. 중대산업재해인 사망사고의 발생가능성은 예견하거나 예견가능한 것으로 족한 것이고, 만약 그 사망의 결과에 대해 고의를 가졌다면 살인죄로 의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7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 2023.8.25. 선고 2023고합 8 판결

## 4. 소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지금까지 제1심 판결 4건과 항소심 판결 1건, 총 5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된 후 법리와 양형의 변화가 정착되기 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으로써 현재는 양 법률 모두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가 형성되기 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급인과 발주자의 구별, 도급인의 책임강화의 방향은 현재 하급심의 판결들을 통해 일련의 규범적 해석기준이 형성되어가는 것으로 보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하급심 판결들은 한편으로는 도급인의 책임강화가 반영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과정에서 법원이 형성한 법리를 준용하는 특징도 보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하급심 판결에서는 살펴본 바와 같이 죄수, 인과성, 의무의 내용,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의 이동, 부작위의 특성 등 다양한 논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과정에서는 그리 부각되지 못했던 논점들이, 현실적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72)</sup>

특히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책임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가 반영되고, 판결 실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양형차원에서는 현재 양형기준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산업재해의 속성을 업무상과실로 보아온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약 2배 정도의 형벌로 판단하는 듯한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듯하다.

아직도 고의와 과실의 구별,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부작위와 과실의 구별

72) 세부논점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김성룡,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둘러싼 형사법적 쟁점 검토,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제77집(2022), 155쪽 이하 참조

마저 혼란스러운 판결문의 서술들은 추후 다양한 비판적 논의에서 수정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V. 결론





## 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통계 분석과 판례에 표현된 법리 분석을 요약하는 것은 생략하고 아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해야 하는 근로감독관의 입장에서 앞서 살펴 본 통계자료와 법리 분석에서 도출한 결과들을 염두에 둔다면 관련 범죄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고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필자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파급효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만이 문제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모두가 문제되는 경우,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만 문제되는 경우, 나아가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가 포함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사례 형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형상에 대해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사건을 처리하는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관할에 대한 내부 사무분장이나 협업과 같은 매뉴얼이 사전에 정교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수사와 관련한 혼란, 업무중복, 수사공백, 수사중복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게 되면<sup>73)</sup> 인

73) 현재 국회에 제출된 유예입법이 몇 개월 안에 통과되어 2024년 1월에 시행되지 않고 그 적용이 유예된다고 하더라도 몇 년 내에는 수사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력의 부족과 업무 과다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 될 것이고,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사전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합리적 대책이 마련된다는 것은 이른바 수사의 객체에게도 중복되는 인권 침해적 수사를 방지해 주는 등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종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수사가 대체로 명백하게 의무위반과 인과성 확정이 가능했고, 따라서 피고인의 임의의 자백과 그에 따른 신속하고 용이한 사건처리, 그리고 그리 높지 않은 선고형으로 인한 낮은 항소율 등으로 특징 지워졌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인한 내적 요인을 논외로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으로 피고인과 그 대리인들의 방어권 행사가 증대하고 수사가 지연되고 사건처리가 장기화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기법의 변화도 필요할 것이지만 무엇보다 법적 쟁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사과정에서 공판을 생각하며 증거수집 대상과 방법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중요하고 필요한 곳에 재원을 투입하는 경제적 수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넓히고, 처벌의 정도와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줌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자체에서도 소송의 지연, 법적 쟁점의 팽창, 무죄사건의 증가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법리에 대한 쟁점이나 도급사건에서 법적 쟁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이미 이를 증명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하튼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첫 번째 대응방법이자 정공법은 법리에 부합하는 적법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검토한 통계분석과 다양한 판결례에서의

법리분석을 참고하여 수사과정에서 주의하여야 할 점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 2. 법리분석에 따른 범죄의 본질을 고려한 수사

산업안전보건법의 해석·적용과 관련한 대법원의 선례에 나타난 법리, 이를 적용한 하급심의 판결례,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개정 이후 하급심 법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규정에 대한 해석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동법의 처벌규정의 구성요건들에 대한 하급심 법원의 판결례들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이하의 의무위반법, 동법 제167조제1항의 안전보건조치의 무위반치사죄,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산업재해치사상죄라는 범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들 범죄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등에 대한 입장들이 하나씩 제시되고 있다.

범죄성립요소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활동의 요체라고 하면, 언급한 범죄들의 성립요소, 특히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무엇이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이하의 다양한 의무위반, 즉 의무불이행죄는 형사법적으로 진정부작위범에 속하는 범죄이고, 이러한 범죄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범죄적 결과발생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특정한 의무를 진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죄들은 원칙적으로 모두 고의범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작위의무자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달리 말해 진정부작위범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각종 의무를 불이행한 자의 범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행위주체로서 작위의무자라는 사실, 그에게 주어진 작위의무의 내용이 무엇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 그 사람에게 요구된 의무(작위)를 부작위하였다는 사실, 요구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실 등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최소한) 미필적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직·간접의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작위범의 본질 자체가 역사적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사고하는 것이므로 판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범죄성립요소의 존재를 지지하는 간접·정황증거들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며, 이러한 간접증거는 주장하는 사실의 존재를 추론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재언이 필요 없을 것이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즉 작위의무를 고의로 위반하고, 그 의무위반이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를 인과적으로 야기했으나, 행위자에게 그 결과발생에 대해 고의가 아닌 과실이 인정될 때 성립되는 결과적 가중범 유형이다. 달리 말해 행위자는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즉 작위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고의를 가져야 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의도하거나 고의를 가지지 않았지만 과실(예견가능성)이 있다면 처벌되는 범죄인 것이다. 따라서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이 그대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추가하여,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피고인의 작위의무위반, 즉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부작위)이 원인이 되었다는 인과성 확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부작위한 그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가정한다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증명이 부작위범의 인과성 증명이라고 하면, 이를 지지하는 최대한 많은 간접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수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어서 이러한 결과발생이 사고나 우연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할 수 있었던 일이었는지를 증명해야만 한다. 달리 말해 피고인의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한 과실(회피가능성)이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과실은 고의와 마

찬가지로 행위자의 내면의 세계에 대한 추론이고, 이러한 추론은 결국 외부에 나타난 정황을 근거로하는 법관의 사고작업인 것이다. 따라서 행위자가 작위 또는 부작위할 당시에 내심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는 추리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이 고의나 과실 증명의 최선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 설령 피고인들의 ‘몰랐다’, ‘생각지도 못했다’, ‘예견하지 못했다’고 항변하더라도 객관적·외부적 정황증거로 행위 당시 피고인의 내면을 추단케 하는 힘이 바로 그 정황증거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판례에서 제시되고 있는 고의에 대한 법리, 인과성에 대한 법리, 그리고 작위의무자나 그 의무자가 해야 할 안전보건조치의무에 대한 해석론은 바로 그러한 요소들이 증거를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과 제2항의 산업재해치사상죄의 본질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해석이 주장되고 있으나,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와 무관하게 동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사의 판단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속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이고, 그러한 행위주체, 작위의무자가 어떤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그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피해자가 이른바 중대산업재해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일이 없었을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제출할 수 있도록 수사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른바 2단계의 인과성 심사가 필요한 사안인지,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매개되지 않은 유형인지에 따라 입증의 대상과 범위도 달라질 것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정밀성도 필요할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은 판사의 확신을 필요로 한다. 유죄라는 점에 확신이 들지 않을 경우에는 무죄선고하여야만 하는 것이 판사의 법적 의무이기도 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칙’의 적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판사에게 확신을 줄 수 있을 증거가 필요하고 직접 증거가 아닌 방식

으로 증명해야하는 것이 일반적인 범죄유형에서는 간접·정황증거의 확보는  
수사와 공판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다.

### 3. 통계분석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을 고려한 수사

앞선 통계분석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  
건에 대한 판결문 중에서 법리와 관련한 쟁점이 있는 판결문들을 분석한 결  
과,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쟁점이 무엇인지를 추론할 수 있었다. 도급과 비  
도급 중에서는 도급 관련 사건에서 법리 다툼의 비중이 더 높다고 나타나기도  
했다.

이러한 법리적 쟁점으로는 실질적 고용관계가 있는지, 해당 사안에서 과연  
피고인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지는 자인지, 도급과 발주의 구분에 따를 때 과  
연 도급인인지 아니면 발주자인지 등 행위주체인지 여부가 많았다는 것은 결  
국 그 부분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수사가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행위주체·작위의무의 주체 입증에 수사의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말  
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가장 많은 비율로 등장한 쟁점은 역시 의무위반여부, 즉 의무이행  
의 충실성, 의무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의 관련성, 즉 인과관계의 증명과 관련  
된 것이었다. 행위(작위 또는 부작위), 결과, 그리고 이 둘 사이의 관련성으로  
인과관계(인과성)는 한 덩어리의 범죄성립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이유로 가장 많은 다툼의 대상이 되곤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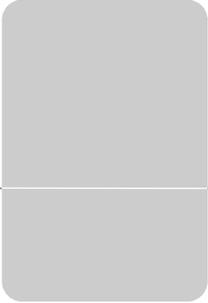
행위주체, 즉 작위의무자인지 여부, 그리고 행위, 결과 그리고 그 인과성이  
가장 많은 법적 쟁점으로 등장하는 것은 앞서 범죄의 본질에서 언급했듯이 요  
구된 작위의무의 불이행이라는 특성을 가진 범죄의 성립을 확인하기 위해서  
는 도대체 그 피고인이 의무자인지, 어떤 의무를 불이행한 것인지, 그 작위의  
무의 이행이 결과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는지, 다른 원인은 없었는지, 그 피고

인의 부작위가 사상의 결과에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증명이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인 것이다. (끝)

## 참고문헌

- 김성룡,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둘러싼 형사법적 쟁점 검토, 경북대학교 법학논고, 제77집, 2022
- 김성룡, 중대재해처벌법의 산업재해치사상죄의 성립요건 -작위의무, 인과관계, 고의, 예견가능성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법과 기업연구 제12권 제3호, 2022
- 김성룡/이진국/김도우/조흠학/김기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연구, 고용노동부 정책용역자료, 2018
-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재판 실무상 쟁점, 2021
- 송지용,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 의의 및 기준,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77호, 2022
- 이승엽, 산업재해사고에 대한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책임 -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1878 판결 -, 해양한국, 2023년 7월호
- 이진국/양승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에 대한 판례 분석, 고용노동부 용역과제, 2021.12.15.
- 정영훈,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항만법에 따라서 설립된 ○○항만공사가 갑문 정기보수공사의 시공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의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1878 판결 -, 월간 노동리뷰, 2023년 8월호
- 정진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규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충북대학교 법학연구, 제33권 제2호, 2022

- 한겨레, ‘노동자 추락사’ 구속된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2심서 무죄, 2013.9.24.자 기사(<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09837.html>: 2023.10.8. 최종 검색)
- 연합뉴스, 검찰 ‘갑문 사망사건’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무죄 불복 상고, 2023.10.4.자 기사(<https://www.yna.co.kr/view/AKR20231004048500065>: 2023.10.8. 최종 검색)
- KBC 광주방송, 갑문 공사 노동자 사망,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법정 구속, 2023.6.7.자 기사(<http://www.ikbc.co.kr/article/view/kbc202306070050>: 2023.10.8. 최종 검색)
- 한국법률일보, “22년 상반기 형사사건 항소율·상고율 1위 법원은 53%-47.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10.3. 기사([http://www.lawfact.co.kr/news\\_view.jsp?ncd=3325](http://www.lawfact.co.kr/news_view.jsp?ncd=3325) : 2023.10.4. 최종검색)
-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적용범위 참조;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explan/introduction/introduction\\_02.jsp](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explan/introduction/introduction_02.jsp) : 2023.10.1. 최종검색)
- 매일노동뉴스, [대법 양형위, 산재 범죄 형량 10년6월로 상향했지만...] 산재 기업 ‘범죄 아닌 과실’로 판단...“보여주기식 형량 늘리기” 비판, 2021.3.31.자 기사
- KBS 뉴스, ‘중대재해법 2호 판결’ 한국제강 대표 실형 법정구속, 2023.4.26. 자(<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61097> : 2023.7.14. 최종 검색); 법무법인[유]지평, 중대재해처벌법 제2호 판결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 2023.4.28.자([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2044&page=&value=&type=&nownum=4](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12044&page=&value=&type=&nownum=4): 2023.7.12. 최종 검색)



법률신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2호 사건 실형은 ‘동종전과’가 주된 원  
인, 2023.4.29.자(<https://www.lawtimes.co.kr/news/187190>; 2023.7.12.  
최종 검색)

## Abstract

# Analyzing the legal theory of judgement on serious disaster cases

This article analyzes the legal principles of judgment in serious disaster cases. We sought to analyze changes in related rulings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which was comprehensively revised in 2019 and implemented in 2020. For this research purpose, two methods were used: statistical analysis and legal analysis. The statistical analysis targeted judgments in cases of viola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sentenced from January 1, 2020 to April 30, 2023. A total of 781 first-instance rulings were selected, of which 639 dealt with cases where serious disasters occurred.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revised law in January 2020 and changes in the sentencing standards in July 2021, the types of sentences and sentences tend to become more severe. However, the Supreme Court has not yet issued a ruling applying the new legal provisions. However, lower court rulings are interpreting the meaning of the revised law. In the meantime, the so-called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was introduced, and, according to two laws, the punishment of contractors became heavier. In this situ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legal principles that appear in the existing Supreme Court rulings on violation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we

analyzed the legal principles of the lower court rulings after the comprehensive revis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related lower court ruling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It seems that the courts are still unable to break away from the attitude of treating manslaughter by violation of duty to ensure safety and manslaughter by violation of duty of safety measures as manslaughter due to occupational negligence. The crime of manslaughter due to violation of duty to take safety measures is a combination of a crime of omission and an aggravated crime of consequence, and therefore, the key topics are the subject of the act, whether there was a violation of duty, and the proof of causality between the violation of duty and the occurrence of the result. The distinction between contractor and owner is also emerging as a new topic. The Supreme Court uses normative standards in confirming who can be th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manager and what is the details of his duties. These standards weaken the clarity of norms and may run counter to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in criminal law. Police and prosecutors investigating major industrial accidents should make efforts to collect sufficient circumstantial evidence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ime and the legal principles of the court.

**Key words :**

Serious industrial accident, Legal theory of judicial precedent, Subcontract,



### 연구진

연구기관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김성룡 (교수, 경북대학교)

연구원 : 김혁돈 (부교수, 가야대학교)

연구원 : 이화정 (겸임교수, 영남대학교)

연구상대역 : 김부관 (부장, 안전보건정책연구실)

### 연구기간

2023. 04. 26. ~ 2023. 10. 31.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23년도 위탁연구 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중대재해사건에 대한 판례 법리 분석**  
(2023-산업안전보건연구원-556)

발행일 : 2023년 10월 31일  
발행인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연구책임자 : 경북대학교 교수 김성룡  
발행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소 :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전화 : 052-703-0821  
팩스 : 052-703-0332  
Homepage : <http://oshri.kosha.or.kr>  
ISBN : 979-11-92782-78-2  
공공안심글꼴 : 무료글꼴, 한국출판인회의, Kopub바탕체/돋움체

